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677-01

수탁보고 2023-09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김동훈·도남희·박진아·장경희·이정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677-01
수탁보고 2023-09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저 자

김동훈, 도남희, 박진아, 장경희, 이정은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도 남 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진 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장 경 희 (신성대학교)

공동연구자 이 정 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수탁보고 2023-09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주소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오피스 1동) 보건복지부 별관
전화 044) 202-2118
팩스 044) 202-3910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인쇄처 ㈜승림디앤씨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목차

요약	1
I. 서론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18
3. 연구방법	19
4. 선행연구	21
II. 보육비용지원 제도 및 현황	23
1.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 변화	25
2. 보육료 지원 제도	30
3.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제도	41
4.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47
5.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및 유사 서비스 비교	51
6. 보육교직원 경력 및 급여 현황	64
III. 국내·외 보육교사 등 관련 처우 및 지원 사례	73
1. 국내 사립유치원 교사처우 및 지원 현황	75
2. 해외 주요국의 보육교사 처우 및 지원 현황	84
3. 소결	110
IV.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세입·세출 분석	115
1. 가정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117
2.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122
3.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133
4. 소결	144

V.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추정	147
1. 어린이집 인력배치 기준	149
2.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150
3.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비교	152
4. 소결	164
 VI. 보육교사 처우 실태 분석	 167
1. 근무조건	169
2. 처우 및 보상	175
3. 기타 지원	178
4. 소결	179
 VII. 정책제언	 181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조정	183
2.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184
 참고문헌	 189



표목차

〈표 Ⅰ-3- 1〉 전문가 등 자문회의	20
〈표 Ⅰ-3- 2〉 보육교사 면담 일정	20
〈표 Ⅰ-3- 3〉 정책토론회	20
〈표 Ⅰ-4- 1〉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선행연구	21
〈표 Ⅱ-1- 1〉 보육료 지원 대상 및 기준 변화 과정	25
〈표 Ⅱ-1- 2〉 맞춤형 보육 주요내용(2016년)	27
〈표 Ⅱ-1- 3〉 어린이집 비용지원 체계	29
〈표 Ⅱ-2- 1〉 2023년 보육료 지원단가	30
〈표 Ⅱ-2- 2〉 2023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31
〈표 Ⅱ-2- 3〉 2023년 보육료 지원단가	31
〈표 Ⅱ-2- 4〉 민간·가정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제도 변화	35
〈표 Ⅱ-2- 5〉 연도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대상 및 기준	39
〈표 Ⅱ-3-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2023년)	41
〈표 Ⅱ-3-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2023년 기준)	43
〈표 Ⅱ-4- 1〉 특수보육시책 사업 분류체계(대분류)	47
〈표 Ⅱ-4- 2〉 특수보육시책 사업 분류체계(중분류)	47
〈표 Ⅱ-4- 3〉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유형별 예산	49
〈표 Ⅱ-4- 4〉 시·도 보육료 상한액: 2023	50
〈표 Ⅱ-5- 1〉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52
〈표 Ⅱ-5- 2〉 연도별 최저임금과 보육교사 월지급액 수준 비교	54
〈표 Ⅱ-5- 3〉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변동 내역	54
〈표 Ⅱ-5- 4〉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56
〈표 Ⅱ-5- 5〉 영아종일제서비스 활동 범위	56
〈표 Ⅱ-5- 6〉 서비스 이용요금	56
〈표 Ⅱ-5- 7〉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원칙	57
〈표 Ⅱ-5-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위분류 예시: 생활시설 중심	58
〈표 Ⅱ-5- 9〉 2023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58

〈표 II-5-10〉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59
〈표 II-5-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60
〈표 II-5-12〉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비교	60
〈표 II-5-13〉 보육교사 직무 관련 법령 비교	62
〈표 II-5-14〉 보육교사 복무관리 지침	63
〈표 II-5-15〉 보육교사 전문성 신장 관련 법령	63
〈표 II-6- 1〉 원장 경력 추이	64
〈표 II-6- 2〉 원장의 호봉	65
〈표 II-6- 3〉 원장의 월 급여	67
〈표 II-6- 4〉 보육교사 경력 추이	68
〈표 II-6- 5〉 보육교사 월 급여	69
〈표 II-6- 6〉 보육교사 급여에 호봉 및 경력 반영 여부	71
〈표 II-6- 7〉 보육교사 하루 및 주당 근로시간	72
〈표 III-1- 1〉 2023년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호봉표	76
〈표 III-1- 2〉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	77
〈표 III-1- 3〉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기준	78
〈표 III-1- 4〉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대체교사 지원 현황	80
〈표 III-1- 5〉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육아휴직수당 지원 현황	81
〈표 III-1- 6〉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 현황	83
〈표 III-2- 1〉 2022년 보육소의 공사립별 보육소 수 및 이용아동 수	85
〈표 III-2- 2〉 2021년 일본사립보육소의 운영주체별 현황	85
〈표 III-2- 3〉 보육소 정원충족률의 연도별 추이	86
〈표 III-2- 4〉 인정어린이원 현황(2022)	86
〈표 III-2- 5〉 지역형 보육사업의 종류, 성격, 현황	87
〈표 III-2- 6〉 지역형 보육사업의 운영주체별 분류(2021)	88
〈표 III-2- 7〉 보육사 1명이 담당하는 연령별 영유아의 수	88
〈표 III-2- 8〉 지역형 보육사업의 직원배치 및 보육사 1명이 담당하는 연령별 영유아의 수	89
〈표 III-2- 9〉 일본 보육소의 지역·정원규모·연령·보육시간 별 표준보육비용	93
〈표 III-2-10〉 일본 소규모보육사업의 지역·정원규모·연령·보육시간별 표준보육비용	94
〈표 III-2-11〉 일본보육시설 보육교직원 임금실태	97
〈표 III-2-12〉 호주의 서비스 유형별 담당 직원의 임금 비율 및 인원수	106

〈표 III-2-13〉 스웨덴 보육교사 급여	109
〈표 III-2-14〉 유럽의 교사 및 교장의 급여	110
〈표 IV-1- 1〉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현원규모별 어린이집 수	117
〈표 IV-1- 2〉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월평균 반 구성 현황	118
〈표 IV-1- 3〉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월평균 보육교사 수 현황	119
〈표 IV-1- 4〉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월평균 조리원 수 현황	119
〈표 IV-1- 5〉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120
〈표 IV-1- 6〉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호봉환산	121
〈표 IV-1- 7〉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월평균 기관부담금 추정	122
〈표 IV-2- 1〉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현원규모별 어린이집 수	122
〈표 IV-2- 2〉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월평균 반 구성 현황	123
〈표 IV-2- 3〉 민간어린이집 월평균 보육교사 수 현황(2022년)	128
〈표 IV-2- 4〉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129
〈표 IV-2- 5〉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호봉환산	131
〈표 IV-2- 6〉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월평균 기관부담금 추정	132
〈표 IV-3- 1〉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현원규모별 어린이집 수	133
〈표 IV-3- 2〉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월평균 반 구성 현황	134
〈표 IV-3- 3〉 국공립어린이집 월평균 보육교사 수 현황(2022년)	138
〈표 IV-3- 4〉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140
〈표 IV-3- 5〉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호봉환산	142
〈표 IV-3- 6〉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월평균 기관부담금 추정	143
〈표 V-1- 1〉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 및 인력배치 기준	149
〈표 V-2- 1〉 2023년 보육료 지원단가	151
〈표 V-2-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급여 기준(전체 평균)	151
〈표 V-2- 3〉 보육교직원 1인당 월급여(급여수준 환산호봉 기준)	152
〈표 V-3- 1〉 어린이집 수입 추정	153
〈표 V-3- 2〉 어린이집 인건비 지출 추정(정원충족률 100%)	154
〈표 V-3- 3〉 어린이집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 추정 (정원충족률 100%)	156
〈표 V-3- 4〉 2023년 표준보육비용 기준 인건비 지출 비중 (정원충족률 100%)	158
〈표 V-3- 5〉 어린이집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 추정 (반별 정원 1명 미충원시)	160

〈표 V-3- 6〉 어린이집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 추정 (반별 정원 2명 미충원시)	162
〈표 V-4- 1〉 보육교직원 1인당 월급여(급여수준 환산호봉 기준)	164
〈표 VI-1-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개선(안)	184
〈표 VI-2- 1〉 기관보육료 정원 기준 지급(정원충족률 50% 이상시)	185
〈표 VI-2- 2〉 인구소멸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 현황	188
〈표 VI-2- 3〉 인구소멸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수	188
〈표 VI-2- 4〉 인구소멸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추가지원 재정소요	188



그림목차

[그림 II-1-1] 보육지원체계 개편	28
[그림 II-4-1]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유형별 예산	49
[그림 II-5-1] 보상의 개념	51
[그림 II-6-1] 원장 경력 추이	64
[그림 II-6-2] 원장 월 급여 추이	66
[그림 II-6-3] 보육교사 월 급여 추이	69
[그림 III-1-1] 공무원의 보수체계	75
[그림 III-2-1] 일본 보육소의 보육료 부담방식	96
[그림 III-2-2] 일본 일반 근로자 및 사립보육소 보육사의 월 평균 급여 비교	97
[그림 III-2-3] 일반근로자 및 사립 보육소 보육사의 월 평균 근로시간 비교 ..	99
[그림 III-2-4] 호주의 보육서비스 유형별 주중 근무 시간 비율	104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원 기준 보육료 지원체계 하에서 반별 정원 미충족시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처우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 인프라 유지를 위해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연구내용

- 선행연구 및 정책환경 분석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보육료 등 비용지원 개선 관련 선행연구 및 제안사항 검토
 - 어린이집 비용지원정책 제도 분석
 -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분석 및 요구 검토
 -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 현황 분석
 -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 분석
 -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요구 파악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비용지원체계 개선사항 제안

다.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관련제도 및 유사사례 문헌분석
- 어린이집 현황 및 세입·세출 등 통계자료 분석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요구 파악(11회)
 - 4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 전라, 경상)별 민간·가정 어린이집 요구 파악

□ 처우개선 및 비용지원체계 개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5회)

2. 보육비용지원 제도 현황

가.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 변화

-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지원은 1992년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점차 지원을 확대한 후, 2013년 3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기점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 대상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현재의 보육지원의 틀이 확립되었음.
- 2016년 7월부터 0~2세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체계가 마련되어,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였음.
- 무상보육 도입 이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고, 이는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하고,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됨.
 - 맞춤형 보육서비스는 종일반 이용 이외 가구 아동이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에 더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시 월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음.
- 2020년 3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더불어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
- 어린이집 영아반의 맞춤형과 종일반의 구분이 사라지고 보육수요를 고려한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함.

〈요약 표 1〉 어린이집 비용지원 체계

		0~2세(영아반)		3~5세(유아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기관 지원	기본보육시간 (09:00~16:00)	인건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지급	
	연장보육시간 (16:00~19:30)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료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료	
부모지원		부모보육료 지원		부모보육료(누리과정 지원)	

□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관련하여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현재 교사자격·양성,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비용·비용지원 개편 등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 중임.

나. 보육료 지원 제도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장애아 포함)에게 제공되는 부모보육료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의 만0~2세반에 지원하는 기관보육료가 있음.

〈요약 표 2〉 2023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원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5세반	장애아
계	1,113,000	778,000	596,000	280,000	1,212,000
부모보육료	514,000	452,000	375,000	280,000	559,000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	653,000

□ 현행 기관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2006년 기본보조금에서 출발하여 2009년 기본보육료, 2020년 기관보육료로 변화해 왔음.

- 기관보육료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변동이 없었으며, 이후 최저임금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다시 증가하고 있음.

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제도

□ 정부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제도는 시설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인건비 지원어린이집과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

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함.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급하며, 반당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인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 원장 및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이외에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이 있음

□ 이외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일 8시간 근무한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일 경우 월 26만원,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는 월 13만원을 지원함.
-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 기준 월 7만 5천원을 지급함.
-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시 월 11만원을 지급함.

라.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 2021년 시·도와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특수보육시책 사업은 총 2,374개였고 이 중 시·도 특수보육시책은 348개(14.7%),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은 2,026개(85.3%)임.

- 전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은 총 1조 6천 51억원 수준이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전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의 34.2%(5,495억원)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다음으로 보육비용 20.1%(3,226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8.3%(2,936억원) 순이었음.

□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부모자부담이던 차액보육료는 2023년 현재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3세 107,771원, 4세와 5세는 91,276원임.

마.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및 유사서비스 비교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됨.

- 2023년 보육교사 1호봉 월지급액 2,099,100원은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0,580원에 비해 4.4%(88,520원) 더 많으며,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0,270원보다 보육교사의 1호봉 1,567,020원이 24.3%(306,750원) 더 많았던 것에 비해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결과임.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포함되는 내역은 기본급에 기말수당 및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급식비 등 수당이며, 2006년 월지급액으로 통일되었음.
- 아이돌보미-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200시간 이용시 월 2,216,000원, 보육교사 1호봉 월지급액은 2,099,100원(법정부담금 등 포함시 2,592,900원) 수준임.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인건비와는 용어, 수당, 직위별 호봉체계, 인건비 수준에 차이가 있음.

〈요약 표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봉급액의 120%	•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근무 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주: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 화함.

- 보육교사의 직무 관련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제2항에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 이외 추가

적인 직무관련 언급은 없음.

- 보육교직원 복무관리에는 크게 근무시간, 교직원의 겸임 제한,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권익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국내외 보육교사 등 처우 및 지원 현황

가. 국내 사립유치원 교사처우 및 지원 현황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는 공·사립 교원 간 임금 격차의 단계적 완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기본급 보조를 확대하고 고경력 교사의 근속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장기근속수당을 ('22) 3만원 → ('23) 4만원 → ('27)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은 기본급 보조와 수당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과정 학급 담임을 맡을 경우 기본급보조와 담임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 2019년 월 65만원이던 처우개선비는 매해 3만원씩 인상되어 2023년 77만원까지 확대됨.
 -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에서 기본급보조 60만원, 담임수당 13만원, 장기근속수당 4만원, 총 77만원을 지원하고 부산과 울산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기본급보조와 장기근속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총 80만원을 지원하며, 시도별로 기본급 보조지원 대상기준은 약간 상이함.
- 교원 기본급 보조 외에 대체교사 또는 강사 인건비 지원과 육아휴직 수당 지원 등이 있음.
 - 대체교사 지원 1일 단가는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교육과정 시간에 대해 최소 70,000원에서 최대 96,240원으로 교육청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추가 금액은 유치원에서 자체 부담함.
 - 2022년 3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 교원도 국공립 유치원 교원에게 적용되는 휴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수당 지

원단가는 대부분 하한액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육아휴직 1년간 지원함.

- 이외 시도교육청별에 따라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원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나. 해외 주요국의 보육교사 처우 및 지원 현황

- 일본의 경우 인건비 산정의 토대가 되는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용 단가에 전체 직원의 근무연수를 반영하여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사립보육소 보육사의 저임금이 일정부분 해소하고 있음
 - 직원의 평균 근무연수에 따라 가산하는 처우개선가산 I의 시행으로, 2019년 시행된 경영실태조사 결과 경력 11년차인 공립 보육사와 사립 보육사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인당 표준보육비용의 기본분 단가는 지역, 정원, 보육시간,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고, 처우개선 가산, 임차료 가산, 감가상각 가산, 팀 보육 가산, 3세 아동 배치 가산 등 보육의 실제상황을 반영하여 가산을 적용하고 있음.
 -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 단가 책정으로 100분의 20지역 및 100분의 6지역의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용은 상이하고, 규모의 경제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원규모에 따라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을 달리 책정하고 있음.
 - 가산항목 및 가산액도 시설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고, 소규모 보육시설의 가산액을 더 높게 책정하여 소규모 보육시설의 보육의 질 및 보육사의 저임금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공립보육소가 보육내용, 시설운영 등에 있어서 기준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사립보육소가 이를 반영하고 있어 승진에 따른 급여 상승을 제외하고는 사립보육사의 임금은 공립보육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일본의 공립보육소는 지방자치체 직영으로, 보육사 신분 역시 공무원이므로, 타 직종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급여체계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상승 및 승진이 있음
 - 반면, 사립보육소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며,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하여 산정된 운영비 전액을 지방자치체가 보육소에 지불하며, 보육

료 징수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초과하여 보육사를 배치 또는 기준 보육 아동수 이하로 보육하는 경우에는 팀보육 가산, 3세아동 배치 가산 등을 통해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함으로써 보육사의 업무 과중 해소 및 보육사 임금 개선을 도모함.
 - 0세 영아 3명, 1·2세 아동 6명을 1명의 보육사가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동적활동이 활발한 3세 아동 20명을 1명의 보육사가 보육하기는 어려우므로 다수의 보육소는 배치기준 보다 1.8배의 보육사를 고용하여 보육사의 과로 대비 및 보육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보육소는 주택임차보조, 통근수당 등을 통해 사립보육소 보육사의 임금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민간보육소 보육사의 임금은 타 직종 근로자에 비해 여전히 수준은 낮아,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임차료 및 교통비 지원을 통해 보육사 저임금을 다소나마 보완하고자 함.

4.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세입·세출 분석

가. 가정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 2020~2022년 가정어린이집 현원규모를 보면 16명 이상인 경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현원 16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비율은 2020년 46.4%, 2021년 47.2%, 2022년 48.5%로 소폭 증가함.
- 가정어린이집 반 구성은 현원 10명 이하인 경우는 평균 2개반으로 0~1세 혼합반과 1~2세 혼합반이 주였고, 현원 16명 이상인 가정어린이집은 혼합반보다는 단일연령반 구성이 많았음.
- 가정어린이집의 월평균 보육교사수(원장 제외)는 현원규모가 클수록 보육교사수가 많았고,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현원 0~10명은 3명, 현원 11~15명은 4명, 현원 16명 이상은 5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보육교사 가장 많은 곳은 2022 회계연도에 월평균 13명인 곳이 있었음.
- 가정어린이집 중 조리원을 고용한 경우는 2020년 51.9%, 2021년 56.5%,

2022년 58.7%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임.

-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월평균 인건비를 각 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지급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최근 3년 모두 현원규모에 관계없이 1호봉 미만의 최저임금 수준임.
 - 원장의 월평균 인건비는 현원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원 0~10명은 1호봉 미만, 현원 11~15명은 7호봉 수준, 현원 16명 이상은 20호봉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교직원 4대보험 법정부담금은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으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예측됨.

나.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 2020~2022년 민간어린이집 현원규모를 보면 현원이 50명 이하 중소규모인 비율이 2020년 64.7%, 2021년 65.4%, 2022년 67.1%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70명 이하 규모 비율은 2022년의 80.6%임.
- 민간어린이집 반 구성은 2022년 기준으로 현원 0~20명인 경우 평균 반 수는 3개, 현원 21~30명은 5개, 현원 31~40명은 6개였으며 영아반 중심으로 개설되는 경향이 큼.
 - 규모가 작을수록 혼합연령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현원 41명 이상인 경우부터 3세반을 비롯한 유아반 편성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민간어린이집의 월평균 보육교사수(원장 제외)는 현원규모가 클수록 반 편성 규모와 맞물려 보육교사 수가 많았고, 보육교사 수는 5~9명인 곳이 많았으며, 전체 9,572개소 중 4,984개소로 52.1%를 차지함.
- 민간어린이집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인건비는 증가하였고, 현원규모가 클수록 원장 인건비와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음.
 - 현원규모별로 원장의 인건비 격차가 보육교사 인건비 격차보다 더 큼.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월평균 인건비를 호봉으로 환산해 보면, 원장은 현원규모가 증가할수록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호봉수준이 급격히 올라가는 반면, 보육교사의 호봉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급여기준 보육교사 호봉

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질수록 호봉수준이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법정부담금은 가정어린이집과 유사하게 법정 부담금은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으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예측됨.

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원 50인 이하는 2020년 53.9%, 2021년 57.3%, 2022년 62.4%였으며, 현원 80명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90.1%임.
- 현원이 40명 이하인 경우 유아반보다는 영아반 중심으로 반을 구성하였고, 현원규모가 61명 이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0세반부터 5세반까지 모든 연령에 대한 단일연령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의 월평균 보육교사수(원장 제외)는 현원규모가 클수록 보육교사 수가 증가하였고, 2022년 기준으로 보육교사 수는 6~10명이 전체 5,782개소 중 3,088개소로 53.4%를 차지하였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보육교직원 월평균 인건비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에 비해 기본급 이외 수당으로 가져가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았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법정부담금과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지원이 잘 되는 것으로 보임.

5.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추정

- 어린이집의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을 살펴보기 위해, 2023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보조금과 부모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를 주요 수입으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모형을 가정하여 어린이집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
-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을 추정하기에 앞서 영유아보육법의 원장, 담임교사, 간

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의 인력배치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규모별 연령반을 구성함.

□ 보육교직원의 평균호봉과 2023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누리과정운영비를 반영하여, 반 구성 및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보육교직원 1인당 월급여를 산출함.

〈요약 표 4〉 보육교직원 1인당 월급여(급여수준 환산호봉 기준)

단위: 원

구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전체	15호봉	5호봉	시간외수당(5호봉)	5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3,815,500	2,563,500	108,700	2,672,200	2,487,400	2,487,400	2,384,700
인건비 지원	20호봉	7호봉	시간외수당(7호봉)	7호봉	9호봉	1호봉	1호봉
	4,194,400	2,689,000	114,000	2,803,000	2,787,800	2,487,400	2,384,700
기관보육료 지원	12호봉	1호봉	시간외수당(1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3,563,300	2,487,400	105,500	2,592,900	2,487,400	2,487,400	2,384,700

□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비교는 정원충족률에 따라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출은 크게 인건비와 인건비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음

- 특히 어린이집 반 구성 및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반 정원을 100% 충족하는 경우, 반별 정원이 1명 부족한 경우, 반별 정원이 2명 부족한 경우를 설정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이 어느 수준인지를 인건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반별 정원을 100% 충족할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60~70%였고,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를 제외한 경우 인건비 비중은 70~80%로 인건비 지원보다 컸으나, 차액보육료를 포함한 경우 인건비 비중은 60% 대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유사하였음.

- 부모부담분인 차액보육료를 지방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현행 비용지원 구조하에서는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간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차이가 별로 없음.

□ 반별 정원이 1명씩 부족하다고 가정할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70% 내외로 정원 100% 충족시 인건비 비중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음.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를 제외한 경우 인건비

비중은 8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차액보육료를 포함한 경우 인건비 비중은 70% 대로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 증가율을 낮앴음.

- 특히,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어린이집 규모가 적은 20인과 50인 어린이집의 정원 미충원시 인건비 부담비율이 다른 규모에 비해 커, 결국 인건비 이외 보육서비스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음.

□ 반별 정원이 2명씩 부족(단, 0세반은 1명 부족)하다고 가정할 경우,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수입에서 차액보육료를 제외한 경우 20인, 50인은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차액보육료 수입을 포함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체계 안에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등 주 수입원 이외에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정부 및 지자체 타 지원금(교사 지원 및 각종 시책사업 등) 등을 통해 부족분을 해결하는 형태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밖에 없어 추가지원이 필요함.

6. 보육교사 처우 실태 분석

가. 근무조건

□ 보육교사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계약체결은 매년인 경우와 장기간 근속한 경우는 별도로 갱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 근로계약시 근로기간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다년인 경우도 일부 있었음.

- 계약서의 내용은 표준근로계약서 상에 포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보육교사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나 서류로 존재하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서로 협의하여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대부분임.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어, 보조교사로 채용했더라도 실제로는 원장이 담당하는 연령반의 실질적 담임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보육교사의 업무량은 각종 행정업무 등으로 많다는 인식이 많았고, 업무량 감

소를 위해서는 교사대 아동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보육교사에게 있어 휴게시간과 장소는 있으나 실질적 이용은 어려우며, 낮잠 시간 등을 통해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있었음.

나. 처우 및 보상

- 민간의 경우 급여는 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호봉이나 경력을 인정받더라도 1호봉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 민간이나 가정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이나 1호봉 급여를 불문율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임.
- 급여명세표는 대체로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투명하지 못해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퇴직적립금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경우는 드물었음.
- 보육교사의 실질적 연차 사용은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휴가나 건강검진 등을 위한 공가 사용 등은 없었음.
-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휴가사용시 대체교사 이용할 수 없어,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큼.

다. 기타 지원

- 보육교사들이 보육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재교구가 필요하나, 교재교구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교재교구를 개인물품을 활용하거나 개인비용으로 사는 경우가 있음.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보육교사로서 보육활동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7. 정책제언

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조정

- 2022년 3월부터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23:87) 의무규정은 아님.

-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도 최저임금이 아닌 1호봉부터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행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한 1호봉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 기관보육료 정원 기준 지급

- 반당 정원충족률이 일정수준(50%) 이상인 경우 현행 기관보육료를 정원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연령반별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영아반 연령반별로 1개반씩 부족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단계적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인 경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연령반별 담임교사에게 보육교사 인건비(1호봉)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보육료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운영비와 분리하여 지원함.

□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

- 정원충족률 50% 이상시 일정금액의 기관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지원이 아닌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정수준의 기관운영비를 지원하여 정원 미충족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임.

□ 차년도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인상 반영시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

- 차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재계약시 전년대비 인건비 1호봉을 인상하여 반영시, 전년대비 호봉 인상액과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기관 부담금 인상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임.

□ 인구감소지역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 농어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까지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선행연구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민간·가정 어린이집(기관보육료 지원 시설)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할 경우,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임금 지급 곤란한 상황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인건비 지원(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은 보육료 이외 별도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으나, 이외 기관보육료 지원(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은 보육료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실정이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영아반 보육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보육교사는 30%를 지원받고,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는 1명에 한해 100% 지원, 이외 인건비는 부모보육료 등의 수입에서 부담한다.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별도 인건비 지원은 없고 대신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데, 기관보육료는 정부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하는 보육료이다(보건복지부, 202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바우처 형태의 현행 보육료 지원 체계 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에 따른 인건비를 일정비율 지원받는데 반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보육료만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황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처우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 어린이집 조사 결과, 보육교사 평균호봉은 인건비지원이 8호봉, 기관보육료 지원이 4호봉인데 반해, 실제 급여수준은 인건비 지원은 7호봉, 기관보육료 지원은 1호봉 수준은 이러한 현실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현행 보육료(부모, 기관) 지원 체계 하에서 반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낮은 처우는 지속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상당규모의 특수보육시책 사업을 통해 인건비나 차액보육료 등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여전

히 격차해소에는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저출생으로 인해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 하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 인프라 유지를 위해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처우개선 방안을 고민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먼저 무상보육(2013년), 맞춤형 보육(2016년),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등 그간의 보육비용지원 정책의 변화와 함께, 기관보육료의 변화 과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및 유사서비스 등을 검토·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의 보육교사 관련 처우 및 지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행 보육교사의 인건비 기준 및 복무 관련 규정과 함께, 국내 유사서비스로 아이돌보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검토하였고, 일본, 호주,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인건비 현황을 분석하고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을 추정하였다.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간에 주요 세입원이 달라 민간,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인건비 지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반별 정원 충족 수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간에 수입 차이와 인건비 지출 차이,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추가지원 논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였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계약, 보육교사 업무 및 업무량, 보육교사 휴게시

간,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 급여, 교사 휴가 등 처우 및 보상, 기타 보육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수행의 결과를 중심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내용을 위해 문헌분석, 통계자료 분석, 자문회의, 심층면담,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등을 수행하였다.

가. 문헌분석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선행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으며, 그간의 어린이집 비용지원체계, 인건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등 관련 제도의 변화와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유사서비스 사례 및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전국보육실태조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나. 어린이집 현황 및 세입·세출 등 통계자료 분석

사회보장정보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2020~2022년 어린이집 세입·세출 월별 결산자료 수집하여 인건비 지원 여부, 설립유형, 현원 규모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현원규모별·연도별로 민간,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출 자료를 중심으로 평균적인 급여수준과 호봉수준, 기관부담금 수준을 분석하였다.

다. 전문가 등 자문회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관련 요구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 및 민간분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 상세내역 파악을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업체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외 정책보고서 및 대안에 대한 전문가 서면

검토를 실시하였다.

〈표 I-3-1〉 전문가 등 자문회의

구분	일자
어린이집연합회	2023. 7.7.(금), 2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23. 7.19.(수), 1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2023. 7.20.(목), 2인
온앤온정보시스템	2023. 7.26.(수), 3명
일본사례 전문가	2023. 7.31.(월), 1명
전문가 서면검토 및 자문	2023. 11월, 7명

라. 심층면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수렴을 위해 수도권, 강원·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권역 보육교사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심층면담은 계약 등 근무조건, 급여 등 처우, 이직, 기타 교사 보육활동 수행 관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회의로 진행하였다.

〈표 I-3-2〉 보육교사 면담 일정

권역	내용	일자
수도권	민간2, 가정1	2023. 7.27.(목), 7.29.(토), 8.1(화)
충청권	민간2, 가정2	2023. 7.25.(화), 7.31.(월), 8.3.(목)
호남권	민간2	2023. 7.31.(월) 8.1.(화)
경상권	민간2, 가정2	2023. 7.25.(화), 7.27.(목), 7.28.(금)

주: 총 11회 온라인 줌으로 진행함.

마. 정책토론회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정책제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2023.12.11.)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3-3〉 정책토론회

일자	장소	주요내용
2023. 12. 11(월)	정동1928 아트센터 이 벤트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중심으로

4. 선행연구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주요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4-1〉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선행연구

구분	주요 연구 제언 사항
서문희 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인간어린이집의 인건비 기준을 1호봉 이상 제시하기 어렵고, 그 이하를 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인건비 지원 비율 산정 방법 개선안으로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 수에 각 지원 비율을 곱하여 평균 지원 비율을 자동으로 산정하여 총 인건비 대비 이 평균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임양미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의 처우개선 수준제고를 위해 교직원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및 복리후생비, 시설부담금(퇴직적립금, 의료보험)이 보육료 산정에 포함
서문희 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인건비 산정과 어린이집 반당 담당교사 이외에 보육인력 추가 배치
서문희 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근무 수당은 법정기준에 따라 지급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 확대 • 영아를 많이 보육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강화 •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운영비 지원(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자가 및 자기자본, 1개 기관 운영, 어린이집 매도 경력 없음 조건 등) •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를 운영비로 지원(정원충족률 50% 이상 시 전액, 전액, 아동 1인 추가, 분기별 선지급 등 3개안 제언) • 기본보육료 폐지 및 인건비 지원 도입. 인건비 수준은 우선 최저임금 수준 적용 및 지원 비율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처럼 80% 적용 • 중앙정부에서 영아반당 운영비 지원(교사의 수당이나 야간 수당, 교직원 복리후생 등 항목 지출에 활용)
이주연 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화된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김혜금 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기준이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용 •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라가기 힘들다면 영아 보육료를 단계별로 적정화하는 방안 강구
김혜금 외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률도 보육료에 합리적으로 반영 •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국가가 지원 • 적정 보육료가 산정되지 못한 채 현 보육료 수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 어린이집의 재정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어린이집 보육재정 결함보조금 제도’ 도입)
김미곤 외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제약과 초저출산 현상을 고려할 경우, 우선 아동 발달단계 상 사회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요구가 높은 3-4세 유아반 축소 검토(3세 이상 각 4명 가량 축소 제언) • 보육료 현실화 및 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구분	주요 연구 제안 사항
양미선 외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수 감소 지역 선정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인건비 지원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정부 재정 여건이나 인건비 지원시설 보육교직원의 반발 등)로 무리가 있으므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준용(반당 정원총족률 60% 이상) • 인건비 지원시설은 반당 정원총족률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 유아반 인건비 지원 35% 또는 40%로 인상
박진아 외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 아동 비율과 담임교사 배치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을 확보 • 보육료 지원 방식을 가구 단위의 보육료 지원 방식에서 기관 지원 방식으로 전환 제안 • 유치원의 지원 방식을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간을 5시간으로 설정하여 추가 배치되는 교사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 부담은 부모가 하는 방안
이원선 외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보육시책간 격차 발생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간식비, 시설비 등 반드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보육비용, 시행 비율이 높은 항목 중심으로 국고 투입 검토
양미선 외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어린이집 중심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 • 반당 정원총족률이 일정 수준 이하의 어린이집에 인건비 부족분 보전 (0세반 현원 2명, 1세반 현원 2~3명, 2세반 현원 3~4명인 경우 인건비 부족분 지원)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 체계를 마련 • 영아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지원단가 인상 •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재구조화 • 보육교직원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 한다.

II

보육비용지원 제도 및 현황

- 01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 변화
- 02 보육료 지원 제도
- 03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제도
- 04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 05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및 유사 서비스 비교
- 06 보육교직원 경력 및 급여 현황

II. 보육비용지원 제도 및 현황

1.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 변화

가. 무상보육 도입 이전(~2013년)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지원은 1992년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로(한영선, 2014, p.90) 2000년대 초반까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였으며 교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학 1년 전인 5세 유아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였다. 2004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까지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점차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장하였다(최효미, 김나영, 김태우, 2017, p.39).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 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에서 '영유아가구 소득분위'로 변경하였으며, 2011년에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2012년에는 3~4세 유아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전액 지원하였으나 0~2세와 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2013년 3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기점으로 전 계층 대상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현재의 보육지원의 틀이 확립되었다.

〈표 II-1-1〉 보육료 지원 대상 및 기준 변화 과정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03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법정저소득층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 40% 지원					저소득층 전액 지원
2004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법정저소득층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 60% 지원 평균소득 50% 40% 지원					저소득층 전액 지원
2005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법정저소득층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 80% 지원 평균소득 50% 60% 지원 평균소득 60% 30%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기준 80% 전액 지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평균소득 50% 70% 지원 평균소득 70% 40%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기준 90% 전액 지원 농어촌근로자가구 가구소득 100% 전액 지원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평균소득 50% 80% 지원 평균소득 70% 50% 지원 평균소득 100% 20%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기준 100% 전액 지원
2008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평균소득 50% 80% 지원 평균소득 70% 60% 지원 평균소득 100% 30%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2009년 7월	영유아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50% 이하 전액 지원 소득하위 60% 이하 60%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 30%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2010년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 신설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전액 지원
2011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전액 지원					
2012년	소득무관 전액 지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전액 지원		소득무관 전액 지원
2013년 이후	소득무관 전액 지원					

자료: 최효미 외(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표 II-2-1〉 인용.

나. 무상보육 도입(2013년~)

2013년 3월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만 3~4세까지 전 계층 보육료 전액 지원이 이루어져 만 0~5세 전 연령에 무상보육이 실시되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은 지원 대상에 따라 만 0~5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시간 연장형 보육료로 구분되며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아이 행복카드를 발급하면 정부가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의해 만 0~5세(장애아의 경우, 만 12세 이하)면 누구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김은정·이혜숙, 2016:47 재인용).

다. 맞춤형 보육(2016~)

무상보육 도입 이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고, 이는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하고,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25.).

이에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0~2세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체계가 마련되었다.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25.).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일반을 종일반과 맞춤형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25.).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하여,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기타 돌봄 필요 정도가 큰 가구에 제공되며,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25.). 맞춤형 보육서비스는 종일반 이용 이외 가구 아동이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에 더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시 월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25.).

〈표 II-1-2〉 맞춤형 보육 주요내용(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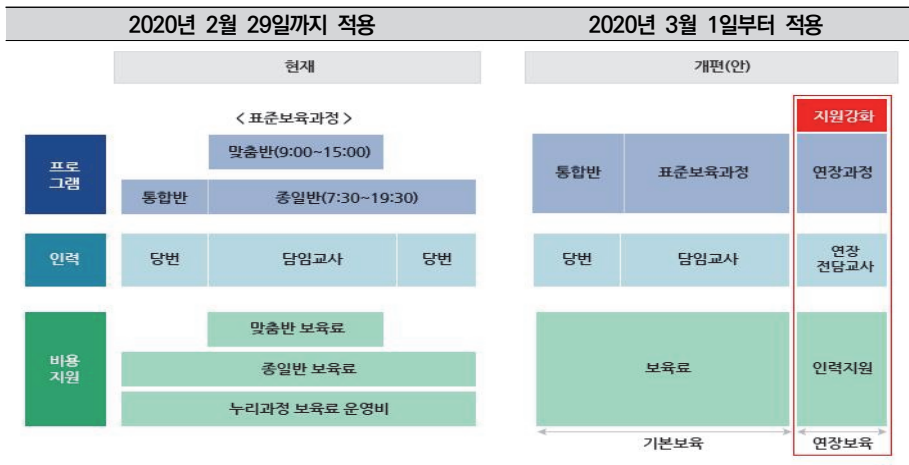
구분	종일반	맞춤반
이용시간	7:30~19:30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6만원)
보육료	1인당 월 825천원 (0세 기준)	1인당 월 660천원 (0세 기준) * 긴급보육바우처 포함 시 월 720천원
이용대상	맞벌이, 구직, 한부모, 다자녀 등	종일반 이용 외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4.25.).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라.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영유아 보육법」 개정과 더불어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었다(이윤신, 2019). 새로운 보육지원 체계가 도입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맞춤반과 종일반의 구분이 사라지고 보육수요를 고려한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한 점이다(박진아, 최효미, 최윤경, 2020, p. 31). 기본보육시간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시간이지만, 연장보육시간은 기본보육시간 이후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시간이므로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새롭게 배치하여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지원하였다. 보육지원체계의 개편안은 [그림 II-1-1]과 같다.

[그림 II-1-1] 보육지원체계 개편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정책, 보육지원체계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EB%B3%B4%EC%9C%A1%EC%A7%80%EC%9B%90%EC%B2%B4%EA%B3%84%20%EA%B0%9C%ED%8E%B8#hong (2023. 7. 5 인출)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지원 체계 또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표준보육과정과 연장과정에 대해 비용지원방식을 별도 적용하였으며 이때 0~2세 영아반의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게는 기관보육료를 지원하였다. 3~5세 유아반의 경우 기관 유형과 무관하

게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 지원 또한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원된다. 어린이집 비용지원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II-1-3>과 같다.

<표 II-1-3> 어린이집 비용지원 체계

		0~2세(영아반)		3~5세(유아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기관 지원	기본보육시간 (09:00~16:00)	인건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지급	
	연장보육시간 (16:00~19:30)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료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료	
부모지원		부모보육료 지원		부모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자료: 1) 박진아 외(2020).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연구 <표 II-1-1> 인용.
2) 보건복지부(2023). 보육사업안내. pp. 288-292, pp. 345-353, pp. 420-424.

마. 유보통합 추진(2022년~)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국정과제¹⁾에 유보 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포함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2023년 1월 30일,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유보통합은 1단계(2023년~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뉘서 추진되며, 1단계 시기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해소 및 행·재정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 시기에는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2022년 9월 14일 「유보통합추진 준비를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31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총리 훈령)이 시행되었다. 또한 2023년 4월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2023년 4월 14일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을 발족하여 추진 중이다.

1)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보건복지부)

2023년 현재 교사자격양성,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비용지원 개편 등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 중으로 유보통합 추진방안이 마련된 이후 변화된 비용지원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보육료 지원 제도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대상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부모보육료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만0~2세 보육 시 지원되는 기관보육료가 있다. 2023년 현재 보육료 지원단가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2-1〉 2023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원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5세반	장애아
계	1,113,000	778,000	596,000	280,000	1,212,000
부모보육료	514,000	452,000	375,000	280,000	559,000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	653,000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23.

가. 부모보육료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되며,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구조로, 보육료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보건복지부, 2023:338, 347).

부모보육료는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23:342). 또한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다른 기관을 주된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인 경우도 부모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23:342).

2023년 현재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및 지원단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2-2〉 2023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반	2022. 01. 01. 이후 출생
만1세반	2021. 01. 01. ~ 2021. 12. 31.
만2세반	2020. 01. 01. ~ 2020. 12. 31.
만3세반	2019. 01. 01. ~ 2019. 12. 31.
만4세반	2018. 01. 01. ~ 2018. 12. 31.
만5세반	2017. 01. 01. ~ 20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6. 1. 1.~200.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6. 01. 01. ~ 2010. 12. 31.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45.

〈표 II-2-3〉 2023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2023.1.1~)	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 (2023.1.1~)	452,000	452,000	678,000
			만2세반 (2023.1.1~)	375,000	375,000	562,500
			만3~5세반 (2023.1.1~)	280,000	280,000	420,000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45.

나. 기관보육료 지원 제도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의 한 기관보육료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외국인 아동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3:418). 지금의 기관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2006년 기본보조금에서 출발하여 2009년 기본보육료, 2020년 기관보육료로 변화하여 왔다.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영아보육 지원은 2002년 하반기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인건비 월 40만원을 지원한 데서 시작된 이후

(서문화·최혜선, 2007b:72), 2004년 시설별 지원에서 반별 지원으로, 2005년부터는 반별 지원에서 아동별 변화되었다. 세부적으로는 2004년부터 추경으로 자부담 10%를 포함하여 반당 월 15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아동별로 0세아 15만원 1세아 9만원, 2세아 6만원을 지원하였다(서문화·이혜민, 2014).

그러나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5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제2차 육아지원방안 보고에서 비롯되었다(서문화, 2006).

당시 국공립 및 법인 시설은 교사와 원장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이를 제외한 비용을 부모 부담으로 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하는 한편,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게는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본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서문화·이혜민, 2014:62). 기본보조금은 최소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드는 적정한 비용인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다.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은 대체로 국공립보육시설 비용 수준이었고(박기백 외, 2005), 이 가격을 민간보육시설 보육료에 적용할 경우 특히 영아의 부모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부모가 부담하는 절대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기본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간의 공정 경쟁을 위해 보육료·교육비가 동일해지도록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산출된 표준보육료·교육비와 부모부담 보육료·교육비와의 차액분을 서비스 개선비용으로 보고 2006년부터 매년 상향조정하여 2010년에 표준보육료·교육비의 서비스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다(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서문화·이혜민, 2014:63).

이후 기본보조금은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2006-2010)’에 반영되어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용을 정부가 기본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지원된 비용이 서비스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민간보육시설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부모 부담 보육료의 차이를 정부가 기본보조금으로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한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 시 가격규제 예외시설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6. 7. 27.).

2006년에는 우선 영아(0-2세)에 대하여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종전 시설 지

원은 기본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지원단가는 만 1세 미만은 아동 1인당 249천원, 1세 104천원, 2세 69천원이었다(여성가족부, 2006:25,27).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요건을 보면, ① 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②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을 지급, ③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④ 혼합반인 경우 연령이 낮은 아동의 교사대 아동 비율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 ⑤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06: 216).

기본보조금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영아의 경우 1인당 보육비용이 높아 부담이 크고, 보육시설에서도 보육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그간 일부에 한정된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보다는 전국적인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민간 영아반 지원을 확대한 것이고(여성부, 2005:188),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운영비 부담 완화, 부모의 보육기회 확대, 교사의 처우개선, 아동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혜택을 기대하였다(여성부, 2005:188).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따르면, 영아 기본보조금은 영아보육을 활성화하여 가정보육시설의 증가와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증가 효과를 가져왔으나, 부모의 비용부담이나 서비스 만족도에 미친 효과는 유의성이 없었고, 기본보조금으로 아동 1인당 107,000원이 지원될 때 교사 임금은 54,000원이 증가된다고 추정하였다(조병구 외, 2007; 서문화·이혜민, 2014:64).

또한 기본보조금은 아동별 지원을 전제로 출발하였으나, 시설에서 직접 수령하여 시설별 지원의 성격이 강하여 그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아동별로 지원하므로 부모보조금의 성격을 갖지만 부모가 아닌 시설에서 바로 수령하며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시설보조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두 가지 보조금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나 그 어느 장점도 살리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현숙, 2006). 2009년부터 추진되는 서비스 이용권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 기본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질 것인데, 바우처로부터 분리하여 시설보조금으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서문화·이혜민, 2014:64).

2014년 대법원에서는 ①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는 비용의 보조와 구분되며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므로 어린

이집 운영자에게 부정수급을 이유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과 ②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판결을 하였다.

한편 유아 기본보조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아 보육비용은 그 액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정부 관계 부처에서 기본보조금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유아 기본보조금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경기도 평택시, 강원도 홍천군, 전남 해남군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만 실시하고 본 사업으로는 추진되지는 않았다. 유아 기본보조금 미도입에는 유아 교육보육비는 영아 비용에 비하여 낮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고, 부모 부담 정도가 아동별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을 능가할 만큼 크지 않았다(서문화·이혜민, 2014:64 재인용). 이외에도 유치원 교육비가 자율화되어 있어서 규제에 한계가 있는 점, 유아 미술학원의 강한 지원 요구가 있다는 점들이 고려되었다.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 결과에서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이 사업이 교사 급여 등 보육시설 운영 과정과 연계하였기 때문에 운영상의 개선이나 교사 급여 증가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부모 비용 감소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유아교육 기본보조금 평가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서문화·최혜선, 2007; 문무경·이세원, 2007; 서문화·이혜민, 2014:65).

2009년 초에는 정부 미지원시설 영아(0~2세) 보육료에 기본보조금을 합산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기본보조금이 종료되었으나, 2009년 9월부터 기존과 같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부모보육료와 별도로 기본보육료(기존 기본보조금)를 신설하여 지원하였으며, 2020년 기본보육료를 기관보육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관보육료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변동이 없었으며, 이후 최저임금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2-4〉 민간·가정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제도 변화

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고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10인 이상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 • 지원수준: 40만원(자부담 10% 포함) ※ 소요원원 80% 미만은 인건비 지원 미지원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별도 교사를 배치하여 영아반을 운영하는 보육시설 • 지원수준: 15만원 / 반(자부담 10% 포함) ※ 반별 현원이 3인 이상(2세는 5인)인 경우부터 지원 	• 지원대상 확대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영아반 운영비 지원 • 지원방식: 반별 → 아동 연령별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아동1인당 15만원(3명까지) - 1세반: 아동1인당 9만원(5명까지) - 2세반: 아동1인당 6만원(7명까지) 	• 민간시설의 영아 보육 활성화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 운영비 지원 → 기본보조금 도입 (용어 혼재)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 및 직장 일부 제외²⁾)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249천원(3명까지) - 1세반 : 아동 1인당 104천원(5명까지) - 2세반 : 아동 1인당 69천원(7명까지) • 지원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②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을 지급 ③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④ 혼합반인 경우 연령이 낮은 아동의 교사대 아동 비율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 ⑤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조금 도입 • 지원대상 확대(직장보육시설 일부) 및 지원단가 인상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 및 직장 일부 제외)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292천원(3명까지) - 1세반 : 아동 1인당 134천원(5명까지) - 2세반 : 아동 1인당 86천원(7명까지) • 지원조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⑤ 동일 - ⑥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시설은 '06년 지원단가로 지원 - ⑦ e-보육에 의한 아동·종사자관리 및 보조금 신청관리 - ⑧ 해당연도 인상단가의 50% 이상을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으로 사용 	• 기본보조금이 보육서비스 질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고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 및 직장 일부 제외)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340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164천원 - 2세반 : 아동 1인당 109천원 • 지원조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⑧ 동일 - ⑨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행정제재 처분의 효력이 승계 또는 진행 중인 시설 제외 •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러운 교사의 사망, 사직 등으로 교사 결원시 신청당월1개월에 한해 해당반만 기본보조금 지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조금이 보육 서비스 질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액 상향 및 규제의 완화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 기본보조금 지원 종료 • 정부 미지원시설 영아(0~2세) 보육료에 기본보조금 합산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령</th><th>정부지원시설</th><th>미지원시설</th></tr> </thead> <tbody> <tr> <td>만0세</td><td>383,000원</td><td>733,000원</td></tr> <tr> <td>만1세</td><td>337,000원</td><td>506,000원</td></tr> <tr> <td>만2세</td><td>278,000원</td><td>390,000원</td></tr> <tr> <td>만3세</td><td>191,000원</td><td>191,000원</td></tr> <tr> <td>만4세</td><td>172,000원</td><td>172,000원</td></tr> </tbody> </table> <p>※ 기본보조금 지원 종료 및 미지원시설 0~2세 보육료에 포함</p>	연령	정부지원시설	미지원시설	만0세	383,000원	733,000원	만1세	337,000원	506,000원	만2세	278,000원	390,000원	만3세	191,000원	191,000원	만4세	172,000원	17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조금 지원 종료 및 보육료에 합산하여 지원
연령	정부지원시설	미지원시설																		
만0세	383,000원	733,000원																		
만1세	337,000원	506,000원																		
만2세	278,000원	390,000원																		
만3세	191,000원	191,000원																		
만4세	172,000원	172,000원																		
2009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육료 지원(2009. 9. 1. 시행)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보육시설 중 만0~2세 아동 및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정부지원시설 및 직장 일부 제외)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350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169천원 - 2세반 : 아동 1인당 112천원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육료 신설 • 2009. 9. 1. 시행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육료 1인당 지원기준단가 2009년도 동일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361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174천원 - 2세반 : 아동 1인당 115천원 •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근거 명시 																		

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고
2012년 ~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육료 1인당 지원기준단가 2011년도 동일 * 부모보육료도 2011년과 동일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320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180천원 - 2세반 : 아동 1인당 118천원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383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185천원 - 2세반 : 아동 1인당 121천원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395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191천원 - 2세반 : 아동 1인당 125천원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437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238천원 - 2세반 : 아동 1인당 161천원 ※ 기본보육료 적용시기 : 2018년 1월(이전은 3월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 반영³⁾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485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264천원 - 2세반 : 아동 1인당 179천원 ※ 기본보육료 평균 10.9% 인상(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반영)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육료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500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272천원 - 2세반 : 아동 1인당 18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육료→기관보육료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528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287천원 - 2세반 : 아동 1인당 194천원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570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310천원 - 2세반 : 아동 1인당 210천원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 아동 1인당 599천원 - 1세반 : 아동 1인당 326천원 - 2세반 : 아동 1인당 221천원 	

2)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3) 최저임금 사급이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인상되어 2017년대비 16.4% 인상됨.

- 주: 1) 교사대 아동비율: 2004년 2세 미만 1:5, 2세 1:7, 3세 이상 1:20, 장애아 1:5
→ 2005년 신규시설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세 이상 1:20, 장애아 1:3
→ 2006년부터 2005년 신규시설과 동일한 기준 적용
2) 인건비 지원(2005년) 원장/영아반 보육교사 90%(자부담10%) → 80%, 유아반 보육교사 50%→30%, 취사
부/치료사 90% → 100%
3) 2009년까지 기본보육료(기본보조금) 지원은 보육사업안내에 보육료 지원이 아닌 '시설지원'으로 되어 있음.

- 자료: 1) 보건복지부(2003).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3) 여성부(2005).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4) 여성가족부(2006). 2006 보육사업안내.
5) 여성가족부(2007). 2007년도 보육사업안내.
6) 여성가족부(2008). 2008년도 보육사업안내.
7) 보건복지가족부(2009a). 2009 보육사업안내.
8) 보건복지가족부(2009b). 2009 보육사업안내(개정판).
9)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보육사업안내.
10) 보건복지부(2011).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11) 보건복지부(2012). 2012년 보육사업안내.
12)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보육사업안내.
13)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14) 보건복지부(2015).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15)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16)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7)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18)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19)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20)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21)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22) 보건복지부(2022).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표 II-2-5〉 연도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2004년	2005년	2006~2007년	2008~2013년	2014년~
지원 대상	• 40인 이상	• 40인 이상	• 21인 이상	• 21인 이상	• 21인 이상
지원 형태	• 반별 지원 *2002~2003년: 시설별 지원	• 아동별 지원	• 아동별 지원	• 아동별 지원	• 아동별 지원
지원 비율	• 원장: 인건비 100% (자부담 10% 포함) • 보육교사: 소오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보수총액의 50% - 영아반을 2개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한하여(0~24개월 미만의 영아반은 1개반부터 지원) 담당 보육교사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보수총액의 100%(자부담 10% 포함) 지원	• 원장: 인건비 80% • 보육교사: 소오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 ※ 영아반 2개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한하여(0~24개월 미만의 영아반은 1개반부터 지원) 지원 - 유아반: 인건비 30%	• 원장: 좌동 • 보육교사: 좌동	• 원장: 좌동 • 보육교사: 좌동	• 원장: 좌동 • 보육교사: 좌동
지원 기준 (현원)	• 원장: 현원 20인 이하 제외 • 보육교사 [기존 시설] -2세 미만반: 아동 5명 중 3명 -2세반: 아동 7명 중 5명 -3세 이상반: 아동 20명 중 16명 [신규시설 등] -0세반: 아동 3명 중 2명 -1세반: 아동 5명 중 3명 -2세반: 아동 7명 중 5명	• 원장: 현원 20인 이하 제외 • 보육교사 [기존 시설] -2세 미만반: 아동 5명 중 3명 -2세반: 아동 7명 중 5명 -3세 이상반: 아동 20명 중 16명 [신규시설 등] -0세반: 아동 3명 중 2명 -1세반: 아동 5명 중 3명 -2세반: 아동 7명 중 5명	• 원장: 좌동 • 보육교사 -0세반: 아동 3명 중 2명 -1세반: 아동 5명 중 3명 -2세반: 아동 7명 중 5명 -3세반: 아동 15명 중 12명 -4세 이상반: 아동 20명 중 16명	• 원장: 좌동 • 보육교사: -0세반: 아동 3명 중 2명 -1세반: 아동 5명 중 3명 -2세반: 아동 7명 중 4명 -3세반: 아동 15명 중 8명 -4세 이상반: 아동 20명 중 11명	• 원장: 좌동 -정원20인 이하, 현원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원장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좌동

구분	2004년	2005년	2006~2007년	2008~2013년	2014년~
		-3세반: 아동 15명 중 12명 -4세 이상반: 아동 20명 중 16명			

자료: 1)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2) 여성부(2005).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3) 여성가족부(2006). 2006 보육사업안내.
4) 여성가족부(2007). 2007년도 보육사업안내.
5) 여성가족부(2008). 2008년도 보육사업안내.
6)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3.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제도

정부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제도는 시설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3: 377).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와 보육교사 급여상승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3), 인건비 이외에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3: 455, 457)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건비 지원

1)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지역마다 기준이 상이하나 대체로 원장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며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대체교직원 인건비,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가 있으며 인건비 지원 기준과 수준은 다음 <표 1>과 같다(보건복지부, 2023: 383-388).

<표 II-3-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2023년)

구분	지원 조건		지원 수준
원장	대도시, 중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정원 21인 이상, 현원 5~17인 이하 어린이집 중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 정원 21인 이상, 현원 18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 인건비 80%
	농어촌 등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정원 21인 이상, 현원 5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구분	지원 조건	지원 수준
영아반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 1세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 2세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80%
유아반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 4세 이상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30%
대체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대상자의 호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직원의 호봉기준
농어촌 등 취약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 지원

자료: 1) 박진아, 최효미, 최윤경(2020).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연구 <표 II-1-9> 인용.

2) 보건복지부(2023), 2023 보육사업안내, pp.384-385

한편,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조건은 현원 기준으로 정원충족률 50% 이상이 원칙이나 이와 무관하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한다(보건복지부, 2023: 385). 먼저, 농어촌 지역에서 혼합 연령으로 유아반을 운영할 때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가 어려워 분반할 경우 현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이후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의 퇴소로 인해 정원충족률 50% 미만인 된다면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장한다. 이에 더하여 아동수가 감소되거나 반 구성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경우 3월에 확정된 영아반, 유아반 교사 수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일 경우 반별 지원 기준과 무관하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특수한 보육 상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특수한 보육 상황이 발생하는 시설로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 있으며 이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진아, 최효미, 최윤경, 2020: 39). 먼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인건비

를 지원받는다(보건복지부, 2023: 389). 신규 개원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 아동 12명 미만이라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다만, 1년 이후에도 장애아동이 12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건비 미지원시설로 전환된다(보건복지부, 2023: 391).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 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의미하며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 된다(보건복지부, 2023: 396). 장애전문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액과 수당은 <표 II-3-2>와 같다.

<표 II-3-2>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2023년 기준)

구분		지원액	수당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월 지급액 80%	-
	보육교사 · 특수교사	월 지급액 80%	•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 수당 *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유치원 과정) 자격소지자 : 40만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기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 장애아통합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5만원 * 일반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0만원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채용된 교사: 15만원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월 지급액 100%	-
	치료사	월 지급액 100%	• 치료사 자격 수당 40만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교사	정부지원시설 : 월 지급액 80%	• 장애아 현원이 1명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 수당 *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유치원 과정) 자격소지자 : 40만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8.5) •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 '16.3.1까지 이수한 사람(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유치원 과정 특수교사) : 40만원
		민간지정시설 : 1인당 월 174만 6천원	• 장애아 현원이 1명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기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 장애아통합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5만원 * 일반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0만원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채용된 교사: 15만원

구분		지원액	수당
	장애아 방과후 교육교사	정부지원시설인 경우 월 지급액 100%	-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 보육사업안내, pp.393~394, 396~399

한편,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20인 이상 보육하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에도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 80%가 지원되며 이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의 지원액 수준과 동일하다(보건복지부, 2023: 402).

3) 연장보육에 대한 인건비 지원

2020년 3월 새로운 보육지원체계 도입되며 정부는 보육의 형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인 야간연장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한하여 월 지급액 80%를 지원받는다(보건복지부, 2023: 408). 한편,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근무 시간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라지며 근무 시간이 6~6.5시간일 경우 1,730,000원, 7~7.5시간이면 2,018,000원, 8시간 이상일 경우 2,306,000원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23: 408).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근무형태로 야간연장 보육을 할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야간연장반 한 반당 475,000원을 지원받는다(보건복지부, 2023: 409).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에서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24시부터 익일 7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새벽근무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또한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3: 413). 이 때, 인건비 지원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80%를 지급한다. 기관보육료 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단가가 다르며 근무 시간이 6~6.5시간일 경우 1,730,000원, 7~7.5시간이면 2,018,000원, 8시간 이상일 경우 2,306,0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더하여 새벽근무 보육교사의 경우 1인당 2,018,0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3: 413).

마지막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중 국공립이나 법인시설, 직장어

린이집일 경우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휴일 근무수당 일일 56,0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3: 416).

나. 보조교사 및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1) 보조교사 지원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 또는 통합어린이집, 영아반 2개를 이상 운영하고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466). 2023년 기준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된다(보건복지부, 2023: 467-468). 근무할 경우에는 보조교사 1명 당 월 1,042,0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3: 467).

2)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연장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하고 이용시간이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이며 전자출결시스템을 적용하여야만 인건비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3: 470). 보조교사와 동일하게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실제 근무 시 월 1,042,000원과 함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130,0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3: 471).

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에서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3).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될 경우 보육교사에게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월 지급액에는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4대 보험료 중 교사 본인부담분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44). 이 때, 처

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의 근무수당, 탄력편성수당은 별도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44). 이외에도 운영비에 보육교사 급여상승분을 지급하는데 교사가 배정된 현원 1명 이상인 기본보육반 각 1개 반당 40만원을 지급하며 겸직원장이 담임으로 있는 반과 장애아기본반도 지급 대상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47).

라. 처우개선비

1)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이다(보건복지부, 2023: 457).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시간에서 평일 8시간 이상을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와 평일 4시간 이상을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3: 457). 지원단가는 2023년 기준 일 8시간 근무한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일 경우 월 26만원을 지원받으며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는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보건복지부, 2023: 458).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 기준 월 7만 5천원을 지급하며 이 경우에도 평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3: 459).

2)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원대상은 담임교사,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이다. 평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농촌 지역 등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를 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2023년 기준 월 11만원이다(보건복지부, 2023: 455-456).

4.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분류

이원선 외(2022)의 연구에서는 특수보육시책 사업 지원유형을 재분류하였으며, 대항목 10개, 세부항목 42개로 세분화하였다. 이중 보육교사 인건비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항목과 세부항목은 진하게 표시하였다.

〈표 II-4-1〉 특수보육시책 사업 분류체계(대분류)

대 항목	세부항목
1. 보육비용	부모보육료 ¹⁾ 기타 필요경비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처우개선비, 근속수당, 월정액수당(복리후생비, 담임수당 등), 간헐적수당(명절휴가비, 당직수당 등)
3. 인건비 지원	원장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교사 운영도우미 등 인건비, 간호사영양사 인건비, 기타 종사자 인건비
4.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급간식비, 차량운영비, 아동상해보험료, 평가(인증) 지원금, 재무회계 및 전기 안전 수수료, 건강안전 등 관련 운영비, 기타 포괄적 지원
5. 공인시설 지원	공인시설 인건비 지원, 기타 운영비
6. 환경개선 지원	설치비, 기능보강 및 장비비, 기타
7. 취약보육 지원	장애아전문·통합 인건비(수당), 장애아전문·통합 운영비, 다문화 인건비(수당), 다문화 전담 운영비, 야간연장·시간제 인건비(수당), 야간연장·시간제 운영비, 방과후 운영비 및 인건비, 기타
8. 교육·연수 등	교육연수, 행사 등 지원, 기타
9.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어린이집 지원, 교사 지원, 부모 지원, 기타
10. 기타	

주: 1) 차액보육료 관련 내용으로 부모부담보육료에 해당함.
자료: 이원선 외(2022). 2021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p.3.

〈표 II-4-2〉 특수보육시책 사업 분류체계(중분류)

중분류	구분	비고
정부 인건비 지원 여부	차등 지원	지원, 미지원 구분하여 차등지급
	인건비 지원	국공립, 법인 등(인건비 지원시설)
	기관보육료지원	민간, 가정, 협동 등
	미적용	전체 어린이집에 보편 지원
	기타	열린, 24시, 숲, 생태어린이집, 어린이집 연합회, 육아중
	공인시설	국공립 외 공인시설, 공공형 포함

중분류	구분	비고
	전환시설	국공립 전환시설
	장애통합	장애통합, 장애전문 어린이집 지원사업
	농어촌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사업
평가 (인증) 여부	차등지원	등급별로 지원 / 인증, 미인증 구분하여 지원
	A, B등급 및 인증유지	
	C, D등급 및 미인증	
	미적용	평가 관련 없이 지원제공
	기타	A-C등급 및 인증유지, A등급에게만 지원하는 사업

자료: 이원선 외(2022). 2021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p.4.

나.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규모

2021년 시·도와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특수보육시책 사업은 총 2,374개였으며, 시·도 특수보육시책은 348개(14.7%),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은 2,026개(85.3%)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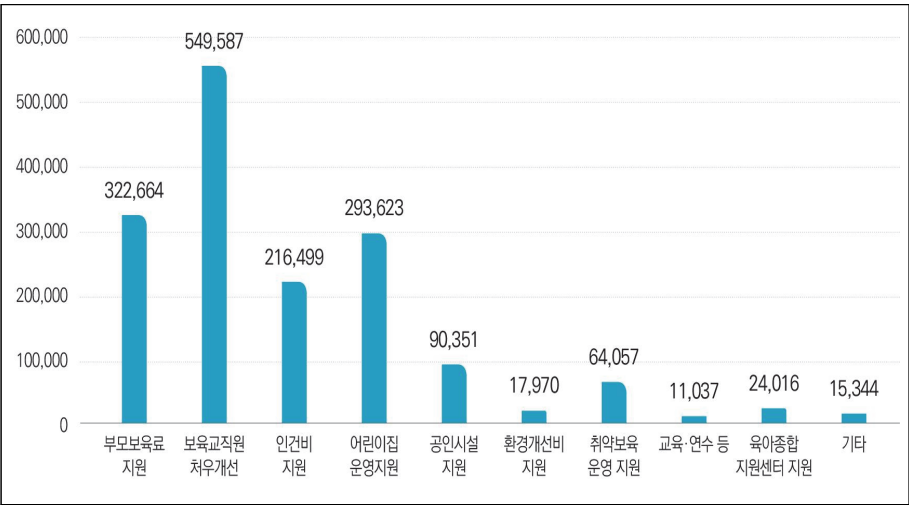
전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은 총 1조 6천 51억원 수준으로, 2018년(1조 2천 87억원 수준) 대비 3천 964억원(3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중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은 1조 2천 480억원(77.8%),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은 3천 570억원(22.2%)을 차지하였다.

1조 2천 480억원으로 추정되는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은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는데, 총액 기준으로 시·도가 45.7%를 부담하고, 시·군·구가 54.3%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사업별로 분담 비율은 각기 상이하였다.

다.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사업유형별 예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전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의 34.2%(5,495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육비용 20.1%(3,226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8.3%(2,936억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환경개선 1.1%(179억원), 교육·연수 등 0.7%(113억원)이었다.

[그림 II-4-1]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유형별 예산



자료: 이원선 외(2022). 2021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p.42.

<표 II-4-3>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유형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보육비용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공인시설 지원	환경개선 지원	취약보육 운영 지원	교육·연수 등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원	기타	전체
전체	322,664	549,587	216,499	293,623	90,351	17,970	64,057	11,037	24,016	15,344	1,605,148
비율	20.1	34.2	13.5	18.3	5.6	1.1	4.0	0.7	1.5	1.0	100.0
서울	66,737	113,720	71,574	65,793	60,914	3,388	12,981	600	2,201	5,821	403,729
부산	12,912	14,996	2,830	5,160	666	520	715	512	2,343	50	40,705
대구	5,833	12,542	809	4,151	389	1,114	516	282	519	1,451	27,608
인천	30,581	31,060	4,413	14,074	7,863	862	1,719	164	3,621	131	94,489
광주	5,548	9,435	2,141	6,301	251	-	158	26	-	-	23,861
대전	7,359	21,415	15,314	14,702	-	-	1,620	50	327	-	60,787
울산	5,451	11,446	1,842	2,018	476	1,075	1,381	151	819	-	24,659
세종	2,352	8,491	2,333	2,029	-	112	-	21	30	-	15,368
경기	106,996	203,006	42,799	89,642	15,420	4,562	38,958	6,660	5,708	82	513,834
강원	7,351	8,654	7,542	4,366	528	1,025	154	579	2,547	-	32,745
충북	8,241	16,763	2,657	10,504	63	433	760	172	2,211	70	41,874
충남	17,317	24,513	27,087	9,379	1,020	2,814	1,065	263	1,169	4,882	89,508
전북	6,432	10,917	1,723	5,783	40	231	459	230	-	6	25,821
전남	10,410	8,699	6,695	11,773	1,002	227	455	605	-	-	39,867
경북	12,756	25,789	10,333	23,805	2	1,068	968	291	1,209	2,849	79,069
경남	14,515	19,673	8,611	18,040	883	540	1,376	382	1,313	2	65,335
제주	1,873	8,468	7,794	6,102	832	-	771	49	-	-	25,889

주: ‘-’는 특수보육시책사업 없음을 나타냄.
자료: 이원선 외(2022). 2021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pp.42.-43.

〈표 II-4-4〉 시·도 보육료 상한액: 2023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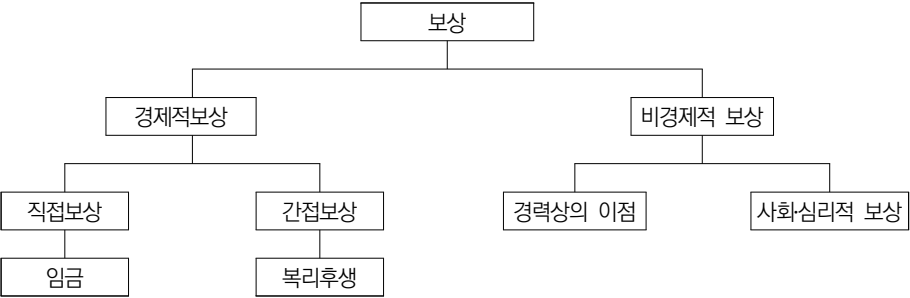
시·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 3세	만 4·5세	만 3세	만 4·5세
서울	483.4	462.6	483.4	462.6
부산	360.5	345.5	360.5	345.5
대구	368	352	374	362
인천	408	393	408	393
광주	365	353	381	369
대전	376	357	376	357
울산	359	343	375	356
세종	368	355	369	351
경기	405	382	408	408
강원	360	341	371	360
충북	383	363	390	383
충남	483.7	444.1	483.7	444.1
전북	368	354	370	356
전남	371	352	385	373
경북	372	354	377	359
경남	20인 초과 : 357 20인 이하 : 373	20인 초과 : 340 20인 이하 : 365	20인 초과 : 357 20인 이하 : 373	20인 초과 : 340 20인 이하 : 365
제주	356	344	356	344

자료: 1) 서울특별시(2023). 2023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 11
2) 부산광역시(2023). 2023 부산광역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p. 13
3)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어린이, 보육,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2023년 보육 수납 한도액,
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50121 (인출 2023.7.31)
4) 인천광역시(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46
5) 2023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315호)
6)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생활정보, 보육료 지원,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3155> (인출 2023.7.31.)
7)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출산보육, 보육료등수납한도액,
<https://www.ulsan.go.kr/u/welfare/contents.ulsan?m Id=1380> (인출 2023.7.31.)
8) 2023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236호), p. 1.
9) 2023년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결정 공고(경기도 공고 제2023-219호), p. 1.
10) 2023년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강원도 공고 제2023 - 277호), p. 1.
11) 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문(충청북도 공고 제2023- 224 호), p. 1.
12) 충청남도(2023) 2023년 충청남도 보육 특수시책 사업 안내. p. 6.
13) 2023년 전라북도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전라북도 공고 제2023-280호)
14) 2023년 전라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공고(전라남도 공고 제2023-252호)
15) 2023년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 2023-246호)
16) 2023년 2023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3-209호)
17)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8호)

5.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및 유사 서비스 비교

보육교사 처우는 지위와 신분에 따라 대우하는 것으로 보상의 개념과 유사하다. 보상은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경제적 보상은 임금 등 직접적인 보상과 복리후생 등 간접적인 보상으로 구성된다. 비경제적 보상은 경력상의 이점과 사회심리적 보상 등이 있다.

[그림 II-5-1] 보상의 개념



자료: 이학종양혁승(2019).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개정판). p.323.

가.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정부 부처에서 1년에 한 번씩 일정한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호봉표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는 주로 정부가 해당 서비스의 재원을 상당 부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이진구 외, 2017:19).

보육교사는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이진구 외, 2017:19).. 이러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실질적 최저임금을 정하고, 호봉 승급에 따라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을 도모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진구 외, 2017:19).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원칙을 보면, 첫째,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3:86), 인건비 지원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376). 둘째,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 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 분은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86). 특히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86).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86).

보육교직원 보수 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 관계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사 등의 호봉, 근무성과와 시설의 운영 여건 및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고,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조리사)으로 교직원을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직원(사무원, 사회복지무원, 도우미 등)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379). 또한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받고,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사용자와 고용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379).

〈표 II-5-1〉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원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연지급액	월지급액	연지급액	월지급액	연지급액	월지급액
1	26,343,600	2,195,300	25,189,200	2,099,100	24,148,800	2,012,400
2	26,948,400	2,245,700	25,299,600	2,108,300	24,242,400	2,020,200
3	27,694,800	2,307,900	25,380,000	2,115,000	24,312,000	2,026,000
4	28,468,800	2,372,400	25,524,000	2,127,000	24,356,400	2,029,700
5	29,193,600	2,432,800	25,959,600	2,163,300	24,398,400	2,033,200
6	30,298,800	2,524,900	26,648,400	2,220,700	24,436,800	2,036,400
7	31,294,800	2,607,900	27,230,400	2,269,200	24,495,600	2,041,300
8	32,403,600	2,700,300	27,667,200	2,305,600	24,532,800	2,044,400
9	33,246,000	2,770,500	28,231,200	2,352,600	24,584,400	2,048,700
10	34,120,800	2,843,400	28,860,000	2,405,000	24,622,800	2,051,900
11	35,126,400	2,927,200	29,721,600	2,476,800	24,811,200	2,067,600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연지급액	월지급액	연지급액	월지급액	연지급액	월지급액
12	36,084,000	3,007,000	30,572,400	2,547,700	25,111,200	2,092,600
13	36,828,000	3,069,000	31,156,800	2,596,400	25,592,400	2,132,700
14	37,585,200	3,132,100	31,776,000	2,648,000	26,127,600	2,177,300
15	38,637,600	3,219,800	32,455,200	2,704,600	26,626,800	2,218,900
16	39,380,400	3,281,700	33,386,400	2,782,200	27,344,400	2,278,700
17	40,142,400	3,345,200	34,124,400	2,843,700	27,907,200	2,325,600
18	40,988,400	3,415,700	34,830,000	2,902,500	28,580,400	2,381,700
19	41,766,000	3,480,500	35,464,800	2,955,400	29,223,600	2,435,300
20	42,475,200	3,539,600	36,168,000	3,014,000	29,890,800	2,490,900
21	43,507,200	3,625,600	37,279,200	3,106,600	30,931,200	2,577,600
22	44,276,400	3,689,700	38,006,400	3,167,200	31,575,600	2,631,300
23	44,961,600	3,746,800	38,613,600	3,217,800	32,186,400	2,682,200
24	45,651,600	3,804,300	39,303,600	3,275,300	32,769,600	2,730,800
25	46,431,600	3,869,300	39,934,800	3,327,900	33,409,200	2,784,100
26	47,154,000	3,929,500	40,564,800	3,380,400	33,990,000	2,832,500
27	47,822,400	3,985,200	41,113,200	3,426,100	34,423,200	2,868,600
28	48,516,000	4,043,000	41,713,200	3,476,100	35,001,600	2,916,800
29	49,154,400	4,096,200	42,370,800	3,530,900	35,554,800	2,962,900
30	49,852,800	4,154,400	42,942,000	3,578,500	36,132,000	3,011,000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77.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호봉승급시 월지급액 평균 인상률은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순으로 각각 2.2%, 1.9%, 1.4%였고, 2019년 호봉승급시 각각 2.4%, 2.1%, 1.7%였던 점을 보면 약간 감소하였다. 일정부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였다고 보이나, 보육교사나 조리원에 비해 원장의 호봉승급시 인상률이 다소 높다. 보육교사 기준으로 월지급액은 1호봉 교사에 비해 5호봉 교사는 3.1%, 11호봉 교사는 14.6%, 20호봉 교사는 43.6%, 30호봉 교사는 70.5%가 더 높게 나타났다.

2023년 보육교사 1호봉 월지급액 2,099,100원은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0,580원에 비해 4.4%(88,520원) 더 많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0,270원보다 보육교사의 1호봉 1,567,020원이 24.3%(306,750원) 더 많았던 것에 비해 차이가 매우 좁혀진 것이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6년 대비 37.3% 인상된 반면, 보육교사 1호봉 월지급액은 동 기간 25.3% 증가하여 약 12%p 차이를 보였다.

〈표 II-5-2〉 연도별 최저임금과 보육교사 월지급액 수준 비교

단위: 원, %

적용연도	최저임금 수준				보육교사 1호봉 월지급액 (b)	월급 차이 (c=b-a)	비율 (c/a)
	시간급	인상률	인상액	월급 ¹⁾ (a)			
2023년	9,620	5.0	460	2,010,580	2,099,100	88,520	4.4
2022년	9,160	5.05	440	1,914,440	2,018,400	103,960	5.4
2021년	8,720	1.5	130	1,822,480	1,940,800	118,320	6.5
2020년	8,590	2.87	240	1,795,310	1,911,700	116,390	6.5
2019년	8,350	10.9	820	1,745,150	1,856,000	110,850	6.4
2018년	7,530	16.4	1,060	1,573,770	1,702,800	129,030	8.2
2017년	6,470	7.3	440	1,352,230	1,621,800	269,570	19.9
2016년	6,030	8.1	450	1,260,270	1,567,020	306,750	24.3
2016년 대비 증감율 (2023년)	37.3	-	-	37.3	25.3	-	-

주: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자료: 1)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2023. 7.2. 인출).

2) 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나. 보육교사 월지급액 포함 내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2006년 기본급에 기말수당 및 가계 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급식비 등 수당을 포함하여 월지급액으로 통일되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으로 보육교사의 중식비, 근속수당 등을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중복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특수보육시책의 수당을 비롯한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II-5-3〉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변동 내역

연도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비고
2001~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월봉급액•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보수계산기준<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2003~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2002년 보수, 봉급, 수당과 개념 동일• 보수계산 기준<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보수계산 시 봉급표상 월지급액

연도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비고
	<p>〈각종 수당의 지급내역, 2004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말수당 및 가계지원비: 기본급의 100% 연4회 지급 - 정근수당 :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 장기근속수당 : 6호봉부터 월 40,000원 지급(11호봉부터 월 50,000원, 16호봉부터 월 60,000원, 21호봉부터 월 80,000원 지급) - 가계보조수당 : 월 20,000원 지급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2회 지급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2002년 보수, 봉급, 수당, 보수계산 기준 개념 동일 • 수당에 교통급식비 추가 <p>〈각종 수당의 지급내역, 200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말수당 및 가계지원비: 기본급의 100% 연4회 지급 - 정근수당 :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 장기근속수당 : 6호봉부터 월 40,000원 지급(11호봉부터 월 50,000원, 16호봉부터 월 60,000원, 21호봉부터 월 80,000원 지급) - 가계보조수당 : 월 20,000원 지급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2회 지급 - 교통급식비 : 월 80,000원 지급 	-2002~2004년도도 교통급식비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5년에 단순 누락분 오류를 포함한 것으로 보임.
2006~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월지급액: 2006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 월 지급액 • 월지급액: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연봉을 월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금액 • 연봉액: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급식비 등을 반영하여 연간 총 급여를 산정한 금액이다. • 시간외수당: 실제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월지급액 표현 신설 -월지급액 명시 -연봉액 및 시간외수당 명시
2012~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월지급액: 201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 월 지급액 • 이외 용어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 교직원 -시설 → 어린이집
2014~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지급액(봉급월액):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연봉을 월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금액 • 연봉액(보수총액):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급식비 등을 반영하여 연간 총 급여를 산정한 금액 • 호봉: 근무경력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 • 시간외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함 	-용어 표현 및 일부 개념 변경
2018~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총액: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급식비 등을 반영하여 연간 총 급여를 산정한 금액 	-연봉액(보수총액) → 보수총액
2022~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지급액(봉급월액):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 보수총액 용어 삭제 • 이외 용어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지급액 용어 수정 -보수총액 개념 삭제

자료: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다. 유사 서비스 비교

1) 아이돌보미-영아종일제서비스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중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3년 영아 1인 월 200시간 이용을 단순 계산시 정부지원금은 월 2,216,000원으로, 보육교사 1호봉 월지급액 2,099,100원⁵⁾보다 더 높다. 또한 영아종일제서비스 종사자의 아이돌봄 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기준은 명확하나 어린이집에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표 II-5-4〉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1,0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주: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2&L_MENU_CD=020202&H_MENU_CD=0202&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2023. 6.15 인출

〈표 II-5-5〉 영아종일제서비스 활동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 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2&L_MENU_CD=020202&H_MENU_CD=0202&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2023. 6.15 인출

〈표 II-5-6〉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1,08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4)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2&L_MENU_CD=020202&H_MENU_CD=0202&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2023. 6.15 인출

5) 법정부담금 포함시 2,487,400원, 시간외수당 포함시 2,592,900원임.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2&L_MENU_CD=020202&H_MENU_CD=0202&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2023. 6.15 인출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⁶⁾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이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게재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와 최저임금 월급여 2,010,580원을 반영하고,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이 반영되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원칙은 다음의 표와 같고, 정부 가이드라인은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이나,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II-5-7〉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명시 가능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6) 보건복지부-정보-법인/시설/단체-사회-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74482, 2023. 7.5 인출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74482)

또한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직위분류 예시 제시와 함께, 인건비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5-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위분류 예시: 생활시설 중심

직위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노숙인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총무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총무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74482)

〈표 II-5-9〉 2023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원, 월

호 봉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 복지사	선임 생활 지도원	생활 지도원	-	관리직	기능직
	사회/노인- 이용시설	관장	-	부장	과장	선임사회 복지사	사회 복지사	-	-	-
	장애인-이용시설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	-
1호봉		2,727,800	2,575,500	2,455,500	2,267,000	2,159,800	2,073,500	2,042,900	2,032,100	2,010,600
2호봉		2,820,800	2,659,900	2,534,600	2,323,200	2,211,400	2,112,400	2,091,800	2,068,500	2,033,500
3호봉		2,916,400	2,755,700	2,627,000	2,385,000	2,274,100	2,151,100	2,127,100	2,109,500	2,069,200
4호봉		3,024,800	2,849,500	2,721,600	2,482,000	2,336,500	2,206,900	2,178,500	2,148,600	2,107,400
5호봉		3,148,900	2,956,700	2,823,500	2,584,800	2,399,500	2,265,300	2,232,000	2,190,300	2,144,600

호 봉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 복지사	선임 생활 지도원	생활 지도원	-	관리직	기능직
	사회/노인- 이용시설	관장	-	부장	과장	선임사회 복지사	사회 복지사	-	-	-
	장애인-이용시설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	-
6호봉		3,278,800	3,073,400	2,938,000	2,691,000	2,487,200	2,323,300	2,296,400	2,230,000	2,192,800
7호봉		3,408,500	3,189,700	3,052,200	2,801,700	2,576,600	2,410,000	2,385,400	2,307,500	2,229,100
8호봉		3,542,700	3,323,700	3,168,700	2,912,900	2,671,000	2,505,300	2,472,700	2,390,200	2,288,000
9호봉		3,677,900	3,457,800	3,301,600	3,020,900	2,770,100	2,595,000	2,546,200	2,457,600	2,360,400
10호봉		3,806,400	3,588,500	3,433,200	3,136,000	2,861,500	2,673,300	2,627,400	2,543,800	2,441,300
11호봉		3,934,800	3,708,000	3,556,100	3,242,300	2,952,800	2,742,900	2,690,600	2,606,200	2,503,900
12호봉		4,061,000	3,816,400	3,663,300	3,338,400	3,034,300	2,802,800	2,754,000	2,676,800	2,564,900
13호봉		4,169,400	3,912,700	3,757,400	3,422,300	3,112,600	2,860,200	2,803,800	2,742,300	2,629,000
14호봉		4,258,000	4,003,100	3,850,900	3,503,800	3,187,400	2,918,900	2,848,200	2,778,000	2,677,600
15호봉		4,347,300	4,089,100	3,944,900	3,581,900	3,259,100	2,979,600	2,902,400	2,809,500	2,719,900
16호봉		4,431,800	4,171,600	4,028,700	3,655,700	3,328,100	3,045,600	2,952,600	2,864,200	2,762,000
17호봉		4,511,000	4,241,200	4,101,300	3,726,000	3,393,000	3,111,200	3,000,700	2,917,800	2,815,100
18호봉		4,585,900	4,312,800	4,174,200	3,794,300	3,455,600	3,173,700	3,057,700	2,971,500	2,866,700
19호봉		4,656,000	4,381,100	4,239,100	3,854,600	3,513,600	3,229,900	3,113,700	3,016,800	2,921,300
20호봉		4,718,600	4,445,900	4,301,900	3,914,900	3,570,200	3,284,700	3,170,200	3,060,500	2,967,400
21호봉		4,780,100	4,504,100	4,363,400	3,970,600	3,622,800	3,334,000	3,220,400	3,112,800	3,019,200
22호봉		4,839,200	4,559,000	4,420,000	4,024,500	3,672,700	3,383,700	3,266,000	3,172,000	3,078,800
23호봉		4,894,400	4,613,800	4,474,000	4,075,700	3,720,600	3,429,100	3,318,300	3,233,400	3,137,700
24호봉		4,946,400	4,666,300	4,524,400	4,120,800	3,766,500	3,473,900	3,362,700	3,290,400	3,195,800
25호봉		4,997,100	4,714,400	4,574,700	4,165,700	3,810,500	3,516,400	3,409,300	3,342,900	3,254,200
26호봉		5,038,700	4,761,200	4,618,500	4,209,400	3,853,700	3,555,500	3,450,900	3,388,800	3,308,300
27호봉		5,081,000	4,801,600	4,659,800	4,246,300	3,888,800	3,589,000	3,484,500	3,434,100	3,353,400
28호봉		5,117,900	4,833,100	4,696,700	4,278,800	3,920,800	3,617,200	3,507,800	3,465,200	3,387,100
29호봉		5,146,200	4,862,400	4,727,900	4,309,200	3,950,400	3,644,200	3,526,700	3,500,100	3,422,200
30호봉		5,170,000	4,892,800	4,760,700	4,337,400	3,976,500	3,669,600	3,545,800	3,521,600	3,453,300
31호봉			4,905,100	4,781,300	4,365,300	4,006,900	3,699,000	3,567,300	3,557,800	3,477,400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74482).

〈표 II-5-10〉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 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 이상	과장으로 만7년(8년차) 이상

- 주: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면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74482).

〈표 II-5-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봉급액의 120%	•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 에 관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 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근무 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 급일(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주: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
급화함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74482).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5-12〉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비교

구분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용어 사용	• 월지급액(봉급월액) -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 2006년부터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 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 휴가비, 교통급식비 등을 반영하여 월지 급액으로 통일	• 기본급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
수당	• 시간외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초과근무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함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직위별 호봉체계	• 별도 없음 * 보육교사 3급, 2급, 1급 동일한 호봉체계	• 사회복지사-선임사회복지사-과장-부장 등 승진에 따른 직위별 별도 호봉체계
인건비 수준	• 보육교사 단일 호봉체계로, 1-30호봉 간 임 금차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상대적으 로 적음	• 직위별 승진에 따른 임금 상승 •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보육교사 보다 큼

주: 보육사업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진 작성

라. 보육교사의 직무 및 역할

1)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여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는 보육교직원으로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보육교직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밖의 보육교직원으로는 의사(또는 축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그 밖의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유아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직원을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과 직원(계약의사, 영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는 유치원교원의 배치기준, 제23조의2는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제24조는 직원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직원의 경우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로 되어 있어 관할청에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2) 보육교사 직무, 복무관리, 전문성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에서의 보육교사 직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과 비교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조항이 있으나 보육교사 직무는 원장 직무대행 이외의 직무관련 언급이 없고, 유아교육법도 비슷한 수준이다.

〈표 II-5-13〉 보육교사 직무 관련 법령 비교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4. (생략)</p> <p>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p> <p>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p> <p>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p> <p>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p> <p>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p> <p>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p> <p>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p> <p>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p> <p>제23조(강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교직원 복무관리에는 크게 근무시간, 교직원의 겸임제한,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권익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교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5-14〉 보육교사 복무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겸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 ·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 가능 -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2년부터) -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용 - 담임교사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보육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활용하여 배치해야 함 ·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함 · 담임교사는 영유아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 직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기본보육시간(16시)까지는 근무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 •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209-212.

〈표 II-5-15〉 보육교사 전문성 신장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②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
③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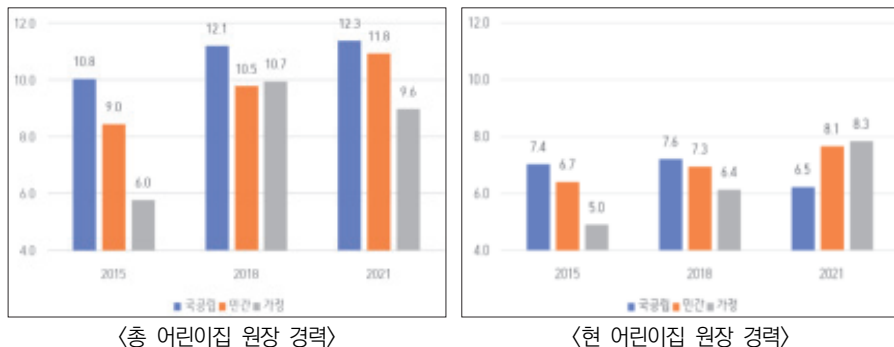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p>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p> <p>③법 제23조제4항제7호 및 법 제23조의2제3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p> <p>⑤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료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6. 보육교직원 경력 및 급여 현황

가. 원장 경력 및 급여

1) 원장 경력 및 호봉

[그림 II-6-1] 원장 경력 추이



〈표 II-6-1〉 원장 경력 추이

단위: 년

구분	2015년			2018년			2021년		
	총 어린이집 교사 경력	총 어린이집 원장 경력	현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어린이집 교사 경력	총 어린이집 원장 경력	현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어린이집 교사 경력	총 어린이집 원장 경력	현 어린이집 원장 경력
전체	6.2	9.3	6.4	7.3	9.3	7.0	7.1	10.9	8.0
시설유형									
국공립	8.3	10.8	7.4	7.1	12.1	7.6	8.3	12.3	6.5

구분	2015년			2018년			2021년		
	총 교사 경력	총 원장 경력	현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교사 경력	총 원장 경력	현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교사 경력	총 원장 경력	현 어린이집 원장 경력
민간	5.1	9.0	6.7	6.7	10.5	7.3	5.9	11.8	8.1
가정	6.2	6.0	5.0	7.3	10.7	6.4	7.3	9.6	8.3
소재지									
대도시	6.3	8.5	6.5	7.3	9.7	7.1	6.8	11.8	8.7
중소도시	6.1	7.6	5.7	7.2	9.0	6.8	6.9	10.3	7.4
읍·면	6.4	9.1	7.3	7.5	9.6	7.4	7.8	108.0	7.9
규모									
20명 이하	6.2	6.0	4.8	7.3	7.8	6.4	7.3	9.8	8.1
21~39명	5.7	7.8	6.0	7.3	9.4	6.8	7.1	10.8	7.2
40~79명	6.6	9.6	7.2	7.5	10.9	7.3	6.7	13.0	7.9
80명 이상	6.1	11.3	8.6	6.8	12.2	8.8	6.3	13.6	9.4

주: 년/개월로 입력된 경력을 년수로 환산한 값임.

자료: 이미화 외(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p. 182-183.

유해미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237.

양미선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211.

〈표 II-6-2〉 원장의 호봉

단위: 호봉

구분	2015		2018		2021	
	호봉 기준 급여 수령 비율	평균호봉	호봉 기준 급여 수령 비율	평균 호봉	호봉 기준 급여 수령 비율	원장 평균 호봉
전체	-	14.88	23.0	16.2	33.8	17.0
시설유형						
국공립	-	15.99	95.5	17.3	94.5	20.3
민간	-	12.31	12.9	14.6	16.2	12.9
가정	-	7.49	6.4	12.2	15.0	9.3
소재지						
대도시	-	14.73	31.4	15.8	40.3	17.7
중소도시	-	13.94	13.3	15.5	25.8	15.1
읍면	-	15.86	28.6	17.7	39.6	18.3
규모						
20명 이하	-	8.22	8.4	12.8	20.3	12.5
21~39명	-	13.07	23.6	14.5	42.4	17.6
40~79명	-	15.56	41.9	16.8	56.3	20.0
80명 이상	-	16.49	44.2	18.3	48.8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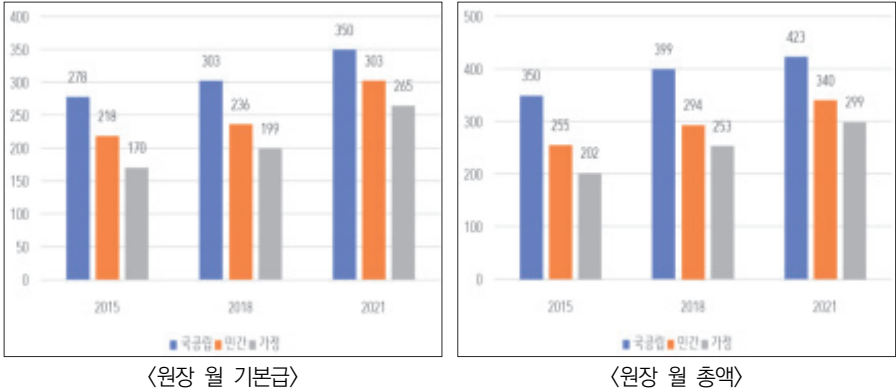
자료: 이미화 외(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183.

유해미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238.

양미선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212.

2) 원장 급여

[그림 II-6-2] 원장 월 급여 추이



〈표 II-6-3〉 원장의 월 급여

단위: 만원

구분	2015			2018					2021							
	기본급 (세전)	수당 총액	기본급 (세전)	수당			월 총액	기본급 (세전)	직책급	어린이집 지급 수당			월 총액 기본급/수당 /직책급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수당		
				어린이집 정부/지자체 지급액	어린이집 정부/지자체 지원금	성과수당 직책급				처우 개선비	그 외 수당 합계					
전체	220.73	45.60	266.33	229.3	17.8	10.7	2.5	30.5	290.9	297.6	36.1	17.4	30.4	32.3	343.2	18.1
시설유형																
국공립	278.09	71.53	349.62	302.5	30.5	23.8	7.2	35.2	399.2	349.5	49.5	16.9	30.0	33.8	423.1	22.0
민간	218.47	36.42	254.89	236.3	16.7	4.9	2.0	33.6	293.5	302.5	35.1	19.3	34.3	37.1	340.3	16.3
가정	170.29	32.05	202.34	199.2	14.0	11.9	1.7	26.5	253.2	264.5	30.0	12.9	23.4	23.0	299.3	17.8
소재지																
대도시	227.75	54.31	282.06	239.8	21.9	11.1	3.2	27.1	303.1	302.9	33.4	18.3	27.9	35.7	350.1	20.5
중소도시	202.78	37.64	240.42	215.7	16.2	9.7	2.2	30.3	274.1	286.2	34.9	16.0	31.1	27.2	327.6	16.7
읍면	238.94	47.26	286.20	240.3	14.0	12.3	2.1	37.3	305.9	312.7	43.7	17.9	34.6	35.7	364.3	17.1
규모																
20명 이하	172.19	32.39	204.58	201.3	14.4	12.1	1.9	26.3	256.1	265.1	28.0	14.7	24.1	24.6	296.2	18.0
21~39명	204.78	38.92	243.70	211.5	17.7	8.1	2.5	28.1	267.9	295.6	34.7	19.3	34.3	33.9	343.0	16.6
40~79명	253.38	59.03	312.41	261.5	23.7	9.8	3.0	33.1	331.1	349.5	50.9	20.9	35.8	40.1	420.2	18.7
80명 이상	275.14	66.26	341.40	294.7	21.3	9.8	3.9	43.0	372.7	382.4	55.7	16.0	30.9	45.6	460.0	21.0

주: 그 외 수당: 근속수당, 복리후생비, 복지수당, 겸직수당, 연구수당, 시간외수당, 생일수당, 휴가수당, 스승의 날 수당, 연차수당, 토요수당, 휴일수당, 당직수당, 명절수당, 활동비, 가족수당이 포함됨.

자료: 이미화 외(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184.

유해미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p. 239-240.

양미선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213.



나. 보육교사 경력 및 급여

1) 보육교사 경력 추이

〈표 II-6-4〉 보육교사 경력 추이

단위: 년·개월

구분	2015	2018		2021	
	총 어린이집 경력	총 경력 어린이집 교사	현재 어린이집 근무 경력	총 경력 어린이집 교사	현재 어린이집 재직 경력
전체	4.6	6.3	3.1	7.5	3.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3	6.8	3.8	7.1	3.2
사회복지법인	5.6	7.5	4.6	8.3	4.9
법인·단체	5.6	7.3	4.4	8.4	5.0
민간	4.4	6.3	2.9	7.6	3.3
가정	4.1	6.3	2.8	8.0	3.4
직장	4.1	4.5	2.5	5.2	3.1
소재지					
대도시	4.6	6.1	3.0	7.3	3.4
중소도시	4.5	6.4	3.0	7.3	3.3
농어촌	5.0	6.9	3.4	8.2	3.8
어린이집 규모					
20명 이하	4.2	6.3	2.8	7.9	3.4
21~39명	4.6	6.2	2.8	7.3	3.2
40~79명	4.9	6.4	3.2	7.2	3.3
80명 이상	5.0	6.5	3.5	7.6	4.1

주: 년/개월로 입력된 경력을 년수로 환산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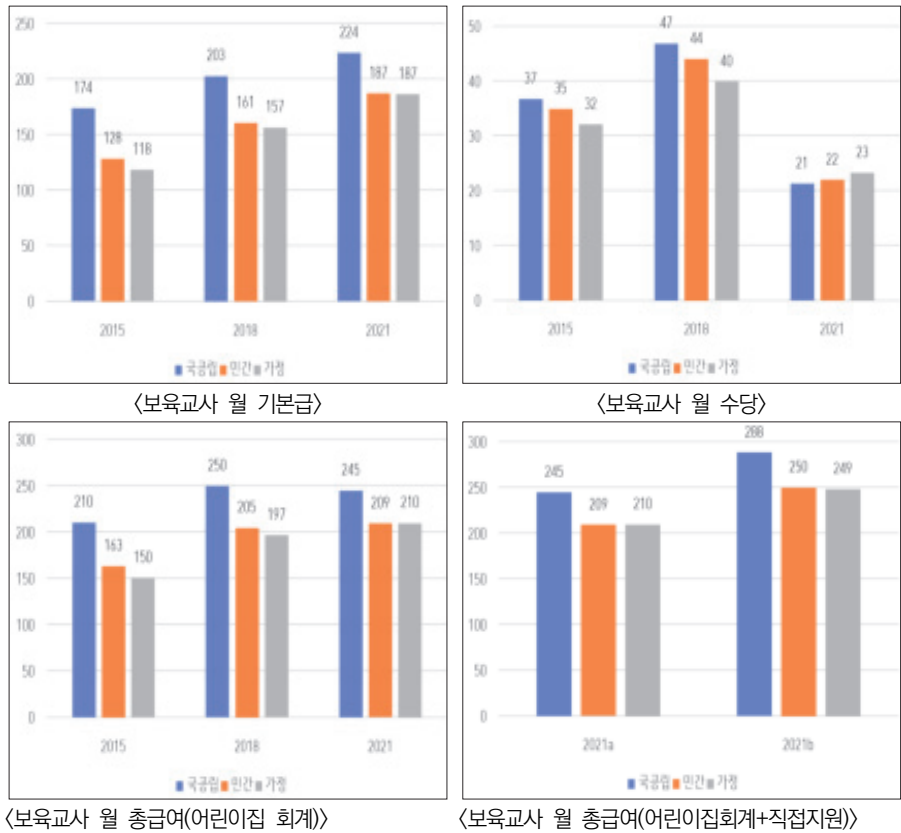
자료: 이미화 외(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185.

유해미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226~227.

양미선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201.

2) 보육교사 월 급여

[그림 II-6-3] 보육교사 월 급여 추이



〈표 II-6-5〉 보육교사 월 급여

단위: 만원

구분	기본급			제수당 ¹⁾			월 급여			
	2015	2018	2021	2015	2018	2021	2015	2018	2021a ²⁾	2021b ³⁾
전체	147.8	168.9	199.8	36.5	44.1	22.9	184.3	213	222.7	263.5
시설유형										
국공립	173.58	202.9	223.6	36.79	46.9	21.3	210.37	249.8	244.9	288.4
민간	128.42	160.5	187.1	34.97	44.1	43.3	163.39	204.6	209.1	250.2
가정	118.39	156.6	186.5	32.08	39.9	45.3	150.47	196.5	209.8	248.5
소재지										
대도시	150.42	171.0	202.9	35.07	41	21	185.49	212	223.9	261.8
중소도시	139.96	164.1	194.5	35.20	43.4	42.5	175.16	207.5	216	255.2
읍·면	155.10	174.9	204.7	40.98	51.2	50.6	196.08	226.1	233.8	283.4

구분	기본급			제수당 ¹⁾			월 급여			
	2015	2018	2021	2015	2018	2021	2015	2018	2021a ²⁾	2021b ³⁾
규모										
20명 이하	119.70	157.6	189.8	32.22	39.9	22.5	151.92	197.5	212.3	250.6
21~39명	137.75	165.3	201.1	34.65	41.1	44.3	172.4	206.4	222.9	262.0
40~79명	156.88	175.7	205.6	37.54	45.3	44.3	194.42	221	228.1	269.7
80명 이상	158.85	177.3	206.2	38.24	49.1	47.7	197.09	226.4	231.4	278.1

주: 1,2) 제수당에는 어린이집 회계에 포함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수당, 어린이집 자체 지급 수당이 포함됨.
3)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원되는 수당까지 포함한 월 급여임

자료: 이미화 외(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187.
유해미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242.
양미선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p. 214-215.

〈표 II-6-6〉 보육교사 급여에 호봉 및 경력 반영 여부

구분	호봉 기준 적용				급여 책정에 경력 반영 여부								단위: %, 호봉		
	2015		2018		2021		2015		2018		2021				
	적용 비율	평균 호봉	적용 비율	평균 호봉	적용 비율	평균 호봉	경력진체 반영	경력부분 반영	미반영	경력진체 반영	경력부분 반영	미반영			
전체 어린이집 유형	38.4	7.1	26.8	7.8	71.3	6.9									
	-	-	98.4	9.5	99.7	9.2	91.7	4.3	4.0	92.8	6.8	0.4	1.4		
	-	-	17.7	5.7	46.8	3.2	22.7	49.1	28.2	26	31.8	42.2	25.5		
	-	-	8.3	3.1	50.2	2.6	12.5	36.1	51.5	16.9	25.7	57.4	17.8		
소재지															
대도시	-	-	36.7	7	74.2	6.6	-	-	-	41.4	21.9	36.7	51.8	12.8	35.3
중소도시	-	-	15.5	7.9	65.3	6.3	-	-	-	22.4	27.4	50.3	40.0	14.5	45.5
농어촌	-	-	32.9	9.2	75.9	8.2	-	-	-	38.8	27	34.1	55.0	14.6	30.4
어린이집 규모															
20명 이하	-	-	10.6	4.1	57.3	4.7	-	-	-	18.7	25.4	55.9	22.9	15.7	61.4
21~39명	-	-	25.4	7.2	79.0	7.5	-	-	-	31.7	21.2	47.2	60.2	10.0	29.8
40~79명	-	-	46	8.6	82.3	8.2	-	-	-	47.8	24.7	27.5	68.7	13.0	18.3
80명 이상	-	-	48.9	9.1	80.7	8.6	-	-	-	53.4	29.6	17	67.3	17.0	15.7

주: 중간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임.
출처: 이미화 외(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208.
유해미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p. 274-276.
양미선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p. 273-274를 바탕으로 재구성.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표 II-6-7〉 보육교사 하루 및 주당 근로시간

구분	보육 시간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			점심시간			휴게시간			1일 총 근로시간			주당 당직 근로시간			단위: 시/분(명)			
	2015	2018	2021	2015	2018	2021	2015	2018	2021	2015	2018	2021	2015	2018	2021	2015	2018	2021	2015	2018	2021	
전체	7시 54분	7시 32분	7시 50분	1시	50분	1시 2분	30분	7분	10분	18분	37분	42분	9시 36분	9시 7분	9시 43분	50분	1시 58분	48시 18분	46시 28분	50시 31분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7시 15분	7시 24분	7시 40분	1시 12분	59분	1시 15분	30분	5분	8분	12분	44분	9시 56분	9시 12분	9시 48분	1시 37분	2시 36분	49시 18분	47시 37분	51시 34분		
	민간	7시 54분	7시 30분	7시 59분	1시	53분	54분	30분	6분	9분	18분	37분	38분	9시 42분	9시 7분	9시 40분	50분	1시 38분	48시 48분	46시 29분	49시 57분	
	가정	7시 42분	7시 36분	7시 50분	42분	44분	50분	24분	7분	13분	18분	35분	40분	9시 6분	9시 3분	9시 33분	29분	1시 8분	45 54분	45시 45분	48시 51분	
	소재지																					
대도시	7시 42분	7시 32분	7시 42분	1시	49분	1시 6분	30분	6분	10분	18분	39분	43분	9시 30분	9시 7분	9시 40분	55분	1시 53분	47시 54분	46시 30분	50시 11분		
중소도시	7시 54분	7시 33분	7시 53분	54분	48분	59분	30분	7분	10분	12분	36분	41분	9시 30분	9시 5분	9시 42분	45분	2시 1분	48시	46시 14분	50시 31분		
농어촌	8시	7시 31분	7시 57분	1시 6분	57분	59분	30분	7분	10분	18분	35분	41분	9시 48분	9시 10분	9시 47분	55분	2시 2분	49시 36분	46시 46분	50시 58분		
규모	20명 이하	7시 42분	7시 36분	7시 51분	42분	44분	53분	24분	7분	12분	18분	35분	40분	9시 6분	9시 3분	9시 36분	29분	1시 24분	46시	45시 47분	49시 22분	
	21~39명	7시 54분	7시 30분	7시 50분	48분	52분	1시 5분	30분	6분	10분	18분	36분	41분	9시 30분	9시 6분	9시 46분	55분	2시 13분	48시 6분	46시 29분	51시 5분	
	40~79명	7시 54분	7시 28분	7시 50분	1시 6분	56분	1시 8분	30분	6분	7분	18분	40분	43분	9시 42분	9시 10분	9시 48분	1시 13분	2시 26분	48시 54분	47시 6분	51시 24분	
	80명 이상	7시 54분	7시 29분	7시 46분	1시 12분	59분	1시 11분	30분	6분	7분	12분	38분	44분	9시 54분	9시 13분	9시 48분	1시 17분	2시 26분	50시 6분	47시 23분	51시 25분	

주: 1) 중간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며, 휴게시간을 포함함.

2) 단위를 시간에서 분으로 조정하여 수치를 산정함.

출처: 이미화 외(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206.

유해미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p. 269-270.

양미선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p. 258.

III

국내·외 보육교사 등 관련 처우 및 지원 사례

- 01 국내 사립유치원 교사처우 및 지원 현황
- 02 해외 주요국의 보육교사 처우 및 지원 현황
- 03 소결

Ⅲ. 국내·외 보육교사 등 관련 처우 및 지원 사례

1. 국내 사립유치원 교사처우 및 지원 현황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원 호봉표에 따라 기본급이 책정되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체계를 가지고 있다(그림 Ⅲ-1-1 참고). 또한, 교원이기 때문에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교원연구비 등 교육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따라 기본급은 <표 Ⅲ-1-1>에 따라 책정되고 그 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그림 Ⅲ-1-1] 공무원의 보수체계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Pay01/2023>, 11. 3 인출)

〈표 III-1-1〉 2023년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호봉표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28,900	21	3,295,200
2	1,781,300	22	3,416,800
3	1,834,400	23	3,537,400
4	1,887,300	24	3,658,300
5	1,940,700	25	3,779,100
6	1,993,900	26	3,900,400
7	2,046,600	27	4,026,800
8	2,099,100	28	4,153,000
9	2,152,400	29	4,284,900
10	2,210,700	30	4,417,400
11	2,267,700	31	4,549,400
12	2,326,000	32	4,681,300
13	2,432,000	33	4,815,200
14	2,538,300	34	4,948,700
15	2,644,600	35	5,082,400
16	2,751,100	36	5,215,600
17	2,856,300	37	5,331,500
18	2,966,500	38	5,447,500
19	3,076,000	39	5,563,700
20	3,185,700	40	5,679,20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대통령령 제33622호, 2023. 1. 6, 일부개정).

2017년 전국유아교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공립 287만원, 사립 16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공립유치원 교사의 평균 호봉이 21호봉이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호봉 11호봉인 것을 감안하여 동일 경력을 비교하였을 때 임금 격차는 전체 평균보다 줄어 들 수 있으나 공립과 사립 교사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2017년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이 국공립유치원 교원에 준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7. 12. 27).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혁신방안 발표 이전에도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비 안정화와 지원체제 개선과 연계하여 처우개선비 지원을 하였으나 이후 공립과 사립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 수준이 확대되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는 공·사립 교원 간 임금 격차의 단계적 완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기본급 보조를 확대하고

고경력 교사의 근속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장기근속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23~)'하는 것을 계획하였다(교육부 2023).

가. 교원 기본급 보조 및 수당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은 기본급 보조와 수당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과정 학급 담임을 맡을 경우 기본급보조와 담임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월65만원이었던 처우개선비는 매해 3만원씩 인상되어 2023년 77만원까지 확대되었다. 사립유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체 비용 지원 현황은 다음 <표 III-1-2>와 같다.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에서 기본급보조 60만원, 담임수당 13만원, 장기근속수당 4만원, 총 77만원을 지원하고 부산과 울산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기본급보조와 장기근속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총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보조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사의 개인별 급여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표 III-1-2>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계	77만원	80만원	77만원	77만원	77만원	77만원	80만원	77만원	77만원
기본급보조	월60만원	월61만원	월60만원	월60만원	월60만원	월60만원	월61만원	월60만원	월60만원
담임수당	월13만원	월13만원	월13만원	월13만원	월13만원	월13만원	월13만원	월13만원	월13만원
장기근속수당	월 4만원	월 6만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6만원	월 4만원	월 4만원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7만원	77만원	77만원	77만원	77만원	77만원	77만원	77만원	
기본급보조	월60만원	월60만원	월60만원	월60만원	월60만원	월60만원	월60만원	월60만원	
담임수당	월13만원	월13만원	월13만원	월13만원	월13만원	월13만원	월13만원	월13만원	
장기근속수당	월 4만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4만원	

기본급 보조 지원 기준은 대부분 시도에서 원장, 원감, 담임교사,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시도에 따라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표 III-1-3 참고). 서울의 경우 유아학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에 따라 지원을 제외하는데 학

7) 장기근속수당: ('22) 3만원 → ('23) 4만원 → ('27) 8만원으로 인상

부모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유치원은 원장의 기본급보조 지원을 제외하고 60만원 이상인 유치원은 전체 교원의 기본급보조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3). 또한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공립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지원을 배제하고 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원장과 원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 외에 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시도의 내용을 다음 <표 III-1-3>에 정리하였다.

<표 III-1-3>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기준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서울	사립유치원 교원 정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된 원장, 원감, 담임교사(방과후과정반 포함), 영양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영양교사 - 방과후과정반 지원 기준 (편성학급 1학급) 유아 인원수와 상관없이 담임교사 1명에게 지원 (편성학급 2학급 이상) 3월 학년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방과후과정반 유아 20명 당 담임교사 1명에 대해 지원하고, 유아수증감에 따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담임교사 지원 인원 추가·제외 결정
대구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교원으로 원장, 원감, 영양교사, 담임교사, 방과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교사 기본급 보조 50% 지원
광주	임용 보고된 사립 유치원 교원으로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원장, 원감, 담임교사, 비담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무원 기여금 조건표 상 교원 직위 별·호봉별 월 평균 급여 비교) - 급여와 기본급 보조비를 합한 금액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이상이 될 경우 차액 지급
대전	사립유치원 교원 정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된 원장, 원감, 담임교사, 영양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원감: 교육지원청에 원장, 원감으로 임용 보고된 교원 - 인가학급 범위 내 편성학급의 학급 담임 및 방과후과정 담당 교원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에 따른 영양교사 - 방과후과정 운영 4시간으로 계약된 시간제 교사(원당 1명) * 시간제교사 50% 지원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호봉 국공립교원 평균보수 월액 미만 급여수령 교원
경기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원장·원감·학급담임교사·방과후과정(3명)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영양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담임교사 : 학급당 1명 - 방과후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 : 유치원별 3명 방과후과정담당 교사 : 유치원교사 자격소지자로 방과후과정 유아를 직접 지도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 방과후과정담당 교사가 아닌 자가 방과후과정담당 교사를 대신하여 받을 수 없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영양교사 -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 채용된 영양교사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전북	원장, 원감, 학급담임 교원(방과후과정 담당 교원 포함)	- 인가학급 범위 내 편성학급의 학급담임 교원 - 주 15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교원
전남	사립유치원 교원	- 지급 조건 및 보수지급액 최저 임금 충족 여부 확인
경북	임용보고된 사립유치원 소속 교원으로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기본급 보조는 급당 지원 인원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2023). 2023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2) 대구광역시교육청(2023). 2023 대구유아교육.
 3) 광주광역시교육청(2023). 2023 광주유아교육 운영계획.
 4)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023). 2023년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계획.
 5) 울산광역시교육청(2023). 2023 울산유아교육 운영계획.
 6) 경기도교육청(2022). 2023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
 7) 전라북도교육청(2023). 2023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
 8) 전라남도교육청(2023). 전남유아교육 2023.
 9) 경상북도교육청(2023). 2023 경북유아교육.

나.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 현황

사립유치원 교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앞서 설명한 교원 기본급 보조 외에 대체교사 또는 강사 인건비 지원과 육아휴직 수당 지원이 있다. 또한, 시도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해 지원하고 있어 기타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1) 대체교사/강사 인건비

시도교육청에 따라 대체교사 또는 대체강사 인건비 지원으로 용어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출산, 경조사, 휴가, 병가, 자격 연수 참여 등으로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정규 교원의 수업 결손을 대체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표 III-1-4 참고). 그러나 대체 교사에게 지원하는 1일 단가는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교육과정 시간에 대해 최소 70,000원에서 최대 96,240원으로 교육청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금액이 발생하여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체교사의 임용기간이 1개월 이상 일 경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기본급 보조를 대체교사에 계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대체교사 지원 현황

구분	지원기준	지원단가	지원가능사유
서울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정규 교원의 수업결손으로 대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강사비 일부	- 단기대체강사 1인당 1일 96,240원 (시간당 12,030원) - 추가 소요되는 경비(법정부담금, 주휴수당 등)는 유치원에서 부담 ※ 예산 범위 초과 시 교육지원청별·유치원별 형평 등 고려하여 지원	연수, 경조사 휴가, 병가, 공가, 출산 휴가에 따른 수업결손으로 대체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부산	-	- 대체교사 1인당 1일 89,000원	병가, 공가, 경조사, 출산휴가, 자격연수 시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법정휴가 일수 및 연구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인천	사립유치원에 임용 보고된 교사	- 대체교사 1인당 1일 92,000원	출산 및 경조사 휴가, 유산/사산 휴가, 난임 치료 시술, 임신검진 및 자녀돌봄 휴가, 자격 연수
광주	담임 및 비담임교사의 출산휴가 사유가 발생한 사립유치원	- 일 79,000원(신청자 휴가 사용 일수에 최대 1인당 90일 이내) - 지원한도: 7,110천원 (※ 지원 한도 초과 시 유치원 자체 부담)	출산 대체 기간제 교사 인건비
대전	사립유치원에 단기대체교사로 채용된 교사	- 1일 77,000원(4대보험 포함)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교사의 특별휴가(출산휴가 및 경조사 휴가), 연수 및 공가
울산	-	- 1일 81,000원	출산휴가(2개월), 자격연수/특별휴가(5일) 시 대체교사를 채용할 경우 채용일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세종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의 교사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의 대체 교사	- 1일 77,000원 * '23년 최저임금 9,620원 반영, 추가 소요 금액 발생 시 유치원 부담	경조사, 출산휴가, 병가, 공가 등으로 대체 교사 활용 사유 발생 시 교육청 예산 범위 (4,620천원) 내에서 지원
충남	-	- 1일 77,000원	-
전북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학급담임 및 방과후 과정 담임 교사	- 1일 77,000원	자격연수, 4일 이상의 병가, 공가, 출산 및 결혼 등의 특별휴가가 필요한 경우
전남		- 1일 77,000원 ※ 1개월 이상 출산휴가 및 병가 시 대체교사 인력에 기본급 보조 지원	자격연수, 출산휴가, 장기병가, 경조사
경북	정규 담임교사 결원 시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1일(교육과정시간 내) 77,000원	1급 정교사, 원감 자격연수, 출산, 경조사 휴가,

구분	지원기준	지원단가	지원가능사유
제주	출산 경조사 직무연수 등으로 인한 대체 강사비	- 1일(교육과정시간 내) 70,000원	자격 및 직무연수, 경조사 휴가 등의 사유로 수업결손에 대체강사가 필요한 경우

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2023). 2023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2) 부산광역시교육청(2023). 2023 부산유아교육계획.
 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2023). 희망북부유아교육지원계획.
 4) 광주광역시교육청(2023). 2023 광주유아교육 운영계획.
 5)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023). 2023년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계획.
 6) 울산광역시교육청(2023). 2023 울산유아교육 운영계획.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3). 2023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
 8) 충청남도교육청(2023). 2023 충남 유아교육계획.
 9) 전라북도교육청(2023). 2023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
 10) 전라남도교육청(2023). 전남유아교육 2023.
 11) 경상북도교육청(2023). 2023 경북유아교육.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3). 2023학년도 유아교육 운영계획.

2) 육아휴직수당

어린이집 교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사립유치원 교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3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 교원도 국공립 유치원 교원에게 적용되는 휴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수당 지원단가는 대부분 하한액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육아휴직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표 III-1-5〉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육아휴직수당 지원 현황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단가
서울	- 사립유치원 교원 정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된 교원 중 30일 이상 육아휴직 보고된 교원 - 1일 8시간 근무자(주40시간)로 사학연금(건강보험 포함) 가입 교원만 해당되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자녀 1인당)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호봉 기준 월봉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월 급여 중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부산	- 육아휴직으로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1년간 지원	- 월 봉금액의 80%(단, 월 최저 70만원~최대 150만원)
대구	- 육아휴직으로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1년간 지원	- 월 봉금액의 80%(단, 월 최저 70만원~최대 150만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단가
광주	- 사립유치원의 육아휴직 교원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원	-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수준 - 육아휴직 교원 복직합산금 수령 시 해당 교원의 기관부담금을 사립유치원에 지원
대전	-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원 ※ 육아휴직수당 신청 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 교원 개인별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월 최저 70만원~최대 150만원) - 육아휴직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울산	- 사립유치원의 육아휴직 교원		-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수준
세종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휴직한 자		-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사립학교법시행령 제 24조의6)
경기	- 사립유치원 교원 정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된 교원 중 30일 이상 육아휴직 보고된 교원 - 1일 8시간 근무제(주40시간)로 사학연금(건강보험 포함) 가입 교원만 해당되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월 급여 중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충남			- 132만원
전북	- 「유아교육법」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 중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교원 ※ 육아휴직수당 신청 시 단일 기관의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육아휴직 시작일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월 급여 중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전남	-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휴직하는 사립유치원 교원		- 시작일로부터 3개월: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4~12개월까지: 월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단가
경북	- 육아휴직 중인 사립유치원 교원	- 자녀 1명당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한도 ※ 지원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계약 만료일을 넘길 수 없음	- 월 봉급액의 80%(단, 월 최저 70만원~최대 150만원)
제주		최대 1년 지원	최소 월70만원~150만원

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2023). 2023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2) 부산광역시교육청(2023). 2023 부산유아교육계획.
 3) 대구광역시교육청(2023). 2023 대구유아교육.
 4) 광주광역시교육청(2023). 2023 광주유아교육 운영계획.
 5)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023). 2023년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계획.
 6) 울산광역시교육청(2023). 2023 울산유아교육 운영계획.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3). 2023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
 8) 경기도교육청(2022). 2023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
 9) 충청남도교육청(2023). 2023 충남 유아교육계획.
 10) 전라북도교육청(2023). 2023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계획.
 11) 전라남도교육청(2023). 전남유아교육 2023.
 12) 경상북도교육청(2023). 2023 경북유아교육.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3). 2023학년도 유아교육 운영계획.

3) 기타

기본급 보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육아휴직수당 지원 외에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원연구비 등이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 있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임신교원을 위해 편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교원연구비로 월1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으며 충청남도교육청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하여 인건비보조를 추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사의 급식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표 III-1-6〉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 현황

구분	지원항목	지원금액
대전	명절휴가비	연2회, 1회 5만원
울산	임신 교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20만원
세종	교원연구비	월10만원
	명절수당	연 2회, 1회 10만원
충남	인건비 보조	읍면: 월10만원 동지역: 월5만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금액
전남	급식비 지원	월10만원
경북	급식비 지원	월8만원

자료: 1)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2023). 2023년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계획.
 2) 울산광역시교육청(2023). 2023 울산유아교육 운영계획.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3). 2023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
 4) 충청남도교육청(2023). 2023 충남 유아교육계획.
 5) 전라남도교육청(2023). 전남유아교육 2023.
 6) 경상북도교육청(2023). 2023 경북유아교육.

2. 해외 주요국의 보육교사 처우 및 지원 현황

가. 일본 사례

일본의 0~5세 영유아를 위한 법정교육·보육시설에는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보육소와 함께 20명 미만 규모로 우리나라의 가정어린이집과 유사한 지역형 보육사업(가정적 보육사업, 소규모 보육사업 A,B,C형, 사업소 내 보육사업, 거택방문형 보육사업)이 있다. 그리고 베이비 호텔, 기업주도형 보육사업 등의 미인가 보육시설도 영유아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육시설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보육시설 종류

가) 보육소

보육소는 보호자의 근로, 질병, 간병 등으로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0~5세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다. 1980년 이후 합계출생율은 하락하였지만, 취업여성의 증가로 보육소가 확충되었지만,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대기아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 개정으로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하는 보육소의 출현으로 보육소 수도 소폭 감소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저 출생사태의 지속으로 인한 영유아수의 절대적 감소 및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기아동도 감소하였으며, 일부시설에서는 정원미달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현재 공립·사립별 보육소의 현황은 아래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2022년 보육소의 공립별 보육소 수 및 이용아동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공립	사립
보육소 수	23,910	7,516	16,394
이용 아동 수	2,093,884	647,360	1,446,517

자료: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편(2023). 보육백서.

2022년 현재 23,910개의 보육소에서 210만여 명의 영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다. 보육소의 정원은 최소 20명 이상이며, 200명 이상을 초과하는 곳도 있으나, 0~5세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므로 80명~120명 이하의 시설이 다수이다. 40명 정도 정원규모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그리고 〈표 III-2-2〉에서 볼 수 있듯이 공립보육소와 사립보육소의 비율은 31 : 69로서 시설 수, 영유아 수 모두 사립보육소가 2배 이상 많다. 2000년 이전까지는 공립보육소의 비중이 높았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재정효율화를 이유로 정부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립보육소의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으므로(장경희, 2014), 2006년 이후 사립보육소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립 보육소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70% 이상이 개인설립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영리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표 III-2-2〉에서 볼 수 있듯이 80%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표 III-2-2〉 2021년 일본사립보육소의 운영주체별 현황

단위: 개소(%)

계	사회복지법인	영리법인	법인·단체 (의료법인, 일본적십자사 등)	기타
15,516(100%)	11,450(73.8%)	3,011(19.4%)	955(6.2%)	100(0.6%)

자료: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편(2023). 보육백서.

그리고 사립이라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24조의 “시정촌의 보육실시책임”규정에 의해 직원인건비 등 운영비 전액을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지급한다. 그리고 운영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원충족률이 2010년 이전에는 95%를 상회하였고,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2020년 92.2%, 2021년 90.9%, 2022년 89.7%로 유지되고 있다(후생노동성, 2022).

〈표 III-2-3〉 보육소 정원충족률의 연도별 추이

단위: %

연도	2008	2013	2017	2019	2020	2021	2022
정원충족률	95.3	97.0	94.2	92.8	92.2	90.9	89.7

자료: 후생노동성(2008, 2013, 2017, 2019, 2020, 2021, 2022). 보육소 등 관련 상황정리 공표. 각년도.

나) 인정어린이원

인정어린이원은 2006년 10월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설치한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체화 시설이다. 저출산으로 폐원하는 유치원이 증가하는 반면, 취업 여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소 부족으로 보육을 받지 못하는 대기아동이 많아 지자, 재정의 효율적 사용 등의 이유로 설치되었다. 인정어린이원 유형⁸⁾ 및 현황은 아래 〈표 III-2-4〉와 같다.

〈표 III-2-4〉 인정어린이원 현황(2022)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
인정어린이원	9,220	6,475	1,307	1,354	84
재원아동 수	1,108,180	813,103	162,982	127,015	5,080

자료: 내각부 홈페이지, 関連情報, 認定こども園に関する状況について(令和4年4月1日時点)(인정어린이원 관련 상황, 2022년 4월 1일 현재), <参考>認定こども園数の推移(〈참고〉 인정어린이원 수 추이)
https://www8.cao.go.jp/shoushi/kodomoen/pdf/kodomoen_jokyo.pdf(2023. 08. 24. 인출)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인정어린이원을 설치하였으나 질적 수준의 저하 등으로 시설 수는 2007년 94개소, 2011년 762개소, 2013년 1,099개소로 크게 확충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인정어린이원법을 개정하여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을 중심으로 인정어린이원을 확충하고자 유보인정어린이원의 설치주체를

8) 인정어린이원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보연계형 인정 어린이원으로 인가유치원과 인가 보육소가 연계를 구축하여 0-5세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형태이며, 두 번째 유치원형 인정 어린이원은 학교교육기관인 유치원이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보육소 입소대상아동을 입학시켜, 가정보육이 가능한 유치원 대상아동과 함께 보육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보육소형 인정 어린이원으로, 인가 보육소가 유치원 입소대상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형태이며, 네 번째의 지방재량형 인정 어린이원은 무인가 유치원과 무인가 보육소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아 0-5세 아동을 보육한다.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으로 제한하고 시설·설비기준도 상향 조정하였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인정어린이원법 개정 후,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 보육소가 증가함으로써 시설 수는 9,220개소, 이용아동수는 1,108,18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유치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보육소 시설 수 및 이용아동수의 절반에 해당한다.

다) 지역형 보육사업

2012년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의 제정으로 법정시설화하였으며, 종류로는 가정적 보육사업, 소규모 보육사업 A·B·C형, 사업소내 보육사업, 거택방문형 보육사업이 있다. 각 시설의 성격은 아래 <표 III-2-5>와 같다.

<표 III-2-5> 지역형 보육사업의 종류, 성격, 현황

구분	가정적 보육	소규모보육			사업소내 보육사업	거택방문형 보육사업
		A형	B형	C형		
정원	1~5명	6~19명		6~10명	19명이하 또는 20명 이상	1명
보육자 자격	연수 수료자	보육사	보육사 1/20이상	연수 수료자	정원 19명 이하일 경우 소규모 A,B형과 동일	연수수료자
시설 수	7,474개소					
아동 수	92,208명					

자료: 가정적 보육사업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보육소등 관련 상황정리 공표(2022)

지역형 보육사업은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주로 보육하며, 2012년 법정보육시설화와 함께 크게 확충되기 시작하여, 2022년 현재 7,474개소에서 92,208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지역형 보육사업은 대기아동 해소차원에서 법정시설화하였으므로 보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연수수료자도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였다. 따라서 보육관계자들은 영유아보육의 질적 수준의 저하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지역형 보육사업 보다는 보육소 확충을 주장하였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2022). 그리고 지역형 보육사업의 2020년 인가건수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이 주로 운영하는 보육소와 달리 영리기업의 운영비율이 44.1%로 높다. 정원규모, 보육사

자격증 유무 등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 보육사업 A형과 유사하다.

〈표 III-2-6〉 지역형 보육사업의 운영주체별 분류(2021)

단위: %

	계	가정적 보육	소규모보육사업			사업소 내 보육	거택방문형
			A형	B형	C형		
주식·유한회사 운영비율	44.1	4.3	52.2	46.7	31.5	35.1	53.8

자료: 전국보육단체 연합회·보육연구소 편(2023). 보육백서, p. 60

2) 일본보육시설의 보육사 배치기준

가) 보육소 보육사 배치기준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서는 보육소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교직원으로 “보육사, 조리원, 촉탁의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장, 주임보육사, 사무원 등의 배치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보육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의 규정은 아래 〈표 III-2-7〉과 같다.

〈표 III-2-7〉 보육사 1명이 담당하는 연령별 영유아의 수

단위: 명

연령	0세	1·2세	3세	4세 이상
영유아 수	3	6	20	30

자료: 「児童福祉施設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第三十三条(제33조2)
https://www8.cao.go.jp/shoushi/kodomoen/pdf/kodomoen_jokyo.pdf(2023. 08. 24. 인출)

나) 유보 인정어린이원의 직원배치기준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학급편제, 직원, 설비 및 운영기준”에서는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에는 원장, 조리원 및 보육교유(유치원 교사 면허장 및 보육사 자격증의 동시 소지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직원으로 명시하고, 부원장, 주임교유, 주임양호교유, 양호교유 또는 양호조교유, 사무직원의 배치에 대해서는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육교유가 담당하는 영유아 수에 대해서는 보육소와 동일하게 0세 아동 3명당 1명, 1·2세 아동 6명당 1명, 3세 아동 20명당 1명, 4세 이상

아동 30명당 1명으로 명시하였다.

다) 지역형 보육사업의 성격 및 직원배치기준

가정적 보육사업, 소규모 보육 사업 A·B·C형, 사업소내 보육사업, 거택방문형 보육사업에서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직원종류 및 보육사 1명 당 영유아 수는 다음 <표 III-2-8>과 같다.

<표 III-2-8> 지역형 보육사업의 직원배치 및 보육사 1명이 담당하는 연령별 영유아의 수

구분	가정적 보육	소규모보육			사업소내 보육사업	거택방문형 보육사업
		A형	B형	C형		
직원 배치	가정적 보육사, 축탁의사, 조리원	보육사, 축탁의사, 조리원	보육사, 연수 수료보육사, 축탁의사, 조리원	가정적 보육사, 축탁의사, 조리원	보육사, 축탁의사, 조리원	가정적 보육사
보육사 1명당 아동 수	- 3명 이하 - 연수수료 보육자와 공동 보육 시 5명	- 0세: 3명 - 1·2세: 6명 - 3세: 20명 - 4세 이상: 30명		- 3명 이하 - 연수수료 보육자와 공동 보육 시 5명	- 0세: 3명 - 1·2세: 6명 - 3세: 20명 - 4세 이상: 30명	1명

자료: 「家庭的保育事業等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가정적 보육사업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6M60000100061>(2023. 08. 24. 인출).

3) 일본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비용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1명을 보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2015년 아동·영유아 양육신제도의 시행 이후, 공정가격(한국의 표준보육비용의 개념과 동일, 이하 표준보육비용으로 명명)으로 명명되고 있다. 표준보육비용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우선 지급한 후, 보호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이나, 2019년 10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시행이후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가) 표준보육비용의 기본구조

표준보육비용은 기본분 단가, 기본가산부분, 가감조정부분, 승제조정부분 및 특정가산부분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다(내각부, 2023). 기본분단가는 「아동복지시

설비 및 운영의 기준」(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해당)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설·설비 및 직원배치기준을 토대로 설정된 것으로 보육소에서 보육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장경희 2018: 85), 매년 정부가 공시한다. 2023년 6월 21일 아동가정청은 기본분 단가의 내역을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는 사무비와 급식비, 재료비 등의 사업비로 구성된다고 발표하였다(기본분 단가 = 사무비+사업비).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시설장 복지직 2급 33호봉, 주임 보육사 복지직 2급 17호봉, 보육사 복지직 1급 29호봉, 조리원 행정직 1급 37호봉을 적용하며, 지역(8구분)에 따라 액수는 상이하다. 관리비는 전국일률적이나 정원구분 별(17구분: 20명 시설, 21명부터 30명 시설, 171명 이상 시설 등), 영유아의 연령 및 보육시간(11시간 보육, 8시간보육)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명 정원시설의 11시간 보육을 받는 0세 아동의 기본분 단가에 포함되는 월 관리비는 17,144엔이며, 171명 이상 정원규모에서 동일 아동의 월 관리비는 11,685엔이다. 사업비는 일반생활비로 명명되고 있으며 전국 일률적으로 비용이 산정되며, 3세 미만아동은 월 10,812엔, 3세 이상 아동은 1,868엔이다. 3세 이상 아동의 일반생활비용이 적은 이유는 2019년 유아교육·무상화 정책에 따라 급식비용이 표준보육비용에서 제외되고 보호자로부터 실비 징수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이다.

기본가산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의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시설·설비정비 및 직원배치, 급여개선을 한 보육소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다(장경희, 2018). 기본가산의 종류에는, 사립 보육소 보육사의 임금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가산⁹⁾, 보육사를 배치기준 이상으로 고용하여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의 팀 보육가산, 휴일과 야간에 보육소를 개소하였을 경우의 휴일보육가산, 야간보육가산, 급식비징수면제가산, 감가상각가산, 임차료가산 등이 있다. 또한 3세 아동에 대한 보육사 배치기준은 20대1이나, 15대1의

9)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이 상승하는 공립보육소 보육사와 달리 사립보육소 보육사의 임금수준은 낮다. 따라서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정부는 사립보육소 전체직원의 평균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율을 책정하여 이를 표준보육비용에 반영하고 있다. 가산율은 기초분+임금개선요건분+경력패스요건분을 합산한 것이다. 기초분은 당해 보육소 전체 직원의 평균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면 12%, 9년 이상 10년 미만은 11%, 8년 이상 9년 이상 10%, 7년 이상 8년 미만 9%, 6년 이상 7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7%, 4년 이상 5년 미만 6%, 3년 이상 4년 미만 5%, 2년 이상 3년 미만 4%, 1년 이상 2년 미만 3%, 1년 미만의 경우 2%이다. 그리고 임금개선요건분은 당해시설이 직원임금개선계획을 책정하였을 경우, 평균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하는 것으로 11년 미만이면 6%, 11년 이상이면 7%이다. 경력패스요건분은 당해시설이 직원직위, 직책, 근무내용에 맞게 근무조건책정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개선요건분에서 2%를 감산한다(내각부 2023). 따라서 처우개선 가산 I의 가산율 최대치는 19%이다.

비율로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3세 아동 배치개선가산이 있다. 반면 소장을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및 토요일에 개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표준보육비용에서 감액한다(가감조정부분). 그리고 이용인원이 정원을 항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분 단가 및 기본가산부분을 승제조정한다(乘除調整部分). 특정가산의 종류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의 직원배치기준에 없는 전임주임보육사 및 사무직원을 배치하였을 경우의 주임보육사전임가산, 사무직원고용가산, 장애아동 교육지원가산¹⁰⁾, 처우개선가산II(경험,기능축적직원), 처우개선가산III(직원배치기준 토대로 월액 9,000엔), 냉난방가산, 제설비 가산, 입소아동처우 특별가산, 시설기능강화 추진비가산, 고령자활약축진가산, 초등학교 연계가산, 영양관리가산, 제3자평가가산등¹¹⁾이 있다. 냉난방 가산은 매달 지급되나, 이를 제외한 항목의 가산은 사업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만 지불된다.

나) 2023년도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 구성항목을 기초로 산정된 영유아 1명당 표준보육비용은 보육시설 소재 지역, 정원, 보육시간,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은 8구분,¹²⁾ 정

10) 장애아동 교육지원가산은 장애아동을 입소시켜 보육과 동시에 전임 주임교사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A형과 B형으로 구분된다. A형은 특별부양아동수당(중증의 장애를 가진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육하는 시설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기본액(49,870엔)+처우개선 등 가산(490*가산율-직원평균연수에 따른 가산율)/ 매달 1일 이용아동 수 이다. B형은 A형 이용아동 이외의 장애아동을 입소시켜 보육하는 보육소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기본액(33,250엔)+처우개선등 가산(330*가산율-직원평균연수에 따른 가산율)/ 매달 1일 이용아동 수이다(내각부 2023).

11) 냉 난방비 가산은 보육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1급지(1,840엔) 2급지(1,630엔), 3급지(1,610엔), 4급지(1,270엔), 기타(110엔)의 5지역으로 구분된다. 제설비 가산은 홋카이도 등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의 보육소에 6,180엔이 3월1일 이용아동수 만큼 지불된다. 화산재 제거비 가산은 화산방재지역의 보육소에 155,870엔을 3월1일 이용아동수로 나누어 1인당 단가를 산출한 후, 이용아동수 만큼의 금액이 지원된다. 고령자등 활약축진가산은 고령자 고용축진을 위해, 고령자를 활용하여 보육아동의 처우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일시보육사업 등의 복수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가산액은 고령자의 연간 고용시간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예를 들어 연간 1,200시간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1,065,000엔을 3월1일 이용아동수로 나누어 1인당 단가를 산출한 후, 이용아동 수 만큼의 금액을 지원한다. 시설기능강화 추진비 가산은 일시보육등의 사업을 하는 보육시설에서 직원방재교육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유도체제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으로 방재대책을 충실히 하는 경우에 160,000엔/3월1일 이용아동수로 산출한 금액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접속가산은 초등학교와 연계를 추진하여, 교육과 보육에 있어 상호교류활동을 하는 경우 96,840엔을 3월1일 이용아동수로 나누어 1인당 단가를 산출한 후, 이용아동 수만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110명 정원의 보육소가 초등학교와 연계를 추진할 경우 $96,840/110 = 880$ * 110명분의 금액(96,800엔)을 지급한다. 영양관리가산은 영양사를 활용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 3가지 타입(고용, 직원이 영양사 겸임, 촉탁영양사)으로 구분되어 가산액이 설정된다. 제3자평가가산(우리나라의 평가인증제도와 유사)은 제3자로부터 평가를 받고,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 150,000엔/3월1일 이용아동수로 산출한 금액을 지원한다(내각부 2023).

원은 20명부터 171명 이상의 17구분,¹³⁾ 연령은 4구분(0세, 1·2세, 3세, 4세 이상), 보육시간¹⁴⁾은 2단계(단시간 보육: 8시간, 표준시간 보육: 11시간)로 구분하고 있다(장경희, 2018). 표준보육비용은 인가정원이 아닌 현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불한다.

(1) 정원 80명 시설의 월 표준보육비용

매년 내각부가 고시하는 표준보육비용단가 및 구성항목을 토대로 2023년 20/100지역인 동경도(임차료 및 감가상각가산 구분:A지역) 및 6/100지역의 미야기현(임차료 및 감가상각 가산구분:c지역)에 소재하는 80명 정원 보육소의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면 다음 <표 III-2-9>와 같다. 참고로 대부분의 보육소는 3세보육 아동수가 15명 이하이며, 보육사를 법정기준 이상으로 추가 배치함은 물론 소장도 배치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보육을 한다¹⁵⁾. 따라서 3세아동배치가산, 팀보육추진가산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2023년 단가표에 따라 6/100지역의 11시간 보육을 받는 4세 이상 아동 1명의 표준보육비용은 86,089엔 (11시간 보육기본분 단가+처우개선가산 I +감가상각비가산+임차료가산+팀보육추진가산+주임보육사전임가산+사무직원고용가산+장애아동교육가산+냉난방가산+영양관리가산)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3세 아동, 1·2세, 0세 아동의 표준보육비용을 계산하면 각각 102,759엔, 161,289엔, 245,398엔이다. 그리고 20/100지역인 동경도 23 특별구 보육소의 11시간 보육을 받는 4세 이상 아동, 3세아동, 1·2세, 0세 아동의 표준보육비용총액은 각각 95,969엔,

12) 100분의 20지역, 100분의 16지역, 100분의 15지역, 100분의 12지역, 100분의 10지역, 100분의 6지역, 100분의 3지역, 기타지역. 지역구분은 물가의 고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 지역수당지급지역구분과 연동되어 있으며, 분자가 클수록 대도시로 볼 수 있고, 표준보육비용단가도 높다. 동경도 23개 자치구는 20/100지역이며,

13) 20명, 21명-30명, 31명-40명, 41명-50명, 51명-60명, 61명-70명, 71명-80명, 81명-90명, 91명-100명, 101명-110명, 111명-120명, 121명-130명, 131명-140명, 141명-150명, 151명-160명, 161명-170명, 171명 이상으로 구분.

14) 2015년 아동·영유아 양육신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보육소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 8시간의 보육을 보장해 왔으나 신제도 시행을 계기로 정부는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육시간을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1개월 근로시간이 120시간 미만인 보호자에게는 8시간의 보육을 보장하고(단시간 보육), 120시간 이상 일하는 보호자에게는 11시간의 보육을(표준시간 보육) 보장하며, 각각에 대해 표준보육비용도 달리 설정하였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대기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소 입소는 보호자의 근로시간의 장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므로, 보육소 아동의 90%는 표준보육시간 아동이라고 예측된다.

15) 소장 미 배치 및 토요일 보육 미실시의 경우에는 감액이 이루어진다.

114,429엔, 179,149엔, 273,960엔이다. 100분의 20지역은 대도시지역으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지역보다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용 총액이 높다.

〈표 III-2-9〉 일본 보육소의 지역·정원규모·연령·보육시간 별 표준보육비용

단위: 엔

지역 구분	정원 구분	연령 구분	표준보육 비용 (1인당, 11시간)	보육시간별 기본분단가		처우 개선가산 I (11시간)	3세아동배치가산		감가 상각 비가산	임차료 가산
				11시간	8시간		기본분	처우개선 가산1		
6/ 100 지역	70명 ~ 80명	4세 이상	86,089	45,250	39,270	430*가산율			3,900	3,800
		3세	102,759	52,310	46,330	500*가산율	7,060	70*가산율		
		1,2세	161,289	110,000	104,020	980*가산율				
		0세	245,398	180,619	174,630	1,690*가산율				
20/ 100 지역	70명 ~ 80명	4세 이상	95,989	50,100	43,490	480*가산율			3,900	7,900
		3세	114,429	57,990	51,380	550*가산율	7,890	70*가산율		
		1,2세	179,149	121,480	114,870	1,1000*가산율				
		0세	273,969	200,390	193,780	1,890*가산율				

팀보육추진가산	특정가산				영양관리가산 (전임영양사 고용)
	주임보육사 전임가산	사무직원고용가산	장애아동 교육가산	냉난방 가산 (기타지역)	
(5,290*추가배치 보육사수)+50*가 산율*추가배치보 육사수	(256,460(기본액) +2,560*가산율)/ 매월1일 현원	(기본액46,100+처 우개선가산460*가 산율)/매월1일 현원	기본액33,250 +처우개선가산 330*가산율/ 매달 1일 현원	110	(76,960(기본액) +760*가산율처 우개선가산1)/매 월1일 현원

- 주: 1) 특정가산의 종류는 표에 서술한 항목이외에도 다양하나, 대부분의 보육소가 실시하고 있는 항목만을 삽입하였음.
2) 특정가산의 단가는 보육시간, 지역, 연령, 정원구분에 관계없이 동일
3) 추가배치한 보육사는 3명으로 가정하고 산출
4) 두시설 모두 기본가산율을 19%로 가정하고 산출

자료: 내각부 홈페이지, 2023년 공정가격표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law/kodomo3houan/pdf/seisyourei/r050331/tanka-2.pdf>(2023. 09. 04. 인출).

(2) 20/100지역의 소규모 보육사업 A형의 표준보육비용

소규모 보육사업 A형은 우리나라의 가정어린이집과 유사하다. 6명~19명의 정원으로 운영되며, 전원 보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정부가 2015년 이후 법정시설화한 유형으로 맞벌이 가구가 많은 대도시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20/100지역에 해당하는 동경도의 소규모 보육사업 A형의 표준보육비용을 내각부가 고시한 공정가격표에 기초하여 산

출해 보고자 한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규모 보육사업A형은 보육사 배치기준은 보육소와 동일 하지만 정원규모가 일반 보육소에 비해 적기 때문에 운영비용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기본분 단가를 비롯한 처우개선가산 기본액이 보육소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고, 대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임차료 비중이 높아, 1인당 표준보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특정가산의 종류는 80명 정원시설에 비해 적다.

〈표 Ⅲ-2-10〉 일본 소규모보육사업의 지역·정원규모·연령·보육시간별 표준보육비용

단위: 엔

지역 구분	정원 구분	연령 구분	표준보육비용 (1인당, 11시간)	보육시간별 기본분 단가		처우개선가산 I		감가상각비 가산(도시부)
				11시간	8시간	11시간	8시간	
20/ 100 지역	6명~ 12명	1,2세	279,413	214,000	209,380	2,030*가산율	1,980*가산율	3,300
		0세	373,623	293,200	288,580	2,820*가산율	2,770*가산율	
	13명~ 19명	1,2세	223,586	168,420	165,490	1,570*가산율	1,540*가산율	2,100
		0세	317,796	247,620	244,690	2,360*가산율	2,330*가산율	

임차료가산			냉·난방비 가산	영양관리가산
구분	표준	도시부		
a지역	20,300	22,600	1급지 1,849	A: (76,960(기본액)+760*가산율)/매월1일 현원 B: (50,000(기본액)+500*가산율)/매월1일 현원 C : (10,000(기본액)/매월1일 현원 * A: 전임영양사 고용, B: 단가에 적용되는 직원이 영양사 겸임, C:축탁영양사
b지역	11,200	12,400	2급지 1,630	
c지역	9,700	10,800	3급지 1,610	
d지역	8,700	9,700	4급지1,270, 기타지역 110	

주: 1) 현원 12명, 19명으로 간주하고 산출

2) 소규모 시설이라 팀보육추진가산 없음. 두시설 모두 기본가산율을 19%로 가정하고 산출

3) 특별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을 경우, 장애아동보육가산으로 1,2세 아동 1인당 158,400+1580*가산율, 0세 아동1인당79,200+7,920*가산율이 적용되나, 없다는 전제하에 산입하지 않았음.

4) 동경도는 임차부 가산에서 a지역, 도시부에 해당, 냉난방비 가산은 홋카이도등 일부지역 제외하고는 기타지역 해당.

5) 영양관리가산은 소규모 시설이므로 C로 간주하고 계산함.

자료: 내각부 홈페이지, 소규모 보육 사업,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law/kodomo3houan/pdf/seisyorei/r050331/tanka-5.pdf>(2023. 09. 05. 인출)

다) 일본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지원방식

일본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지원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2004년 이전까지는 기초 자치단체인 시정촌이 보육소 운영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직접 공·사립의 모든 보육소에 일차적으로 지불한 후,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연계된 보호자 부담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의 1/2은 중앙정부, 도도부현(1/4), 시정촌(1/4)이 부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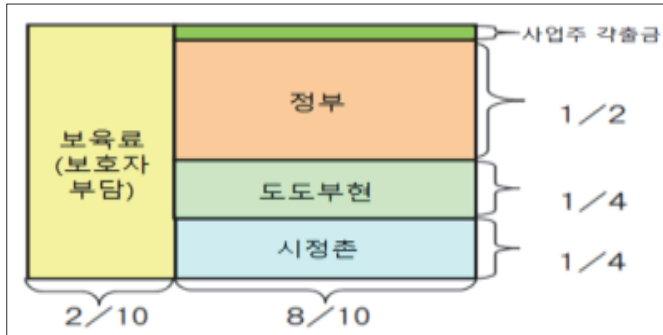
(표준보육비용 = 보호자부담보육료+중앙정부+도도부현+시정촌). 그러나 2004년, 공립보육소 보육비용의 일반재원화 정책에 따라 공립보육소 보육비용은 국고부담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사립보육소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근거하여 위탁비 형식으로 1차적으로 시정촌이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용전액을 보육소에 지불한 후, 보호자 부담 보육료를 제외한 비용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1/2), 도도부현(1/4), 시정촌(1/4)이 분담하는 구조이다. 보호자의 보육료 징수업무는 아동복지법 제24조의 “보육소 보육에 대한 시정촌의 책임”규정에 따라 공,사립 보육소 모두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 가정적 보육사업, 소규모보육사업 등의 지역형 보육사업은 2012년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2015년부터 시설이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직접 징수하고, 시정촌은 보호자 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시설에 지불하고 있다.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연동되는 구조로 가장 낮은 1계층(생활보호세대)에서부터 최상위 8계층(시정촌 주민세 과세액 연간 397,000엔 이상)의 8단계로 분류된다. 2019년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정책으로 3세 이상 유아의 보육료 및 저소득계층의 0~2세 영유아의 보육료는 전액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으로써, 보호자 부담은 없다. 그러나 급식비는 무상화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비로 보호자가 보육시설에 직접 납부한다. 따라서 현재 보육료 부담은 0~2세에 한정된다. 그리고 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준은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부담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2023년 0~2세 영유아의 최상위 8계층 부모부담 보육료로 104,000엔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토시는 91,600엔, 오카자키는 48,000엔을 징수하고 있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2023). 이는 저출생의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경감률을 달리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보육비용에서 공비부담분과 보호자 부담분의 법적규정은 예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나(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편 2022), 1970년대까지는 대략 65대 35정도, 1980년대에는 50대 50이었으며, 1990년 이후 저 출산 시책의 시행으로 55대 45수준이었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편 2018). 그러나 2019년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정책의 시행으로 후생노동성은 공비부담과 보호자 부담의 비율은 대략 8대2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

소편 2022). 일본 보육시설 보육비용 부담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I-2-1] 일본 보육소의 보육료 부담방식



자료: 후생노동성 아동가정국 보육과(2021). 보육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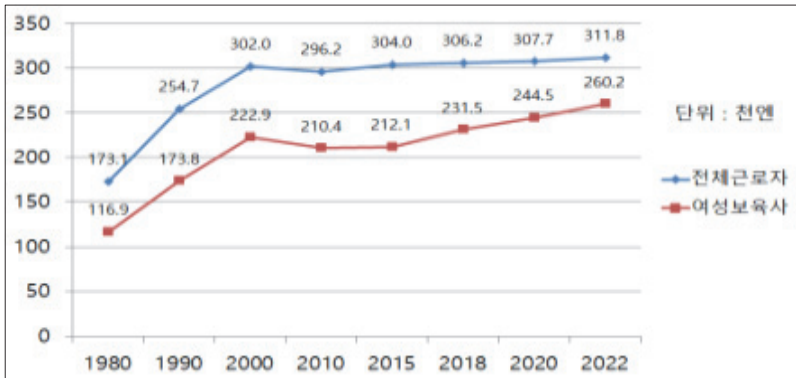
4) 보육시설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여성근로자의 증가로 보육시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보육사의 임금, 근무시간, 업무강도 등 근로조건은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하며, 특히 사립보육소 보육사의 임금이 낮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개별 보육소는 임금개선, 복지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육사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가) 보육교직원의 임금

후생노동성 추계에 의하면 보육사 등록자는 2019년 10월 1일 현재 160만 7천 명으로, 2007년 이후 12년간 76만9천명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5만 9천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편, 2021). 한편 보육사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건수는 2022년 1월 현재 5만 건으로 파악되는 반면 구직자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편, 2022). 이와 같이 구인·구직희망자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금 등 처우문제가 타 직종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III-2-2>는 198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일본 전체 근로자 및 사립 보육소 보육사의 평균급여의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 III-2-2] 일본 일반 근로자 및 사립보육소 보육사의 월 평균 급여 비교



자료: 전국보육단체연합회·보육연구소편(2023).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보육사와 타 직종 간 임금격차는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육소 확충으로 보육사 부족문제가 심화되자, 2015년 이후 공·사립 보육사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원의 평균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및 기능·경험에 따른 처우개선책 실시 등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격차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311.8엔에 비해 사립 보육소 여성보육사의 임금은 260.2엔으로 45,000엔 정도 낮다.

사립보육소 보육사의 임금상황은 아래 <표 III-2-11>의 2019년 내각부가 실시한 유치원·보육소·인정어린이원 보육교직원의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III-2-11> 일본보육시설 보육교직원 임금실태

단위: 엔

직종	보육소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소규모 보육 (A, 사립)	가정적 보육 (사립)	
	공립 (근무연수)	사립 (근무연수)	공립 (근무연수)	사립 (근무연수)	공립 (근무연수)	사립 (근무연수)			
시설장 (원장)	632,982 (31.8년)	565,895 (25.8년)	625,524 (29.5년)	453,458 (28.6년)	618,928 (31.7년)	556,400 (27.9년)	342,861 (14.6년)	가정적 보육자	358,988 (16.0년)
주임 보육사 (교무)	561,725 (25.1년)	422,966 (21.7년)	575,201 (25.3년)	358,046 (20.4년)	556,730 (25.9년)	395,512 (24.2년)	303,289 (11.9년)		
보육사 (교사)	303,113 (11.0년)	301,823 (11.2년)	378,356 (11.1년)	287,492 (7.8년)	287,181 (9.9년)	279,954 (8.2년)	268,755 (8.1년)		

직종	보육소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소규모 보육 (A, 사립)	가정적 보육 (사립)
	공립 (근무연수)	사립 (근무연수)	공립 (근무연수)	사립 (근무연수)	공립 (근무연수)	사립 (근무연수)		
조리원	329,211 (14.9년)	269,534 (24.4년)	297,908 (12.7년)	184,240 (8.3년)	248,914 (12.0년)	257,059 (8.8년)	241,897 (6.6년)	270,511 (6.9년)
사무원	258,926 (6.4년)	340,919 (10.4년)	260,389 (8.5년)	304,141 (12.4년)	253,270 (6.8년)	318,047 (10.4년)	248,029 (5.4년)	-

자료: 내각부(2019). 2019년도 유치원·보육소·인정어린이원 등의 경영 실태조사 집계 결과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사가 보육사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Ⅲ-2-11>에서도, 공립유치원교사 월급여는 공립 보육소 보육사에 비해 근무연수는 11년 정도로 비슷하나, 70,000엔 정도 높다. 반면, 공립보육소 보육사는 근무연수가 많고 승급할수록 급여수준이 높아져 시설장, 주임보육사 단계에서는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육사 임금을 공립, 사립별로 비교해 보면 근무연수가 11년이고 보육사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월 30만 엔 정도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나 주임보육사, 시설장 등으로 직위가 상승할수록 임금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11>에서 보듯이 21.7년 재직경력의 사립보육소 주임보육사의 월 급여는 422,966엔 임에 비해 공립 보육소의 25.1년 경력 보육사는 561,725엔으로 13만 엔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공립보육소 보육사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매년 호봉이 승급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구조이다. 이에 비해 사립보육소는 기본분 단가와 직원의 평균근무연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각종 가산액의 총액(표준보육비용)을 운영비로 지급받아 급여를 지불한다. 따라서 표준보육비용이 직원의 근속연수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공립보육사의 호봉승급 및 승진으로 인한 임금상승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것이 공사립보육사의 격차확대로 이어진다고 판단된다. 앞서 사립보육소 표준보육비용 산정방식에서 평균근속연수 반영은 1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과 동일한 12%를 적용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보육사가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영유아를 보육하고 이것이 영유아의 복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공립보육소와 같이 직위 및 근속기간 전체가 임금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이 주로 운영하는 보육소와 달리 영리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소규모 보육시설 및 가정적 보육사업의 보육사 및 시설장은 재직기간이 짧은 특징이 있고 월급여액도 보육소에 비해 낮은 편이다. 영리법인은 운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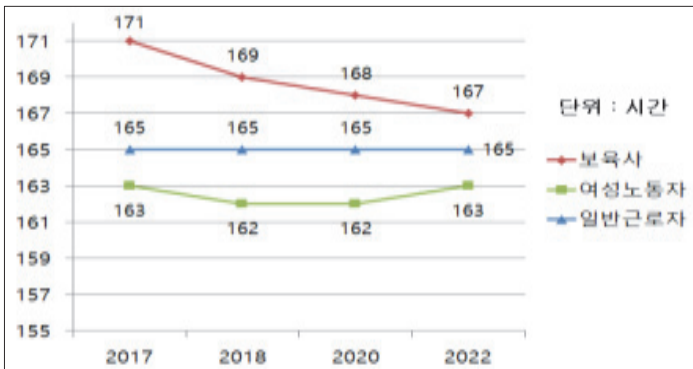
를 사회복지법인에 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것이 보육사의 저임금으로 연결되었다고 판단된다.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보육소의 인건비 비중은 70% 이상이나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은 51.9%이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2019: 112). 이로 인해 영리법인 보육소에서는 보육사의 잦은 이직과 경력보육사의 기피현상, 초임보육사의 높은 비율로 연결되고 있다(若林俊郎(와카바야시 토시로우), 2011).

나) 보육사의 근무시간

보육사는 임금 뿐만 아니라 월평균 근무시간도 타 직종 근로자에 비해 장시간이며, 업무량 과다와 함께 시간 외 근무 및 휴가취득율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육소는 주 6일, 11시간 개소가 원칙이며 보육시간도 대부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8시까지로 노동강도가 높다.

다음의 그림은 일반근로자, 여성근로자, 보육사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사의 근로시간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타 직종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이다.

[그림 III-2-3] 일반근로자 및 사립 보육소 보육사의 월 평균 근로시간 비교



자료: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편 보육백서

2018년 실시된 아이치현 보육노동실태조사(養輪 明子(미노와 아키코), 2018)에 의하면, 보육사의 시간외 근무시간 월 평균은 18.9시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타 직종과 달리 보육업무 특성상 74.5%의 보육사가 근무시간 전에도 시간외 근무를

하였으며, 이중 90%는 5일 이상, 1일 30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전회의, 행사준비, 보육환경정비, 보호자 면담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 후 시간 외 근무의 비율은 87.7%, 자택업무비율도 75.6%에 달하였다. 특히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므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가정과의 연락장 작성, 보육기록, 환경정비, 정리 등으로 대부분의 보육사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국사립보육원연맹의 인터넷 조사에 의하면 연간 7일 정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보육사도 절반에 불과하였다(전국사립보육원연맹, 2020).

다) 보육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

동경도 보육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22)에서는 는 도내 보육사의 퇴직 사유로, 낮은 급여(61.6%), 업무량(54%), 장시간 근무(35.4%)를 열거하였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공립보육소 보육사에 비해 사립보육소 보육사는 이직률이 높고 조기 퇴직하는 비율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지방자치체, 보육소는 각각 사립보육소 보육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1) 중앙정부의 보육사 처우개선 시책

정부는 다양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육사의 저임금이 보육사의 이직, 퇴직 등으로 이어져 보육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앞서 설명한 처우개선가산 I, II, III 등을 2013년 이후 실시하면서 보육사의 임금은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가) 처우개선가산 I

사립보육소 보육사의 임금개선을 목적으로 전체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를 반영하여 가산율을 책정하여 이를 표준보육비용에 반영한다. 가산율은 기초분+임금개선요건분+경력패스요건분을 합산한 것이다. 기초분은 당해 보육소 전체 보육사의 평균근속연수에 따라 2%~12%를 적용하며, 임금개선요건분은 직원임금개선계획을 책정하는 시설에 대해 직원의 평균근속연수에 따라 6%~7%를 더해준다. 반면 경력패스요건분은 직원의 직위, 직책, 근무내용에 맞게 근무조건책정을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임금개선요건분에서 2%를 감산한다. 따라서 사립보육소가 처우개선가산 I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산율은 19%이다. 처우개선가산 I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육소에 일괄지불되며, 직원의 근속연수 등을 감안하여 개별보육소가 지급하는 형태이다.

(나) 처우개선가산II

정부는 보육사 임금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 II를 2017년 도입하였다. 이는 기능과 경험에 따른 보육사 등의 처우개선(경력up) 방식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근속연수 7년 이상의 부주임 보육사, 전문리더를 처우개선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8개 연수과목(영아보육, 유아교육, 장애아동 보육, 알레르기 포함 식생활교육, 보건위생·안전대책, 보호자지원·양육지원, 보육실습, 매니저먼트) 중 4분야 이상을 수강하면 월4 만엔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두 번째는 근속연수 3년 이상의 직무분야별 리더를 처우개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기 8종류의 연수과목 중 1분야 이상을 수강하면 월 5,000엔을 처우개선 가산비를 지급한다.

(다) 처우개선가산 III

2022년 2월부터 정부는 처우개선가산 III를 통해 보육사 급여를 인상하였다. 이는 임금개선계획서, 실적보고서를 시정촌에 제출한 보육소에 대해 수입의 3%정도에 해당하는 월 9,000엔을 모든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추후에는 인상액 상당액을 표준보육비용에 가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발표하였다(내각부 보도자료, 2022).

(라) ICT화 사업(정보통신기술화 사업) 등

보육사는 아동을 보육하는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보육계획작성, 기록, 보호자와의 연락 등으로 업무부담이 크다. 이에 보육사 업무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정보통신화에 필요한 시스템 도입비용 및 외국인 아동 보호자와의 관계형성에 필요한 통번역을 위한 기기도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1시설당 150만엔을 지원하며, 부담비율은 정부 1/2, 시구정촌과 사업자는 각각 1/4를 부담한다(후생노동성 2020). 이외에도 시설당 월액 10만엔(정부1/2,도도부현1/4,시구정촌 1/4)을 보조하여, 놀이기구소득, 식사준비, 통역등을 위한 직원채용 및 보육보조자 채용 경비보조(정부3/4,도도부현1/8,시구정촌1/8)를 통해 보육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 처우개선시책

동경도, 카나가와현 등 대도시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육사 부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자치체의 재정상황, 대기아동유무 등에 따라 처우개선시책에는 차이가 있다.

(가) 처우개선수당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립 보육사의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처우개선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아동문제로 보육소 증설이 이어지고 있는 동경도(일본경제신문, 2017)에서는 2017년부터 월 44,000엔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치구인 에도가와구(에도가와구 홈페이지, 2023. 09. 15. 인출), 오오타구(오오타구 홈페이지, 2023. 09. 15. 인출)등에서는 동경도 지원과 함께 월 10,000엔을 추가 지불한다. 대기아동이 심각한 치바현의 우라야스시, 후나바시시. 마쯔토시 등은 각각 월60,000엔, 48,875엔, 45,000엔 등으로 수당액이 높다(보육사 인제뱅크 홈페이지, 2023. 09. 15. 인출)

(나) 장학금 변제지원사업보조금

장학금을 활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인가보육소에 근무 중인 보육사의 장학금 변제에 소요되는 금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동경도 치요다구는 240만엔을 상한으로 보조하며, 에도가와구는 5년마다 10만엔을 지원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치바현의 치바시는 연 60만엔까지 보조하며, 사립보육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직준비금을 40만엔까지 보조한다(후생노동성, 2020).

(다) 주택임차보조

동경도 등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보육사에게 있어 월 임차료는 부담이다. 이에 동경도 에도가와구 월82,000엔, (에도가와구 홈페이지, 2023. 10. 05. 인출), 오오타구(오오타구도 홈페이지, 2023. 10. 05. 인출) 월액 130,000엔을 상한액으로 하여 임차료 보조를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숙사를 지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지자체의 주택임차보조에 대해 중앙정부는 월 82,000엔의 한도내에서 1/2부담,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청청과, 사업자가 각각 1/4씩 부담한다(후생노동성, 2020).

(3) 보육원의 보육사 처우개선시책

(가) 통근수당

자택에서 근무지 보육소까지의 이동에 필요한 전철요금, 버스요금, 유류대 등을 지급한다, 실비 지급 또는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개별시설에 따라 다양하다. 동경도의 세타가야 구는 보육소 별로 상한액을 2만엔, 또는 25,000엔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 급식비 무료, 영유아동반출근, 영유아 보육료 면제 등

보육소에서는 아동의 급식을 실시한다. 직원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나, 무료급식으로 대응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시설에 따라 영유아 동반하여 출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당해아동의 보육료를 면제해 주며, 이사비용을 지불하는 지자체도 있다.

(다) 보육사 배치기준의 향상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사 배치기준으로는 질적수준이 확보된 보육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육사 또한 과도한 노동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부분의 보육소는 배치기준보다 약1.8배의 보육사를 배치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2022: 123).

나. 호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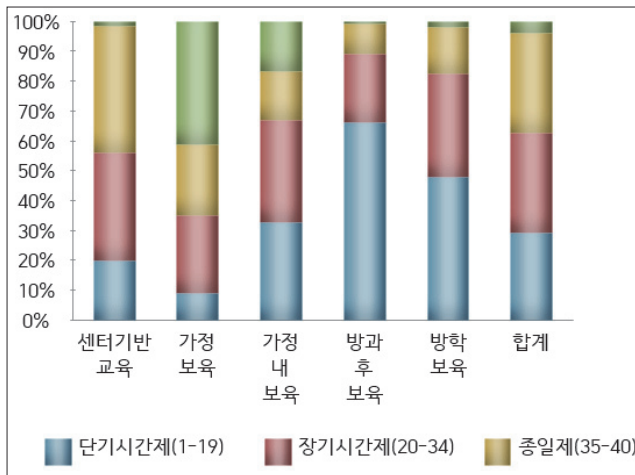
호주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유아교육과 보육(CEC)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Shaping our Future(미래를 구상하기)’ 전략을 택하고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보육과 교육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① 전문성 개발 기회 지원, ② 유아 인력을 위한 보육료 할인, ③ 외딴 지역 교사를 위한 재정지원, ④ 정신 건강 자원 무료 지원 등을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성 개발 기회 지원을 위해서 전문성 개발 보조금, 유료 실습 보조금, 실습 교료 등을 위해 2023~24년부터 2026~27년까지 7,24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술을 강화하고 직업 경험과 기술을 강화하고, 교사 보유 유지, 공급 확대와 역량 증강에 목적이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2023,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early-childhood-workforce/national-childrens-education-and-care-workforce-strategy>. 2023. 8. 11 인출).

1) 호주 보육교사 자격과 근무시간

호주는 호주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 관리국(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을 통해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한 최소 자격 및 교육자 대 아동 비율 요건을 국가 품질체제(National Quality Framework, NQF)에 명시하고 있는데, 크게 센터 기반 보육(Center-base day care), 가정 보육(family day care), 가정 내 보육(In -Home care), 방과 후 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으로 구분된다(김지현·김자연, 2022:61).

또한 호주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자격은 취학 전 연령의 아동에게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는 대상자에 대한 것으로 세 가지 유형의 자격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은 1) 유아 교사 자격(Early childhood teaching qualifications), 2) 디플로마 수준의 자격(Diploma level qualifications), 3) 수료증 III 수준의 자격(Certificate III level qualifications)으로 구분된다. 그리하여 보육·교육 제공 대상자는 국가 승인 자격 목록에 제시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김지현·김자연, 2022:66).

[그림 III-2-4] 호주의 보육서비스 유형별 주중 근무 시간 비율



주: 1) 가중 데이터의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개별 요소의 실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2) 서비스에서 기준 준거기간(주)동안 근무 시간을 보고한 직원을 대상으로 산출되었음.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August). 202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ational Workforce Census report. p. 12, Figure 6 Proportion of hours worked during reference week by service type.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resources/2021-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national-workforce-census-report> (2023. 8. 14. 인출)

호주 교육부의 2021년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보육서비스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단기 시간제 고용(주당 1~19시간 근무), 장기 시간제 고용(20~34시간 근무), 종일제 고용(주당 35~40시간 근무), 초과 근무제 고용(주당 41시간 이상 근무)로 나누고 있다. 보육 서비스 유형별로 근로시간에 대한 비중은 비교적 균형적인데, 종일제 고용과 장기 시간제 고용이 동일하게 33.4%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단기 시간제 고용의 비중은 29.1%로 종일제와 장기 시간제에 비해 작았고 초과 근무시간은 4.1%로 매우 작았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2:12)

보육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살펴보면 종일제 보육의 경우 종일제 고용형태(주당 35~40시간 근무)가 4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장기 시간제 고용(36.1%), 단기 시간제 고용(19.9%) 순이었다. 반면 가정 보육의 경우, 초과 근무제 고용(주당 41시간 이상 근무)이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으며 장기 시간제 고용이 25.9%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보육의 경우는 장기 시간제 고용이 34.0%, 단기 시간제 고용 32.7%로 종일제보다는 비중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방과 후 보육의 경우는 단기 시간제 고용이 66.0%로 장기 시간제 고용 23.0% 보다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방학 보육의 경우도 단기 시간제 고용이 4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장기 시간제 고용으로 34.6%였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2:12).

2) 호주 보육교사의 급여

2021년 유아교육 및 보육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종일제, 가정 보육, 가정 내 보육, 방과 후 보육, 방학 보육)에 종속되는 전체 종사자의 57.8%가 최저 시급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명 중 1명(20.9%)은 보너스보다 최대 10.0%더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비율이지만 7.3%는 10.0%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2:13).

가정 보육(74.6%) 과 가정 내 보육(56.4%) 서비스에 근무하는 많은 수의 직원이 보상금과 비교하여 자신의 임금을 모른다고 보고했다. 이는 해당 부문에서 독립 계약자로서 보상금이 적용되지 않는 직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센터 기반

보육 서비스의 유급 직원 3명 중 1명(33.6%)은 보너스율 이상을 받는다. 방학 보육의 69.4%와 방과 후 보육의 68.9%는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2:13).

〈표 III-2-12〉 호주의 서비스 유형별 담당 직원의 임금 비율 및 인원수

단위: %, 명

임금	센터 기반교육	가정 보육	가정 내 보육	방과 후 보육	방학 보육	합계
비율						
최저시급	57.1	17.7	23.6	68.9	69.4	57.8
최저시급의 10% 이상	25.5	4.0	11.5	12.9	13.1	20.9
최저시급의 10-25% 사이	5.9	1.5	4.3	5.0	4.6	5.4
최저시급의 25% 이상	2.2	2.4	4.3	0.9	0.9	1.9
모름	9.2	74.6	56.4	12.3	12.0	14.0
인원수						
최저시급	74,925	2,013	223	19,233	15,747	112,141
최저시급의 10% 이상	33,484	452	108	3,612	2,962	40,617
최저시급의 10-25%	7,745	165	40	1,405	1,048	10,404
최저시급의 25% 이상	2,879	269	40	247	201	3,637
모름	12,075	8,494	531	3,424	2,720	27,244
부분합계	131,109	11,393	942	27,920	22,678	194,043
기타	0	714	0	0	0	714
총 합계	131,109	12,107	942	27,920	22,678	194,757

주: 1) 가중 데이터의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개별 요소의 실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2) 해당 표는 임금을 받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산출되었음.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August). 202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ational Workforce Census report. p. 13, Table 5 Paid contact staff wage compared to the award rate for their position by service type,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resources/2021-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national-workforce-census-report> (2023. 8.14. 인출)

오스트레일리아의 채용정보사이트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연간 급여는 75,000 달러에서 85,000 달러(한화 약 6,468만원에서 7,329만원)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시급은 35달러에서 45달러(한화 약 3만원에서 3만 9천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채용정보사이트: SEEK, Early Childhood Teacher salary, <https://www.seek.com.au/career-advice/role/early-childhood-teacher/salary>. 2023. 8. 11 인출).

나. 스웨덴 사례

스웨덴국립교육청(Skolverket)은 ‘A boost for Teachers(교사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 행정 기관으로서 스웨덴 교육이 국립 학교 개발 프로그램과 교직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통해 우수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가 급여의 80%를 유지하면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카탈로그를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교육을 통해 약 30,000 명의 자격을 갖춘 교사가 2007년부터 2018년말까지 지속되었다.

동시에 정부는 경력은 있으나 완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위한 보충 교육에 10억 SEK를 투자하고(관련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사를 위한 전문 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Svenskundervisning för invandrare, SFI) 및 학교장 교육. 스웨덴 교육청(Skolverket)은 교직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특정 자금 지원을 담당해 오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3,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continuing-professional-development-teachers-working-early>. 2023. 8. 30 인출)

2021년에는 국가전문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교사 역량 개발을 강조하였고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의 질과 평등 강화, 10년제 의무 학교 도입 준비의 일환으로 유치원 교사 추가 교육을 계획하였다. 2022년에는 더 많은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을 위해 스웨덴 단기거주자의 자녀 대상 교육 지원 등의 내용으로 22년 7월 1일에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어, 23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2023년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한 주정부 보조금 확대를 하여 2023년 유치원 내 품질 향상 조치를 위한 주 보조금에 SEK 8억원을 추가하여 아동 그룹의 규모를 축소하고, 직원을 채용 및 유지하는 등에 사용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교직원 부족 해결을 위한 평생 교육 투자를 위해 2023년 스웨덴 달러 6억 7,300만 달러를 배정하고 급여 및 연구 기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3,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national-reforms-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2023. 8. 14 인출).

1) 스웨덴의 보육교사 자격과 근무시간

스웨덴의 보육·교육 기관은 크게 프리스쿨(förskola)과 유아학급(förskoleklass)으로 구분되고 가정보육(pedagogisk omsorg),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프리스쿨(öppen förskola), 레저 타임(fritidshem)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교사는 근무하는 ECEC 기관 유형에 따라 유아교사(förskollärare), 보조교사(child minder), 가정보육모(family child minder), 레크레이션 교사의 네 종류로 구분된다(최윤경 외, 2015:26).

프리스쿨 교사는 공식적으로 최저 자격 수준이 없지만, 각 프리스쿨에 프리스쿨 교육 학위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을 의무로 하고 있어 교수방법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조교사는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차 수준(second level)의 직업 이수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3세와 의무 유아학급을 운영하는 교사의 경우는 전문자격의 필요성을 요구한다(European Commission, 2022).

한편 교대근무나 시간차 근무를 통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전과 오후 각각 휴식시간과 30분의 점심 시간, 교사 전용 공간 등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외, 2015:52).

프리스쿨 직원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40시간이며, 그 중 31시간이 규제 대상이라고 한다. 유치원 교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라 25~32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교사들은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방학을 가질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European Commission, 2023,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conditions-service-teachers-working-early-childhood-and-school>. 2023. 8. 30 인출).

2) 스웨덴 보육교사의 급여

대부분의 프리스쿨 교사, 여가 시간 교사, 교사 및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으며, 스웨덴 지방자치단체협회(Sveriges kommuner och Regioner)는 급여 및 일반 근무 조건에 대해 교사 노동조합과 협상하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에 고용된 교사는 교장과 교원 노동조합의 협상을 통해 급여

와 근무 조건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일부 교사의 경우 고용주 단체와 교사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3,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conditions-service-teachers-working-early-childhood-and-school>, 2023. 8. 30 인출).

교사 급여는 개별적이고 차별화되며 지역적으로 결정되는데, 교사 평가는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교직원은 학교장과 정기적인 직무 개발 대화를 나누고 임금은 노동 시장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 진다(European Commission, 2022,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conditions-service-teachers-working-early-childhood-and-school>, 2023. 8. 30 인출).

아래 표는 2021년 평균 급여를 나타내고 있는데, 급여 규모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교사의 급여가 더 높지만 급여와 고용 기간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다(European Commission, 2022,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conditions-service-teachers-working-early-childhood-and-school>, 2023. 8. 30 인출).

〈표 III-2-13〉 스웨덴 보육교사 급여

단위: SEK

구분	월 급여
가정 보육모	25,400(약 3,060,182원)
유아교사	33,100(약 3,987,875원)
레저-타임 교사	31,400(약 3,783,060원)
의무 학급 교사	36,900(약 4,445,698원)

자료: 스웨덴 통계청

출처: European Commission(2023), salaries.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conditions-service-teachers-working-early-childhood-and-school>(2023. 8. 28 인출)

한편, 스웨덴의 급여통계 사이트에서는 2023년 기준 세전 월 SEK 31,048, 세 후 월 SEK 23,970(한화 약 295만 3,343원)로 보고하고 있다(급여통계사이트: Lonstatistik.se. <https://www.lonestatistik.se/lon-efter-skatt.asp/som/Forskollarare%E2%80%94Forskolelarare-1196>, 2023. 8. 11 인출).

〈표 III-2-14〉 유럽의 교사 및 교장의 급여

단위: USD

교육 수준	pre-pry education			
경험 수준	초기 급여	10년 후 급여	15년 후 급여	최고 급여
국가				
호주	46,770	68,072	70,036	72,461
덴마크	46,955	53,264	53,264	53,264
핀란드	32,525	35,465	35,803	35,803
프랑스	32,619	37,628	40,043	57,885
이스라엘	26,638	33,963	37,891	65,509
이태리	32,963	36,141	39,563	47,990
한국	34,123	51,508	60,185	95,780
네덜란드	45,594	60,394	70,899	85,360
노르웨이	38,716	47,186	47,186	47,656
스페인	43,684	47,428	50,548	62,368
스웨덴	42,217	44,247	44,656	49,176
스위스	56,405	70,184	-	86,311
터키에	33,719	34,719	34,256	36,779
잉글랜드	34,211	-	54,889	54,889
스코틀랜드	42,280	53,068	53,068	53,068
미국	42,381	55,291	63,625	79,478
OECD 평균	34,245	42,684	45,253	55,999
유럽연합 22개국	33,108	39,939	43,746	53,313

주: -는 결측치

자료: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TS_ST

3. 소결

국내외 보육교사 유관 종사자의 주요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는 사립 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는 2013년 이후 시행한 다양한 처우개선시책으로 임금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국내 유사 종사자로 사립유치원 교사를 보았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은 기본급 보조와 수당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과정 학급 담임을 맡을 경우 기본급보조와 담임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월65만원이었던 처우개선비는 매해 3만원씩 인상되어 2023년 77만원까지 확대되어, 기본급보조 60만원, 담임수당 13만원, 장기근속수당 4만원, 총 77만원을 지원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시도별로 기본급 보조지원 대상기준은 약간

상이하였다.

교육 기본급 보조 외에 대체교사 또는 강사 인건비 지원과 육아휴직 수당 지원 등이 있으며, 대체교사 지원 1일 단가는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교육과정 시간에 대해 최소 70,000원에서 최대 96,240원으로 교육청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추가 금액은 유치원에서 자체 부담한다. 특히 2022년 3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 교원도 국공립 유치원 교원에게 적용되는 휴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육아휴직 수당 지원단가는 대부분 하한액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육아휴직 1년간 지원한다. 이외 시도교육청별에 따라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원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인건비 산정의 토대가 되는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용 단가에 전체직원의 근무연수를 반영하여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사립보육소 보육사의 저임금이 일정부분 해소하고 있다. 2013년 이전까지 일반근로자에 비해 사립보육사 월 급여평균은 70,000엔 정도 낮았다. 그러나 직원의 평균근무연수에 따라 가산하는 처우개선가산 I의 시행으로, 2019년 시행된 경영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경력 11년차인 공립 보육사와 사립 보육사는 동등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11년 이상에 대해서도 10년 이상과 동일한 12%의 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어, 장기근속 보육사의 퇴직 및 저임금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육관계자들은 꾸준히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일본의 경우 1인당 표준보육비용의 기본분 단가는 지역, 정원, 보육시간,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가산, 임차료가산, 감가상각가산, 팀 보육가산, 3세 아동 배치가산 등 보육의 실제상황을 반영하여 가산을 적용하고 이를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보육사의 임금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 단가책정으로 100분의 20지역 및 100분의 6지역의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용은 상이하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에도 규모의 경제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원규모에 따라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동경도에서 11시간 보육을 받는 13명~19명 시설의 0세 및 1,2세 아동의 기본분 단가는 각각 247,620엔, 168,420엔이다. 반면, 동일한 동경도의 80명 정원시설에서 11시간 보육을 받는

0세 및 1·2세 아동의 기본분 단가는 200,390엔, 121,480엔으로 소규모시설이 80명 시설에 비해 월 4만엔 정도 높다. 또한 6명~12명 정원시설은 0세 293,200엔, 214,000엔으로 80명 정원시설에 비해 기본분 단가에서 9만엔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산항목 및 가산액도 시설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즉, 동일한 동경도의 보육시설인 80명 정원 보육소와 소규모 보육시설 A형의 가산항목 및 단가가 상이하다. 임차료가산, 처우개선가산 I 가산액은 소규모 보육시설 A형의 가산액이 80명 시설에 비해 한층 높게 책정되고, 이로 인해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용이 높아, 소규모 보육시설의 보육의 질 및 보육사의 저임금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넷째, 일본의 경우 공립보육소가 보육내용, 시설운영 등에 있어서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사립보육소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승진에 따른 급여상승을 제외하고는 사립보육사의 임금은 공립보육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공립보육소는 지방자치체 직영으로, 보육사 신분 역시 공무원 이므로, 타직종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급여체계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상승 및 승진이 있다. 반면, 사립보육소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며,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하여 산정된 운영비 전액을 지방자치체가 보육소에 지불하며, 보육료 징수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즉, 아동복지법 제24조의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의 시정촌의 책임”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사립보육소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립 보육소 운영에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로, 사립보육소는 우리나라와 같은 보육교직원의 급여기준표는 없으나, 공립보육소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본론에서 보았듯이 주임보육사, 시설장으로 승진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11년 경력의 보육사 임금은 공사립 보육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초과하여 보육사를 배치 또는 기준보육아동수 이하로 보육하는 경우에는 팀보육가산, 3세아동배치가산 등을 통해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함으로써 보육사의 업무과중 해소 및 보육사 임금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0세 영아 3명, 1·2세 아동 6명을 1명의 보육사가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동적활동이 활발한 3세 아동 20명을 1명의 보육사가 보육하기는 어

려우므로 다수의 보육소는 배치기준 보다 1.8배의 보육사를 고용함으로써 보육사의 과로 대비 및 보육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팀 보육가산, 주임보육사 가산, 3세아동배치가산 등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으로 산정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지불하고 있으므로 보육의 질 및 보육사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및 보육소는 주택임차보조, 통근수당 등을 통해 사립보육소 보육사의 임금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보육소 보육사의 임금은 다양한 가산의 운용 및 처우개선 수당 등으로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일반근로자에 비해 여전히 수준은 낮으며 이는 보육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 이에 지방자치체 및 보육소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임차료 및 교통비 지원을 통해 보육사 저임금을 다소나마 보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도 지키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다양한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 자치제 및 개별보육소의 동향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IV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세입·세출 분석

- 01 가정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 02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 03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 04 소결

Ⅳ.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세입·세출 분석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어린이집 2020~2022년 3개년 어린이집 월별 세입·세출 자료를 분석하였다. 어린이집의 세입·세출 결산 자료 중, 월평균 현원이 0명, 원장이 0명, 연간세입이 10,000,000원 미만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인건비 세입·세출은 가정, 민간 이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세입·세출 구조가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1. 가정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2020~2022년 가정어린이집 현원규모를 보면 16명 이상인 경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현원 16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비율은 2020년 46.4%, 2021년 47.2%, 2022년 48.5%로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저출생 심화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가정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통계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은 2013년 23,632개소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여 2022년말 12,109개소로 2013년 대비 95.2% 감소하였다.

〈표 IV-1-1〉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현원규모별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원(0~10명)	3,271	21.5	3,030	22.2	2,562	21.5
현원(11~15명)	4,906	32.2	4,172	30.6	3,583	30.0
현원(16명 이상)	7,069	46.4	6,441	47.2	5,788	48.5
계	15,246	100.0	13,643	100.0	11,933	100.0

가정어린이집 반 구성현황을 보면, 현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는 평균 2개반으로 0-1세 혼합반과 1-2세 혼합반이 주였고, 현원이 11~15명인 가정어린이집은 0세 반부터 2세반까지 다소 고르게 분포하였다. 현원 16명 이상인 가정어린이집은 혼합반보다는 단일연령반 구성이 많았다.

〈표 IV-1-2〉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월평균 반 구성 현황

단위: 개

구분		월평균 반수(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월평균 반수(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10명)	계	2.3	2.3	2.3	2	2	2
	0세	0.4	0.4	0.5			
	0-1세	0.7	0.7	0.7	1	1	1
	1세	0.3	0.3	0.3			
	1-2세	0.6	0.6	0.6	1	1	1
	2세	0.3	0.2	0.2			
현원 (11~15명)	계	3.3	3.4	3.4	3	3	3
	0세	0.7	0.8	1	1	1	1
	0-1세	0.6	0.6	0.6	1	1	1
	1세	0.8	0.8	0.8	1	1	1
	1-2세	0.5	0.5	0.5		1	1
	2세	0.7	0.6	0.6	1	1	1
현원 (16명 이상)	계	4.1	4.2	4.3	4	4	4
	0세	1.1	1.2	1.3	1	1	1
	0-1세	0.5	0.4	0.4			
	1세	1.3	1.3	1.3	1	1	1
	1-2세	0.4	0.4	0.4			
	2세	0.9	0.9	0.9	1	1	1

가정어린이집의 월평균 보육교사수(원장 제외)는 현원규모가 클수록 보육교사 수가 많았고,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현원 0~10명은 3명, 현원 11~15명은 4명, 현원 16명 이상은 5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보육교사 가장 많은 곳은 2022 회계연도에 월평균 13명인 곳이 있었다.

〈표 IV-1-3〉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월평균 보육교사 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현원 (0~10명)	현원 (11~15명)	현원 (16명 이상)	계	현원 (0~10명)	현원 (11~15명)	현원 (16명 이상)	계	현원 (0~10명)	현원 (11~15명)	현원 (16명 이상)	계
0명	122	0	1	123	109	0	1	110	99	0	0	99
1명	514	13	5	532	486	9	3	498	312	5	3	320
2명	1,145	256	23	1,424	968	162	10	1,140	799	86	6	891
3명	1,058	1,719	378	3,155	1,006	1,239	231	2,476	912	909	111	1,932
4명	359	2,035	2,770	5,164	369	1,769	2,144	4,282	353	1,613	1,590	3,556
5명	57	677	2,733	3,467	66	778	2,740	3,584	71	733	2,559	3,363
6명	13	129	855	997	22	146	932	1,100	10	165	1,042	1217
7명	2	51	184	237	3	43	213	259	5	46	268	319
8명	0	21	80	101	1	19	84	104	1	16	115	132
9명	1	4	21	26	0	5	54	59	0	10	63	73
10명	0	1	11	12	0	2	20	22	0	0	20	20
11명	0	0	4	4	0	0	5	5	0	0	7	7
12명	0	0	4	4	0	0	4	4	0	0	2	2
13명	0	0	0	0	0	0	0	0	0	0	2	2
계	3,271	4,906	7,069	15,246	3,030	4,172	6,441	13,643	2,562	3,583	5,788	11,933

주: 월평균 보육교사 수 = 연간 보육교사 수 / 12를 반올림한 값임.

조리원 배치기준은 영유아 4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조리원 배치가 의무가 아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일부 조리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살펴보았다.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중 조리원을 고용한 경우는 2020년 51.9%, 2021년 56.5%, 2022년 58.7%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현원 16명 이상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3년 조리원 배치비율이 62.1%, 65.9%, 67.9%로 다소 높았고 증가하는 추세였다.

〈표 IV-1-4〉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월평균 조리원 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조리원(1명)	비율	조리원(1명)	비율	조리원(1명)	비율
조리원 있음	현원(0~10명)	1,125	34.4	1,183	39.0	1,041	40.6
	현원(11~15명)	2,392	48.8	2,281	54.7	2,037	56.9
	현원(16명 이상)	4,389	62.1	4,246	65.9	3,929	67.9
	계	7,906	51.9	7,710	56.5	7,007	58.7
기관수		15,246	-	13,643	-	11,933	-

주: 1) 조리원(1명)에는 조리원이 2명인 어린이집이 2019년 6개소, 2020년 14개소, 2021년 16개소, 2022년 12개소가 포함되었음.

2) 월평균 조리원 수 = 연간 조리원 수 / 12를 반올림한 값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인건비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원장의 월평균 인건비는 현원 0~10명은 1,617천원, 현원 11~15명은 2,616천원, 현원 16명 이상은 3,532천원 수준이었다. 어린이집 인건비 세출자료에는 보육교사, 조리원,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 보육교직원별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는 크게 2가지로 산출하였다.

먼저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A)는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를 원장을 제외한 가정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직원 수로 나눈 값으로, 보육교사 이외에도 조리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B)는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를 원장을 제외한 가정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사 수로 나눈 값으로, 조리원 등이 제외되어 있고 보육교사에는 담임교사 이외에도 시간제보육교사나 영아반보조교사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에 실제 연령반 담임교사의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A)는 현원 0~10명은 1,436천원, 현원 11~15명은 1,537원, 현원 16명 이상은 1,589천원 수준이었고,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B)는 현원 0~10명은 1,859천원, 현원 11~15명은 1,850천원, 현원 16명 이상은 1,889천원 수준이었다.

〈표 IV-1-5〉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단위: 원

구분		원장			보육교직원 1인당(A) ¹⁾			보육교직원 1인당(B) ²⁾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10명)	인건비 계	1,360,247	1,434,906	1,617,095	1,388,445	1,398,451	1,435,758	1,721,990	1,783,521	1,859,113
	급여	1,317,492	1,391,963	1,566,257	1,375,642	1,383,749	1,422,082	1,705,344	1,765,117	1,841,410
	수당	42,755	42,943	50,838	12,803	14,702	13,676	16,646	18,405	17,703
현원 (11~15명)	인건비 계	2,222,968	2,389,401	2,616,027	1,445,229	1,469,678	1,537,038	1,716,546	1,764,159	1,849,912
	급여	2,146,900	2,308,829	2,523,100	1,429,789	1,452,626	1,518,311	1,698,053	1,743,586	1,827,293
	수당	76,068	80,572	92,927	15,440	17,052	18,727	18,493	20,573	22,619
현원 (16명 이상)	인건비 계	2,979,428	3,253,667	3,532,180	1,489,841	1,524,854	1,588,564	1,764,954	1,813,551	1,888,613
	급여	2,858,301	3,118,361	3,387,529	1,467,891	1,500,533	1,563,732	1,738,927	1,784,595	1,859,071
	수당	121,127	135,306	144,651	21,950	24,320	24,833	26,027	28,956	29,542

주: 1)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A)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직원(원장 제외) 수

2)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B)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사 수

3) 기관부담금(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제외한 금액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월평균 인건비를 각 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지급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최근 3년 모두 현원규모에 관계 없이 1호봉 미만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원장의 월평균 인건비는 현원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원 0~10명은 1호봉 미만인데, 현원 11~15명은 7호봉 수준, 현원 16명 이상은 20호봉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호봉환산

단위: 호봉

구분		원장			보육교직원 1인당(A) ¹⁾			보육교직원 1인당(B) ²⁾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10명)	인건비 계	<1	<1	<1	<1	<1	<1	<1	<1	<1
	급여	<1	<1	<1	<1	<1	<1	<1	<1	<1
	수당									
현원 (11~15명)	인건비 계	7	5	7	<1	<1	<1	<1	<1	<1
	급여	6	4	6	<1	<1	<1	<1	<1	<1
	수당									
현원 (16명 이상)	인건비 계	12	16	20	<1	<1	<1	<1	<1	<1
	급여	10	14	17	<1	<1	<1	<1	<1	<1
	수당									

주: 1)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A)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직원(원장 제외) 수

2)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B)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사 수

3) 기관부담금(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제외한 금액임.

4) '1'은 월평균 인건비가 1호봉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함.

가정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중 기관부담금(140) 실제 세출자료와 세출결산 자료의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월 인건비 추정액을 기반으로 기관부담금을 추정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기관부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이 있다. 기관부담금 중 4대보험 부담금은 2020년 9.96%, 2021년 10.08%, 2022년 10.17%이고, 퇴직적립금은 월보수액의 1/12을 적용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법정부담금은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으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표 IV-1-7〉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월평균 기관부담금 추정

단위: 원

구분		어린이집 세출자료 기관부담금			원장+보육교직원 기관부담금 추정 ¹⁾			비교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10명)	기관부담금 계	851,992	974,899	996,043	953,228	1,014,489	1,108,265	101,236	39,590	112,222
	법정부담금	511,061	622,348	636,549	518,920	555,240	611,652	7,859	-67,108	-24,897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40,931	352,551	359,494	434,308	459,249	501,001	93,377	106,698	141,507
현원 (11~15명)	기관부담금 계	1,263,653	1,486,358	1,559,033	1,549,532	1,663,175	1,808,293	285,879	176,817	249,260
	법정부담금	724,420	911,278	942,600	843,537	910,272	998,016	119,117	-1,006	55,416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39,233	575,079	616,433	705,995	752,903	817,469	166,762	177,824	201,036
현원 (16명 이상)	기관부담금 계	1,574,783	1,848,864	1,947,602	2,001,492	2,157,530	2,339,645	426,709	308,666	392,043
	법정부담금	874,178	1,104,686	1,153,637	1,089,576	1,180,837	1,291,207	215,398	76,151	137,57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700,605	744,178	793,965	911,916	976,693	1,057,621	211,311	232,515	263,656

주: 1) 기관부담금은 급여와 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산함.

2) 기관부담금: 2020년 18.29%, 2021년 18.41%, 2022년 18.51% 적용(법정부담금 2020년 9.96%, 2021년 10.08%, 2022년 10.17%, 퇴직적립금 월보수액 1/12)

2.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2020~2022년 민간어린이집 현원규모를 보면 현원이 50명 이하 중소규모인 비율이 2020년 64.7%, 2021년 65.4%, 2022년 67.1%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70명 이하 규모 비율은 2022년의 80.6%이다. 민간어린이집도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수 감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V-2-1〉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현원규모별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원(0~20명)	1,738	15.4	1,694	16.3	1,702	17.8
현원(21~30명)	2,347	20.8	2,149	20.6	1,995	20.8
현원(31~40명)	1,878	16.7	1,780	17.1	1,668	17.4
현원(41~50명)	1,333	11.8	1,190	11.4	1,065	11.1
현원(51~60명)	846	7.5	817	7.8	693	7.2
현원(61~70명)	713	6.3	644	6.2	602	6.3
현원(71~80명)	563	5.0	509	4.9	473	4.9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원(81~90명)	515	4.6	431	4.1	373	3.9
현원(91~100명)	373	3.3	307	2.9	261	2.7
현원(101~110명)	161	1.4	177	1.7	151	1.6
현원(111명 이상)	809	7.2	729	7.0	589	6.2
계	11,276	100.0	10,427	100.0	9,572	100.0

민간어린이집 반 구성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현원 0~20명인 경우 평균 반 수는 3개, 현원 21~30명은 5개, 현원 31~40명은 6개였으며 영아반 중심으로 개설되는 경향이 컸다. 규모가 작을수록 혼합연령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현원 41명 이상인 경우부터 3세반을 비롯한 유아반 편성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원이 111명 이상으로 규모가 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022년에 평균 14개 반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월평균 반 구성 현황

단위: 개

구분		월평균 반수(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월평균 반수(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20명)	계	3.2	3.3	3.4	3	3	3
	0세	0.4	0.5	0.6			1
	01세	0.5	0.5	0.6	1	1	1
	1세	0.6	0.6	0.6	1	1	1
	12세	0.6	0.6	0.5	1	1	1
	2세	0.7	0.6	0.6	1	1	1
	23세						
	3세	0.1	0.1				
	34세	0.3	0.3	0.3			
	4세						
	45세						
	5세						
	누리장애아반						
	장애중일반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현원 (21~30명)	계	4.7	4.7	5	5	5	5
	0세	0.7	0.7	0.9	1	1	1
	01세	0.5	0.5	0.5			
	1세	1.2	1.2	1.2	1	1	1
	12세	0.5	0.5	0.4			

구분		월평균 반수(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월평균 반수(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세	1.3	1.2	1.2	1	1	1
	23세						
	3세	0.2	0.2	0.1			
	34세	0.4	0.4	0.4			
	4세						
	45세	0.1	0.1	0.1			
	5세						
	누리장애아반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현원 (31~40명)	계	5.8	5.9	6.2	6	6	6
	0세	0.7	0.8	1	1	1	1
	01세	0.4	0.4	0.4			
	1세	1.6	1.6	1.6	2	2	2
	12세	0.4	0.4	0.4			
	2세	1.7	1.6	1.6	2	2	2
	23세						
	3세	0.4	0.3	0.3			
	34세	0.4	0.4	0.4			
	4세						
	45세	0.2	0.3	0.2			
	5세						
	누리장애아반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현원 (41~50명)	계	6.6	6.7	7	7	7	7
	0세	0.6	0.7	1	1	1	1
	01세	0.3	0.4	0.4			
	1세	1.8	1.8	1.9	2	2	2
	12세	0.3	0.4	0.3			
	2세	2.1	2	2	2	2	2
	23세						
	3세	0.6	0.5	0.5	1	1	1
	34세	0.3	0.3	0.3			
	4세	0.1	0.1	0.1			
	45세	0.4	0.4	0.4			
	5세	0.1	0.1	0.1			
	누리장애아반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구분		월평균 반수(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월평균 반수(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51~60명)	계	7.2	7.3	7.7	7	7	8
	0세	0.5	0.6	0.9		1	1
	01세	0.3	0.3	0.3			
	1세	1.7	1.8	1.8	2	2	2
	12세	0.4	0.4	0.4			
	2세	2.2	2.1	2.2	2	2	2
	23세						
	3세	0.8	0.8	0.7	1	1	1
	34세	0.3	0.3	0.3			
	4세	0.2	0.3	0.3			
	45세	0.5	0.5	0.5	1	1	
	5세	0.2	0.3	0.3			
	누리장애아반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현원 (61~70명)	방과후반						
	계	7.7	7.9	8.1	8	8	8
	0세	0.4	0.6	0.7		1	1
	01세	0.3	0.3	0.3			
	1세	1.7	1.7	1.8	2	2	2
	12세	0.4	0.4	0.4			
	2세	2.3	2.2	2.3	2	2	2
	23세						
	3세	1	1	0.9	1	1	1
	34세	0.3	0.2	0.3			
	4세	0.4	0.5	0.4			
	45세	0.6	0.5	0.5	1	1	
	5세	0.4	0.5	0.5			
	누리장애아반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현원 (71~80명)	방과후반						
	계	8.3	8.4	8.7	8	8	9
	0세	0.4	0.5	0.6			1
	01세	0.2	0.3	0.3			
	1세	1.6	1.6	1.7	2	2	2
	12세	0.4	0.4	0.4			
	2세	2.4	2.3	2.5	2	2	2
	23세						
	3세	1.3	1.2	1.2	1	1	1
	34세	0.3	0.2	0.2			
	4세	0.6	0.6	0.6	1	1	1
	45세	0.6	0.6	0.4	1	1	
	5세	0.5	0.6	0.7		1	1

구분		월평균 반수(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월평균 반수(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누리장애아반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현원 (81~90명)	계	9.1	9.2	9.7	9	9	1
	0세	0.4	0.4	0.5			1
	01세	0.3	0.3	0.3			
	1세	1.7	1.8	1.9	2	2	2
	12세	0.4	0.3	0.4			
	2세	2.6	2.6	2.7	3	3	3
	23세						
	3세	1.5	1.4	1.4	2	1	1
	34세	0.3	0.3	0.2			
	4세	0.7	0.8	0.8	1	1	1
	45세	0.6	0.6	0.5	1	1	
	5세	0.6	0.7	0.8	1	1	1
	누리장애아반	0.1	0.1	0.1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현원 (91~100명)	계	9.4	9.6	1	9	10	1
	0세	0.3	0.4	0.5			
	01세	0.2	0.3	0.3			
	1세	1.6	1.7	1.8	2	2	2
	12세	0.3	0.3	0.3			
	2세	2.6	2.6	2.8	3	3	3
	23세						
	3세	1.8	1.6	1.6	2	2	2
	34세	0.2	0.3	0.2			
	4세	0.9	0.9	0.9	1	1	1
	45세	0.7	0.6	0.6	1	1	1
	5세	0.8	0.9	1	1	1	1
	누리장애아반		0.1	0.1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현원 (101~110명)	계	10.4	10.5	11	10	10	11
	0세	0.2	0.4	0.6			1
	01세	0.2	0.3	0.3			
	1세	1.7	1.6	2	2	2	2
	12세	0.4	0.4	0.2			
	2세	3	2.9	3.1	3	3	3
	23세						
	3세	1.9	1.8	1.8	2	2	2
	34세	0.3	0.3	0.2			

구분		월평균 반수(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월평균 반수(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4세	1	1	1.1	1	1	1
	45세	0.7	0.7	0.6	1	1	1
	5세	0.9	1	1.2	1	1	1
	누리장애아반	0.1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현원 (111명 이상)	계	12.9	13.2	13.5	13	13	14
	0세	0.2	0.3	0.4			
	01세	0.1	0.1	0.2			
	1세	1.6	1.7	1.9	2	2	2
	12세	0.2	0.3	0.2			
	2세	3.6	3.6	3.8	4	4	4
	23세						
	3세	2.9	2.8	2.7	3	3	3
	34세	0.2	0.1	0.1			
	4세	1.7	1.7	1.7	2	2	2
	45세	0.8	0.7	0.6	1	1	1
	5세	1.6	1.7	1.7	2	2	2
	누리장애아반	0.1	0.1	0.1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민간어린이집의 월평균 보육교사수(원장 제외)는 현원규모가 클수록 반 편성 규모와 맞물려 보육교사 수가 많았고,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현원 0~20명인 경우 보육교사는 4명이 가장 많았고, 현원 21~30명은 6명, 현원 31~40명은 8명, 현원 41~50명 9~10명, 현원 51~60명 9~10명, 현원 61~70명은 9명, 현원 71~80명 12명, 현원 81~90명은 12명, 현원 91~100명은 14명, 현원 101~110명은 14명, 현원 111명 이상은 16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보육교사가 가장 많은 곳은 2022 회계연도에 월평균 33명인 곳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육교사 수는 5~9명이 많았고, 전체 9,572개소 중 4,984개소로 52.1%를 차지하였다.

〈표 IV-2-3〉 민간어린이집 월평균 보육교사 수 현황(2022년)

단위: 개소

구분	현원 (0~ 20명)	현원 (21~ 30명)	현원 (31~ 40명)	현원 (41~ 50명)	현원 (51~ 60명)	현원 (61~ 70명)	현원 (71~ 80명)	현원 (81~ 90명)	현원 (91~ 100명)	현원 (101~ 110명)	현원 (111명 이상)	합계
0명	12											12
1명	84											84
2명	173	7	3									183
3명	323	46	5	1								375
4명	459	148	24	6		1						638
5명	377	336	97	30	3	4						847
6명	185	543	224	82	21	7	3					1,065
7명	69	516	356	154	41	27	5	2				1,170
8명	15	274	405	174	97	46	17	9	3	1		1,041
9명	4	92	280	178	123	110	52	12	5	1	4	861
10명	1	23	163	178	123	108	58	35	16	5	4	714
11명		8	73	147	97	88	80	41	23	6	9	572
12명			20	65	70	73	86	67	36	8	11	436
13명		1	9	31	57	51	64	60	33	22	39	367
14명		1	4	11	32	40	39	46	42	25	41	281
15명			2	8	17	23	34	39	32	24	51	230
16명			1		9	15	15	21	32	21	65	179
17명			1		3	3	13	14	18	10	60	122
18명			1			3	5	9	8	10	40	76
19명							1	8	4	8	51	72
20명						3		6	5	2	45	61
21명								3	2	2	35	42
22명							1			4	28	33
23명									1	1	26	28
24명									1	1	15	17
25명								1			19	20
26명											15	15
27명											6	6
28명											5	5
29명											4	4
30명											2	2
31명											3	3
32명											1	1
33명											2	2
34명											3	3
35명											2	2
36명											1	1
39명											1	1
53명											1	1
합계	1,702	1,995	1,668	1,065	693	602	473	373	261	151	589	9,572

주: 월평균 보육교사 수 = 연간 보육교사 수 / 12를 반올림한 값임.

민간어린이집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인건비는 증가하였고, 현원규모가 클수록 원장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B)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A)는 경향성을 찾지 못했다. 현원규모별 원장의 인건비 격차가 보육교사 인건비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원장의 월평균 인건비는 현원이 중소규모인 0~20명은 1,638천원, 현원 21~30명은 2,562천원, 현원 31~40명은 3,178천원, 현원 41~50명은 3,573천원 수준이었는데, 상대적으로 현원규모가 큰 101~110명은 4,952천원, 현원 110명 이상은 5,639천원으로 나타나 민간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원장 인건비에 큰 차이를 보였다.

2022년 기준으로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A)는 현원 0~20명은 1,548천원, 현원 21~30명은 1,650천원, 현원 31~40명은 1,696천원, 현원 41~50명은 1,734천원 수준이었으며, 현원 101~110명은 1,732원, 현원 110명 이상은 1,774천원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B)는 현원 0~20명은 1,933천원, 현원 21~30명은 1,975천원, 현원 31~40명은 2,023천원, 현원 41~50명은 2,073천원이었고, 현원 101~110명은 2,233천원, 현원 110명 이상은 2,338천원이었다. 현원규모별 원장 월평균 인건비 격차에 비해 보육교직원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IV-2-4〉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단위: 원

구분		원장			보육교직원 1인당(A) ¹⁾			보육교직원 1인당(B) ²⁾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20명)	인건비 계	1,286,738	1,366,026	1,638,156	1,470,228	1,502,550	1,547,568	1,807,162	1,871,993	1,933,342
	급여	1,244,376	1,330,781	1,591,594	1,456,478	1,487,252	1,531,174	1,789,345	1,852,327	1,912,289
	수당	42,361	35,245	46,562	13,749	15,298	16,394	17,817	19,666	21,053
현원 (21~30명)	인건비 계	2,173,489	2,331,518	2,561,528	1,559,577	1,584,318	1,649,704	1,861,237	1,903,045	1,975,033
	급여	2,095,335	2,243,009	2,468,994	1,541,648	1,563,473	1,628,688	1,839,132	1,877,501	1,949,313
	수당	78,154	88,510	92,533	17,928	20,845	21,015	22,105	25,545	25,720
현원 (31~40명)	인건비 계	2,731,824	2,889,407	3,178,178	1,600,994	1,631,477	1,696,124	1,922,997	1,961,147	2,023,614
	급여	2,621,995	2,771,486	3,055,958	1,578,133	1,607,303	1,670,935	1,894,696	1,931,518	1,993,152
	수당	109,829	117,921	122,220	22,861	24,174	25,189	28,301	29,629	30,461
현원 (41~50명)	인건비 계	3,121,523	3,357,030	3,573,462	1,631,469	1,662,540	1,734,363	1,962,972	1,996,401	2,073,373
	급여	2,977,743	3,196,848	3,398,773	1,604,800	1,633,276	1,704,449	1,930,574	1,961,173	2,037,284
	수당	143,780	160,182	174,688	26,668	29,264	29,914	32,399	35,228	36,090

구분		원장			보육교직원 1인당(A) ¹⁾			보육교직원 1인당(B) ²⁾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51~60명)	인건비 계	3,382,846	3,586,126	3,850,009	1,635,632	1,672,277	1,739,596	1,978,303	2,024,333	2,086,055
	급여	3,220,137	3,433,465	3,666,713	1,606,937	1,638,990	1,706,076	1,943,397	1,983,563	2,045,798
	수당	162,710	152,661	183,296	28,694	33,287	33,519	34,906	40,770	40,257
현원 (61~70명)	인건비 계	3,644,517	3,984,170	4,129,581	1,648,411	1,690,613	1,748,218	2,004,836	2,053,854	2,122,531
	급여	3,448,419	3,751,824	3,890,973	1,612,017	1,650,470	1,709,041	1,960,182	2,005,102	2,074,946
	수당	196,098	232,346	238,608	36,393	40,143	39,177	44,654	48,753	47,585
현원 (71~80명)	인건비 계	3,737,807	4,185,022	4,427,695	1,639,211	1,687,163	1,760,492	2,017,251	2,086,523	2,181,574
	급여	3,512,754	3,947,222	4,179,813	1,601,883	1,642,435	1,715,429	1,971,192	2,030,609	2,125,096
	수당	225,053	237,801	247,882	37,327	44,728	45,063	46,059	55,914	56,477
현원 (81~90명)	인건비 계	4,143,503	4,392,945	4,720,512	1,609,349	1,658,833	1,731,022	2,046,347	2,104,075	2,187,615
	급여	3,905,237	4,182,333	4,502,701	1,571,877	1,616,509	1,687,624	1,998,455	2,049,667	2,132,831
	수당	238,266	210,612	217,810	37,472	42,324	43,398	47,892	54,409	54,783
현원 (91~100명)	인건비 계	4,218,188	4,561,313	4,796,442	1,609,549	1,658,521	1,740,782	2,069,443	2,121,149	2,232,946
	급여	4,005,810	4,311,767	4,545,986	1,571,299	1,614,399	1,692,112	2,019,337	2,064,628	2,170,571
	수당	212,377	249,546	250,456	38,251	44,122	48,670	50,106	56,521	62,375
현원 (101~110명)	인건비 계	4,194,952	4,672,988	4,951,635	1,592,472	1,660,900	1,732,440	2,082,677	2,177,510	2,284,982
	급여	3,984,386	4,382,178	4,655,610	1,552,913	1,610,908	1,678,853	2,030,570	2,110,823	2,213,967
	수당	210,566	290,810	296,025	39,558	49,991	53,588	52,108	66,687	71,015
현원 (111명 이상)	인건비 계	4,859,136	5,285,264	5,639,068	1,639,250	1,695,185	1,773,529	2,147,542	2,231,616	2,338,313
	급여	4,495,521	4,894,312	5,218,801	1,589,578	1,635,429	1,711,285	2,082,237	2,153,049	2,256,081
	수당	363,615	390,951	420,267	49,672	59,756	62,244	65,305	78,566	82,232

주: 1)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A)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직원(원장 제외) 수

2)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B)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사 수

3) 기관부담금(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제외한 금액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월평균 인건비를 호봉으로 환산해 보면, 원장은 현
원규모가 증가할수록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호봉수준이 급격히 올라가는 반면, 보
육교사의 호봉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2년 급여기준으로, 원장은 현원규모가 21~30명인 경우 5호봉, 현원 31~
40명은 13호봉, 현원 41~50명은 18호봉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현원규모가 71명
이상인 경우 30호봉 이상의 인건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민간어린이집에서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인건비(A)는 최근 3년
모두 현원규모에 관계없이 1호봉 미만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 인건비(B)를 기준으로 하면 현원 40인 이하인 경우 1호봉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현원 41명 이상 규모부터는 2022년 급여기준으로 평균
호봉이 2호봉부터 점차 높아져 8호봉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호봉환산

단위: 호봉

구분		원장			보육교직원 1인당(A) ¹⁾			보육교직원 1인당(B) ²⁾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20명)	인건비 계	<1	<1	<1	<1	<1	<1	<1	<1	<1
	급여	<1	<1	<1	<1	<1	<1	<1	<1	<1
	수당									
현원 (21~30명)	인건비 계	2	4	6	<1	<1	<1	<1	<1	<1
	급여	<1	3	5	<1	<1	<1	<1	<1	<1
	수당									
현원 (31~40명)	인건비 계	9	11	14	<1	<1	<1	1	1	1
	급여	7	9	13	<1	<1	<1	<1	<1	<1
	수당									
현원 (41~50명)	인건비 계	12	17	20	<1	<1	<1	2	2	3
	급여	12	15	18	<1	<1	<1	1	1	2
	수당									
현원 (51~60명)	인건비 계	18	20	24	<1	<1	<1	2	3	4
	급여	15	18	21	<1	<1	<1	1	2	2
	수당									
현원 (61~70명)	인건비 계	21	27	29	<1	<1	<1	3	3	4
	급여	19	23	25	<1	<1	<1	2	2	3
	수당									
현원 (71~80명)	인건비 계	23	30	30	<1	<1	<1	3	4	5
	급여	20	26	30	<1	<1	<1	2	3	5
	수당									
현원 (81~90명)	인건비 계	30	30	30	<1	<1	<1	4	5	6
	급여	26	30	30	<1	<1	<1	3	3	5
	수당									
현원 (91~100명)	인건비 계	30	30	30	<1	<1	<1	4	5	7
	급여	27	30	30	<1	<1	<1	3	4	5
	수당									
현원 (101~110명)	인건비 계	30	30	30	<1	<1	<1	5	6	8
	급여	27	30	30	<1	<1	<1	3	5	6
	수당									
현원 (111명 이상)	인건비 계	30	30	30	<1	<1	<1	6	7	9
	급여	30	30	30	<1	<1	<1	5	5	7
	수당									

주: 1)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A)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직원(원장 제외) 수

2)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B)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사 수

3) 기관부담금(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제외한 금액임.

4) '1'은 월평균 인건비가 1호봉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고, '30'은 인건비가 30호봉 이상임을 의미함.

민간어린이집 세출자료 중 기관부담금과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월 인건비 추정액을 기반으로 기관부담금을 추정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법정부담금은 가정어린이집과 유사하게 법정부담금은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으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표 IV-2-6〉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월평균 기관부담금 추정

단위: 원

구분		어린이집 세출자료 기관부담금			원장+보육교직원 기관부담금 추정 ¹⁾			비교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20명)	기관부담금 계	1,350,038	1,546,991	1,594,380	1,491,690	1,583,842	1,722,032	141,652	36,851	127,652
	법정부담금	805,193	961,219	986,600	812,049	866,852	946,642	6,856	-94,367	-39,958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544,846	585,773	607,780	679,641	716,990	775,389	134,795	131,217	167,609
현원 (21~30명)	기관부담금 계	2,014,690	2,336,088	2,492,394	2,334,368	2,491,471	2,759,820	319,678	155,383	267,426
	법정부담금	1,129,267	1,395,802	1,476,207	1,270,788	1,363,606	1,517,139	141,521	-32,196	40,93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885,423	940,286	1,016,187	1,063,580	1,127,864	1,242,680	178,157	187,578	226,493
현원 (31~40명)	기관부담금 계	2,529,734	2,921,245	3,121,730	2,941,673	3,167,925	3,491,353	411,939	246,680	369,623
	법정부담금	1,393,803	1,709,731	1,832,687	1,601,394	1,733,836	1,919,281	207,591	24,105	86,59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35,932	1,211,513	1,289,043	1,340,280	1,434,089	1,572,072	204,348	222,576	283,029
현원 (41~50명)	기관부담금 계	3,053,687	3,433,195	3,662,836	3,456,191	3,702,277	4,068,751	402,504	269,082	405,915
	법정부담금	1,689,349	2,012,218	2,107,287	1,881,488	2,026,293	2,236,690	192,139	14,075	129,403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364,338	1,420,977	1,555,549	1,574,703	1,675,984	1,832,061	210,365	255,007	276,512
현원 (51~60명)	기관부담금 계	3,491,875	3,835,321	4,122,147	3,893,761	4,171,242	4,603,169	401,886	335,921	481,022
	법정부담금	1,912,892	2,205,364	2,374,669	2,119,693	2,282,961	2,530,473	206,801	77,597	155,80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578,983	1,629,957	1,747,478	1,774,068	1,888,280	2,072,696	195,085	258,323	325,218
현원 (61~70명)	기관부담금 계	3,893,344	4,232,361	4,530,468	4,311,397	4,622,200	4,962,564	418,053	389,839	432,096
	법정부담금	2,198,038	2,457,863	2,581,673	2,347,046	2,529,775	2,728,041	149,008	71,912	146,368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695,306	1,774,498	1,948,795	1,964,351	2,092,425	2,234,523	269,045	317,927	285,728
현원 (71~80명)	기관부담금 계	4,297,953	4,627,450	4,974,479	4,667,635	5,060,284	5,546,332	369,682	432,834	571,853
	법정부담금	2,374,046	2,627,532	2,824,731	2,540,976	2,769,543	3,048,952	166,930	142,011	224,221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923,908	1,999,918	2,149,749	2,126,659	2,290,741	2,497,380	202,751	290,823	347,631
현원 (81~90명)	기관부담금 계	4,757,830	5,193,032	5,523,291	5,242,837	5,578,983	6,136,703	485,007	385,951	613,412
	법정부담금	2,612,622	2,943,602	3,088,111	2,854,105	3,053,432	3,373,493	241,483	109,830	285,38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145,208	2,249,430	2,435,180	2,388,732	2,525,551	2,763,210	243,524	276,121	328,030

구분		어린이집 세출자료 기관부담금			원장+보육교직원 기관부담금 추정 ¹⁾			비교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91~100명)	기관부담금 계	4,941,157	5,542,235	6,109,001	5,522,233	5,960,553	6,581,569	581,076	418,318	472,568
	법정부담금	2,772,739	3,129,715	3,391,591	3,006,204	3,262,269	3,618,047	233,465	132,554	226,456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168,418	2,412,520	2,717,410	2,516,029	2,698,284	2,963,522	347,611	285,764	246,112
현원 (101~110명)	기관부담금 계	5,478,739	6,100,525	6,544,739	6,125,420	6,619,654	7,231,981	646,681	519,129	687,242
	법정부담금	3,024,494	3,402,135	3,617,089	3,334,567	3,623,002	3,975,594	310,073	220,867	358,50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454,245	2,698,390	2,927,650	2,790,852	2,996,652	3,256,387	336,607	298,262	328,737
현원 (111명 이상)	기관부담금 계	7,338,474	7,853,417	8,400,059	7,780,745	8,306,940	9,011,472	442,271	453,523	611,413
	법정부담금	3,896,934	4,317,015	4,528,091	4,235,697	4,546,470	4,953,823	338,763	229,455	425,73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441,540	3,536,402	3,871,968	3,545,049	3,760,470	4,057,649	103,509	224,068	185,681

주: 1) 기관부담금은 급여와 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산함.

2) 기관부담금: 2020년 18.29%, 2021년 18.41%, 2022년 18.51% 적용(법정부담금 2020년 9.96%, 2021년 10.08%, 2022년 10.17%, 퇴직적립금 월보수액 1/12)

3.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국공립어린이집 현원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50인 이하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2020년 53.9%, 2021년 57.3%, 2022년 62.4%로 현원규모가 중소규모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현원 80명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90.1%였다.

〈표 IV-3-1〉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현원규모별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원(0~20명)	629	13.9	697	13.6	973	16.8
현원(21~30명)	591	13.1	738	14.4	916	15.8
현원(31~40명)	610	13.5	787	15.4	910	15.7
현원(41~50명)	606	13.4	709	13.9	806	13.9
현원(51~60명)	430	9.5	524	10.3	639	11.1
현원(61~70명)	511	11.3	540	10.6	553	9.6
현원(71~80명)	455	10.0	458	9.0	414	7.2
현원(81~90명)	268	5.9	264	5.2	237	4.1
현원(91~100명)	161	3.6	155	3.0	132	2.3
현원(101~110명)	56	1.2	58	1.1	50	0.9
현원(111명 이상)	213	4.7	183	3.6	152	2.6
계	4,530	100.0	5,113	100.0	5,782	100.0

국공립어린이집 반 구성현황을 보면, 현원이 0~20명인 경우는 평균 4개반으로 단일연령반 비율이 다소 높았고, 0-1세 혼합연령반과 1-2세 혼합연령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원이 40명 이하인 경우 유아반보다는 영아반 중심으로 반을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원규모가 61명 이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0세반부터 5세반까지 모든 연령에 대한 단일연령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월평균 반 구성 현황

단위: 개

구분		월평균 반수(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월평균 반수(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20명)	계	4.4	4.3	3.8	4	4	4
	0세	1.1	1	1.1	1	1	1
	01세	0.4	0.5	0.4			
	1세	1.2	1.1	1	1	1	1
	12세	0.5	0.5	0.4	1	1	
	2세	0.9	0.8	0.7	1	1	1
	23세						
	3세						
	34세	0.1	0.1	0.1			
	4세						
	45세						
	5세						
	누리장애아반	0.1	0.1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현원 (21~30명)	계	5.1	5.2	5.3	5	5	5
	0세	0.8	0.9	1.1	1	1	1
	01세	0.3	0.3	0.3			
	1세	1.6	1.7	1.6	2	2	2
	12세	0.3	0.3	0.3			
	2세	1.5	1.4	1.5	1	1	1
	23세						
	3세	0.1	0.1	0.1			
	34세	0.3	0.3	0.3			
	4세						
	45세						
	5세						
	누리장애아반	0.1	0.1	0.1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구분		월평균 반수(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월평균 반수(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31~40명)	계	6.1	6.3	6.5	6	6	7
	0세	0.8	0.9	1.2	1	1	1
	01세	0.2	0.2	0.2			
	1세	2	2	2.1	2	2	2
	12세	0.2	0.2	0.2			
	2세	1.8	1.8	1.8	2	2	2
	23세						
	3세	0.5	0.4	0.4			
	34세	0.3	0.3	0.3			
	4세						
	45세	0.2	0.2	0.2			
	5세						
	누리장애아반	0.2	0.2	0.2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0.1					
현원 (41~50명)	계	6.7	6.8	7.2	7	7	7
	0세	0.8	0.8	1	1	1	1
	01세	0.2	0.2	0.2			
	1세	1.8	1.9	2.1	2	2	2
	12세	0.2	0.1	0.1			
	2세	1.9	1.9	2	2	2	2
	23세						
	3세	0.7	0.7	0.6	1	1	1
	34세	0.3	0.3	0.3			
	4세		0.1	0.1			
	45세	0.4	0.4	0.4			
	5세		0.1	0.1			
	누리장애아반	0.2	0.2	0.3			
	장애종일반			0.1			
	장애방과후반						
현원 (51~60명)	계	7	7.3	7.7	7	7	8
	0세	0.5	0.6	0.8		1	1
	01세	0.1	0.1	0.1			
	1세	1.7	1.8	2	2	2	2
	12세	0.1	0.1	0.1			
	2세	2	2.1	2.2	2	2	2
	23세						
	3세	0.9	0.9	0.9	1	1	1
	34세	0.2	0.2	0.2			
	4세	0.2	0.3	0.3			
	45세	0.6	0.6	0.5	1	1	1
	5세	0.2	0.3	0.3			

구분		월평균 반수(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월평균 반수(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누리장애아반	0.2	0.3	0.3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현원 (61~70명)	계	7.5	7.8	8.2	8	8	8
	0세	0.4	0.5	0.7		1	1
	01세	0.1	0.1	0.1			
	1세	1.6	1.7	1.8	2	2	2
	12세	0.1	0.1	0.1			
	2세	2.1	2.1	2.1	2	2	2
	23세						
	3세	1	1	1	1	1	1
	34세	0.1	0.1	0.1			
	4세	0.6	0.6	0.6	1	1	1
	45세	0.4	0.4	0.3			
	5세	0.6	0.6	0.6	1	1	1
	누리장애아반	0.4	0.4	0.5			1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현원 (71~80명)	계	8.1	8.5	8.8	8	8	9
	0세	0.5	0.6	0.7		1	1
	01세	0.1	0.1	0.1			
	1세	1.9	1.9	2	2	2	2
	12세	0.1	0.1	0.1			
	2세	2.1	2.1	2.2	2	2	2
	23세						
	3세	1.1	1.1	1.1	1	1	1
	34세	0.1	0.1	0.1			
	4세	0.7	0.8	0.8	1	1	1
	45세	0.4	0.3	0.2			
	5세	0.8	0.8	0.8	1	1	1
	누리장애아반	0.5	0.6	0.6		1	1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현원 (81~90명)	계	9.5	9.7	10	10	10	10
	0세	0.8	1	1.1	1	1	1
	01세			0.1			
	1세	2.1	2.1	2.2	2	2	2
	12세	0.1	0.1				
	2세	2.3	2.3	2.4	2	2	2
	23세						
	3세	1.3	1.3	1.4	1	1	1

구분		월평균 반수(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월평균 반수(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34세	0.1	0.1				
	4세	0.9	0.9	0.9	1	1	1
	45세	0.2	0.2	0.2			
	5세	0.9	0.9	0.9	1	1	1
	누리장애아반	0.8	0.7	0.8	1	1	1
	장애종일반						
	장애방과후반						
현원 (91~100명)	방과후반						
	계	10.3	10.6	11	10	11	11
	0세	0.9	0.9	1.1	1	1	1
	01세						
	1세	2.2	2.2	2.4	2	2	2
	12세	0.1	0.1				
	2세	2.5	2.6	2.7	3	3	3
	23세						
	3세	1.4	1.5	1.5	1	2	2
	34세	0.1	0.1				
	4세	1	1	1	1	1	1
	45세	0.2	0.2	0.2			
	5세	1	1.1	1.1	1	1	1
	누리장애아반	0.7	0.8	0.8	1	1	1
	장애종일반		0.1				
	장애방과후반				3088		
	방과후반						
현원 (101~110명)	계	12	11.8	12.5	12	12	12
	0세	0.8	1	1	1	1	1
	01세	0.1		0.1			
	1세	2.5	2.3	2.5	3	2	3
	12세			0.1			
	2세	3	2.7	3	3	3	3
	23세						
	3세	1.8	1.7	1.6	2	2	2
	34세	0.1		0.1			
	4세	1	1.2	1.1	1	1	1
	45세	0.4	0.5	0.3		1	
	5세	1.1	1.2	1.3	1	1	1
	누리장애아반	1.1	1.1	1.3	1	1	1
	장애종일반			0.1			
	장애방과후반			0.1			
	방과후반						
현원 (111명 이상)	계	13.7	14.1	14.5	14	14	14
	0세	0.9	0.9	1.3	1	1	1
	01세			0.1			
	1세	2.5	2.5	2.6	2	3	3

구분		월평균 반수(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월평균 반수(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12세						
	2세	3.2	3.2	3.2	3	3	3
	23세						
	3세	2	2.1	2.1	2	2	2
	34세						
	4세	1.6	1.7	1.7	2	2	2
	45세	0.4	0.3	0.2			
	5세	1.8	1.8	1.8	2	2	2
	누리장애아반	1.2	1.3	1.4	1	1	1
	장애종일반	0.1					
	장애방과후반						
	방과후반						

국공립어린이집의 월평균 보육교사수(원장 제외)는 현원규모가 클수록 보육교사 수가 증가하였고, 2022년 기준으로 보육교사 수는 6~10명이 전체 5,782개소 중 3,088개소로 53.4%를 차지하였고, 보육교사가 가장 많은 곳은 월평균 37명인 곳 이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현원 0~20명인 경우 보육교사는 5명이 가장 많았고, 현원 21~30명은 7명, 현원 31~40명은 8명, 현원 41~50명 9명, 현원 51~60명 10명, 현원 61~70명은 11명, 현원 71~80명 11~12명, 현원 81~90명은 13명, 현원 91~100명은 15명, 현원 101~110명은 17명, 현원 111명 이상은 2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IV-3-3〉 국공립어린이집 월평균 보육교사 수 현황(2022년)

단위: 개소

구분	현원 (0~ 20명)	현원 (21~ 30명)	현원 (31~ 40명)	현원 (41~ 50명)	현원 (51~ 60명)	현원 (61~ 70명)	현원 (71~ 80명)	현원 (81~ 90명)	현원 (91~ 100명)	현원 (101~ 110명)	현원 (111명 이상)	합계
0명	17											17
1명	82											82
2명	89	2	1									92
3명	86	8	3		1							98
4명	122	39	3		1							165
5명	198	80	26		1							305
6명	276	190	84	27	5	2						584
7명	74	248	149	84	27	10						592
8명	20	200	189	122	68	27	2	1				629
9명	7	108	192	171	92	68	15	4	1			658

구분	현원 (0~ 20명)	현원 (21~ 30명)	현원 (31~ 40명)	현원 (41~ 50명)	현원 (51~ 60명)	현원 (61~ 70명)	현원 (71~ 80명)	현원 (81~ 90명)	현원 (91~ 100명)	현원 (101~ 110명)	현원 (111명 이상)	합계
10명	1	32	149	149	131	84	63	13	2	1		625
11명		6	74	111	122	112	70	24	9			528
12명	1	1	24	75	88	92	70	30	13	2	3	399
13명		1	11	38	46	66	68	35	13	4	4	286
14명		1	2	16	37	44	43	30	11	1	7	192
15명			3	8	11	16	39	38	24	6	10	155
16명				1	6	17	17	24	16	6	8	95
17명					1	7	11	18	12	10	12	71
18명				2	2	5	7	7	12	8	16	59
19명						1	5	5	11	2	12	36
20명				1		1	3	2	3	2	16	28
21명								1	3	4	20	28
22명							1	2	1		12	16
23명						1		2		1	4	8
24명				1				1		1	5	8
25명									1	2	4	7
26명											6	6
27명											3	3
29명											3	3
30명											1	1
32명											4	4
33명											1	1
37명											1	1
합계	973	916	910	806	639	553	414	237	132	50	152	5,782

주: 월평균 보육교사 수 = 연간 보육교사 수 / 12를 반올림한 값임.

국공립어린이집 최근 3년간 월평균 인건비는 증가하였고, 현원규모가 클수록 원장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B)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차이는 원장인건비의 현원규모별 차이에 비해 크지 않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보육교직원 월평균 인건비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2년 기준으로 원장의 월평균 인건비는 현원이 중소규모인 0~20명은 3,256천원, 현원 21~30명은 3,902천원, 현원 31~40명은 3,899천원, 현원 41~50명은 4,003천원 수준이었었는데, 상대적으로 현원규모가 큰 101~110명은 4,236천원, 현원 110명 이상은 4,232천원으로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이 많을수록 원장인건비의 격차가 상당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그 격차가 작았고, 오히려 현원규모가 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오히려 민간어린이집 원장보다 월평균 인건비가 더 적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A)는 현원 0~20명은 2,045천원, 현원 21~30명은 2,096천원, 현원 31~40명은 2,104천원, 현원 41~50명은 2,119천원 수준이었으며, 현원 101~110명은 2,031원, 현원 110명 이상은 2,071천원으로 현원규모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B)는 현원 0~20명은 2,653천원, 현원 21~30명은 2,583천원, 현원 31~40명은 2,532천원, 현원 41~50명은 2,510천원이었고, 현원 101~110명은 2,648천원, 현원 110명 이상은 2,682천원이었다. 현원규모별 원장 월평균 인건비 격차에 비해 보육교직원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IV-3-4〉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단위: 원

구분		원장			보육교직원 1인당 ¹⁾			보육교직원 1인당 ²⁾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20명)	인건비 계	3,646,342	3,766,918	3,255,816	1,946,619	1,990,896	2,045,189	2,632,276	2,687,321	2,653,078
	급여	3,226,821	3,342,929	2,914,263	1,879,423	1,917,717	1,979,998	2,538,376	2,590,102	2,569,062
	수당	419,521	423,989	341,553	67,196	73,179	65,191	93,899	97,219	84,016
현원 (21~30명)	인건비 계	3,766,868	3,811,077	3,801,912	2,019,896	2,044,514	2,096,481	2,506,539	2,524,224	2,582,527
	급여	3,373,139	3,412,654	3,415,087	1,946,461	1,968,481	2,016,128	2,413,728	2,430,255	2,483,626
	수당	393,730	398,423	386,824	73,435	76,033	80,353	92,812	93,969	98,901
현원 (31~40명)	인건비 계	3,816,781	3,862,423	3,899,116	2,020,426	2,064,078	2,104,304	2,455,576	2,471,975	2,532,089
	급여	3,389,044	3,449,682	3,475,331	1,938,555	1,977,296	2,013,319	2,355,374	2,368,576	2,423,307
	수당	427,736	412,742	423,785	81,871	86,782	90,985	100,202	103,399	108,782
현원 (41~50명)	인건비 계	3,914,516	3,967,820	4,002,541	2,010,209	2,059,297	2,119,322	2,449,572	2,473,683	2,509,917
	급여	3,456,904	3,523,400	3,538,485	1,927,329	1,968,782	2,024,389	2,347,504	2,364,879	2,397,759
	수당	457,612	444,420	464,056	82,881	90,516	94,933	102,068	108,804	112,159
현원 (51~60명)	인건비 계	3,935,761	3,943,283	4,024,320	1,995,958	2,036,008	2,095,929	2,382,639	2,468,870	2,510,522
	급여	3,451,358	3,485,331	3,539,116	1,909,003	1,943,343	1,997,373	2,278,230	2,357,434	2,392,900
	수당	484,403	457,952	485,204	86,954	92,664	98,556	104,409	111,436	117,622
현원 (61~70명)	인건비 계	3,969,694	4,014,834	4,125,593	1,984,221	2,034,950	2,086,937	2,393,660	2,437,797	2,484,019
	급여	3,471,780	3,506,356	3,581,800	1,897,529	1,934,795	1,979,633	2,287,540	2,318,005	2,356,410
	수당	497,914	508,478	543,793	86,692	100,155	107,305	106,120	119,793	127,608
현원 (71~80명)	인건비 계	4,070,472	4,107,945	4,183,712	1,990,945	2,025,072	2,079,835	2,421,384	2,467,359	2,511,574
	급여	3,520,075	3,566,734	3,610,420	1,895,355	1,924,907	1,973,369	2,304,794	2,345,078	2,382,704
	수당	550,396	541,211	573,292	95,590	100,165	106,466	116,591	122,282	128,870
현원 (81~90명)	인건비 계	4,064,617	4,098,476	4,201,190	1,998,226	2,046,916	2,097,730	2,497,882	2,529,536	2,578,654
	급여	3,523,879	3,544,310	3,617,269	1,903,811	1,946,438	1,992,209	2,378,512	2,405,315	2,448,532
	수당	540,737	554,167	583,922	94,416	100,478	105,521	119,370	124,221	130,122

구분		원장			보육교직원 1인당 ¹⁾			보육교직원 1인당 ²⁾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91~100명)	인건비 계	4,033,425	4,133,168	4,189,804	1,970,585	2,004,571	2,086,490	2,466,394	2,516,115	2,565,621
	급여	3,524,014	3,570,121	3,635,202	1,886,713	1,915,172	1,986,327	2,360,711	2,403,398	2,442,239
	수당	509,411	563,047	554,602	83,872	89,399	100,163	105,683	112,717	123,382
현원 (101~110명)	인건비 계	4,361,669	4,286,078	4,236,326	1,989,518	2,042,189	2,031,155	2,583,572	2,649,696	2,647,808
	급여	3,650,597	3,603,015	3,574,503	1,913,821	1,958,696	1,947,498	2,484,832	2,541,379	2,538,904
	수당	711,072	683,063	661,823	75,696	83,493	83,657	98,739	108,316	108,904
현원 (111명 이상)	인건비 계	4,144,293	4,207,698	4,232,970	1,975,703	2,012,921	2,070,759	2,552,844	2,604,750	2,681,743
	급여	3,521,501	3,538,851	3,535,739	1,889,315	1,923,901	1,974,211	2,440,823	2,489,406	2,556,691
	수당	622,793	668,847	697,231	86,388	89,020	96,548	112,021	115,344	125,052

주: 1)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직원(원장 제외) 수

2)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사 수

3) 기관부담금(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제외한 금액임.

어린이집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추정액을 호봉으로 환산한 결과, 보육교사(B)는 ‘인건비 계’와 ‘급여’간 호봉차이가 1~2호봉이 거의 대부분인 반면, 원장은 ‘인건비 계’와 ‘급여’간 호봉차이가 6~10호봉 수준으로, 원장이 보육교사에 비해 기본급 이외의 수당으로 가져가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원장과 영아반 보육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보육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평균 호봉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2022년 급여기준으로, 원장은 급여기준으로는 평균 18~21호봉이 많았고, 수당을 포함하면 거의 30호봉 수준의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인건비(A)는 급여기준으로는 모두 평균 1호봉 이하로 나타났으나 여기에는 조리원, 간호사, 영양사, 보조교사 등의 보육교직원이 포함되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육교사(담임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보조교사 등) 인건비(B)는 급여기준으로는 평균 호봉은 9~12호봉이었고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계로 보면 호봉수준은 급여기준보다 1~2호봉 정도 증가하여 원장에 비해 수당지급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표 IV-3-5〉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호봉환산

단위: 호봉

구분		원장			보육교직원 1인당 ¹⁾			보육교직원 1인당 ²⁾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20명)	인건비 계	19	23	15	1	2	2	15	15	14
	급여	15	17	11	<1	<1	<1	13	14	12
	수당									
현원 (21~30명)	인건비 계	23	24	24	3	3	4	12	12	13
	급여	17	18	18	1	1	<1	11	11	11
	수당									
현원 (31~40명)	인건비 계	24	25	25	3	4	4	11	11	12
	급여	18	18	19	1	2	<1	10	10	10
	수당									
현원 (41~50명)	인건비 계	26	27	27	3	4	4	11	11	11
	급여	19	20	20	1	1	1	10	10	10
	수당									
현원 (51~60명)	인건비 계	26	26	27	3	3	4	10	11	12
	급여	19	19	20	<1	1	<1	9	10	10
	수당									
현원 (61~70명)	인건비 계	27	27	29	2	3	4	10	11	11
	급여	19	20	20	<1	<1	<1	9	9	9
	수당									
현원 (71~80명)	인건비 계	29	29	30	2	3	3	11	11	12
	급여	20	20	20	<1	<1	<1	9	10	10
	수당									
현원 (81~90명)	인건비 계	29	29	30	3	3	4	12	12	13
	급여	20	20	21	2	1	<1	10	10	11
	수당									
현원 (91~100명)	인건비 계	28	30	30	3	2	4	11	12	12
	급여	20	20	21	<1	<1	<1	10	10	11
	수당									
현원 (101~110명)	인건비 계	30	20	30	2	3	1	13	14	14
	급여	21	21	20	1	1	<1	12	12	12
	수당									
현원 (111명 이상)	인건비 계	30	30	30	2	2	3	13	13	14
	급여	20	20	20	<1	<1	<1	11	12	12
	수당									

주: 1)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직원(원장 제외) 수

2)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사 수

3) 기관부담금(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제외한 금액임.

4) '<1'은 월평균 인건비가 1호봉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함.

국공립어린이집 세출자료 중 기관부담금과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월 인건비 추정액을 기반으로 기관부담금을 추정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법정부담금은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지원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3-6〉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월평균 기관부담금 추정

단위: 원

구분		어린이집 세출자료 기관부담금			원장+보육교직원 기관부담금 추정 ¹⁾			비교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20명)	기관부담금 계	2,638,900	2,892,541	2,625,253	2,869,041	2,994,951	2,725,421	230,141	102,410	100,168
	법정부담금	1,322,773	1,531,070	1,394,123	1,561,854	1,639,166	1,498,229	239,081	108,096	104,106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316,127	1,361,471	1,231,131	1,307,187	1,355,785	1,227,191	-8,940	-5,686	-3,940
현원 (21~30명)	기관부담금 계	3,392,496	3,744,398	3,902,601	3,584,109	3,779,394	3,972,063	191,613	34,996	69,462
	법정부담금	1,723,556	1,982,974	2,084,899	1,951,124	2,068,499	2,183,538	227,568	85,525	98,639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668,940	1,761,424	1,817,703	1,632,985	1,710,895	1,788,524	-35,955	-50,530	-29,179
현원 (31~40명)	기관부담금 계	3,960,924	4,342,914	4,535,862	4,155,960	4,385,919	4,615,322	195,036	43,005	79,460
	법정부담금	2,025,962	2,313,794	2,428,204	2,262,429	2,400,456	2,537,153	236,467	86,662	108,949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934,963	2,029,119	2,107,657	1,893,531	1,985,462	2,078,168	-41,432	-43,657	-29,489
현원 (41~50명)	기관부담금 계	4,360,218	4,716,268	5,099,014	4,558,669	4,785,518	5,180,932	198,451	69,250	81,918
	법정부담금	2,244,181	2,505,675	2,717,724	2,481,657	2,619,161	2,848,083	237,476	113,486	130,359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116,037	2,210,593	2,381,290	2,077,012	2,166,357	2,332,849	-39,025	-44,236	-48,441
현원 (51~60명)	기관부담금 계	4,642,285	5,129,776	5,482,088	4,760,800	5,104,930	5,550,773	118,515	-24,846	68,685
	법정부담금	2,417,555	2,729,132	2,936,549	2,591,693	2,793,978	3,051,394	174,138	64,846	114,84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224,731	2,400,644	2,545,539	2,169,107	2,310,952	2,499,380	-55,624	-89,692	-46,159
현원 (61~70명)	기관부담금 계	5,070,175	5,455,056	5,939,760	5,224,530	5,513,169	5,981,854	154,355	58,113	42,094
	법정부담금	2,638,678	2,923,395	3,169,281	2,844,140	3,017,411	3,288,369	205,462	94,016	119,088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431,497	2,531,661	2,770,478	2,380,391	2,495,757	2,693,485	-51,106	-35,904	-76,993
현원 (71~80명)	기관부담금 계	5,563,467	6,104,702	6,491,554	5,692,141	6,148,055	6,581,071	128,674	43,353	89,517
	법정부담금	2,882,778	3,258,388	3,471,289	3,098,699	3,364,891	3,617,773	215,921	106,503	146,48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680,689	2,846,314	3,020,265	2,593,443	2,783,164	2,963,298	-87,246	-63,150	-56,967
현원 (81~90명)	기관부담금 계	6,500,884	6,889,797	7,325,357	6,652,178	6,930,898	7,419,849	151,294	41,101	94,492
	법정부담금	3,403,845	3,681,451	3,933,356	3,621,325	3,793,348	4,078,870	217,480	111,897	145,51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097,039	3,208,345	3,392,001	3,030,853	3,137,549	3,340,980	-66,186	-70,796	-51,021
현원 (91~100명)	기관부담금 계	6,912,458	7,629,929	8,043,893	6,960,573	7,456,956	8,007,842	48,115	-172,973	-36,051
	법정부담금	3,630,548	4,113,821	4,334,972	3,789,210	4,081,265	4,402,104	158,662	-32,556	67,13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281,909	3,516,108	3,708,920	3,171,363	3,375,691	3,605,739	-110,546	-140,417	-103,181
현원 (101~110명)	기관부담금 계	7,975,282	8,635,126	8,996,385	8,369,058	8,559,121	9,110,745	393,776	-76,005	114,360
	법정부담금	4,193,098	4,671,795	4,852,654	4,555,963	4,684,491	5,008,396	362,865	12,696	155,7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782,184	3,963,330	4,143,731	3,813,094	3,874,630	4,102,349	30,910	-88,700	-41,382
현원 (111명 이상)	기관부담금 계	9,290,951	9,905,140	10,598,180	9,451,551	9,999,509	10,684,456	160,600	94,369	86,276
	법정부담금	4,891,243	5,317,460	5,706,408	5,145,253	5,472,830	5,873,502	254,010	155,370	167,09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4,399,708	4,587,680	4,891,772	4,306,298	4,526,680	4,810,953	-93,410	-61,000	-80,819

주: 1) 기관부담금은 급여와 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산함.

2) 기관부담금: 2020년 18.29%, 2021년 18.41%, 2022년 18.51% 적용(법정부담금 2020년 9.96%, 2021년 10.08%, 2022년 10.17%, 퇴직적립금 월보수액 1/12)가. 가정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4. 소결

첫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2020~2022년 가정어린이집 현원규모를 보면 16명 이상인 경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현원 16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비율은 2020년 46.4%, 2021년 47.2%, 2022년 48.5%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 구성은 현원 10명 이하인 경우는 평균 2개반으로 0-1세 혼합반과 1-2세 혼합반이 많았고, 현원 16명 이상인 가정어린이집은 혼합반보다는 단일연령반 구성이 많았다. 월평균 보육교사 수는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현원 0~10명은 3명, 현원 11~15명은 4명, 현원 16명 이상은 5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가장 많은 곳은 2022회계연도에 월평균 13명인 곳이 있었다. 가정어린이집 중 조리원을 고용한 경우는 2020년 51.9%, 2021년 56.5%, 2022년 58.7%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둘째,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월평균 인건비를 각 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살펴보면,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최근 3년 모두 현원규모에 관계없이 1호봉 미만의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원장의 월평균 인건비는 현원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원 0~10명은 1호봉 미만, 현원 11~15명은 7호봉 수준, 현원 16명 이상은 20호봉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교직원 4대보험 법정부담금은 가정어린이집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020~2022년 민간어린이집 현원규모를 보면 현원이 50명 이하 중소규모인 비율이 2020년 64.7%, 2021년 65.4%, 2022년 67.1%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70명 이하 규모 비율은 2022년의 80.6%였다. 반 구성은 2022년 기준으로 현원 0~20명인 경우 평균 반 수는 3개, 현원 21~30명은 5개, 현원 31~40명은 6개였으며 영아반 중심으로 개설되는 경향이 컸다. 현원규모가 작을수록 혼합연령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현원 41명 이상인 경우부터 3세반을 비롯한 유아반 편성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육교사수는 현원규모가 클수록 많았고, 보육교사 수는 5~9명인 곳이 많았으며, 전체 9,572개소 중 4,984개소로 52.1%를 차지하였다.

넷째, 민간어린이집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인건비는 증가하였고, 현원규모가 클수록 원장 인건비와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현원규

모델로 나타나는 원장 인건비의 격차보다 보육교사 인건비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월평균 인건비를 호봉으로 환산해 보면, 원장은 현원규모가 증가할수록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호봉수준이 급격히 올라가는 반면, 보육교사의 호봉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급여기준 보육교사 호봉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질수록 호봉 수준이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어린이집과 유사하게 법정부담금은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으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섯째,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원 50인 이하는 2020년 53.9%, 2021년 57.3%, 2022년 62.4%였으며, 현원 80명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90.1%였다. 현원이 40명 이하인 경우 유아반보다는 영아반 중심으로 반을 구성하였고, 현원규모가 61명 이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0세반부터 5세반까지 모든 연령에 대한 단일연령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수(원장 제외)는 현원규모가 클수록 보육교사 수가 증가하였고, 2022년 기준으로 보육교사 수는 6~10명이 전체 5,782개소 중 3,088개소로 53.4%를 차지하였다.

여섯째,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보육교직원 월평균 인건비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에 비해 기본급 이외 수당으로 가져가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았다. 이외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법정부담금과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지원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추정

- 01 어린이집 인력배치 기준
- 02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 03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비교
- 04 소결

V.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추정

어린이집의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을 살펴보기 위해 2023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보조금과 부모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를 주요 수입으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단순화된 모형을 가정하여 어린이집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1. 어린이집 인력배치 기준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을 추정하기에 앞서 영유아보육법의 원장, 담임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의 인력배치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을 다음의 표와 같이 설정하였다.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이 가능하여 50인 이상부터 어린이집에 원장 1인을 배치하고, 담임교사는 연령별 반당 1인을 배치하였다. 조리원은 40인 이상부터 배치하여 영유아가 40~79인 어린이집은 1명, 영유아가 80인을 초과할때마다 1인씩 증원하였다. 영양사와 간호사는 영유아가 10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영양사를 단독으로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표 V-1-1〉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 및 인력배치 기준

단위: 명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원장	-	1	1	1	1	1	1
담임교사							
0세아반	1	1	1	1	1	2	2
1세아반	2	1	1	2	2	2	2
2세아반	1	1	2	2	3	3	4
3세아반	-	1	1	2	2	3	3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4세아 이상반	-	1	2	2	3	3	4
소계	4	5	7	9	11	13	15
간호사	-	-	-	-	1	1	1
영양사	-	-	-	-	1/2	1/2	1/2
조리원	-	1	1	2	2	3	3

주: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206의 내용을 기초로 인을 배치하여 반을 구성함

2.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어린이집 수입은 크게 보육료, 수익자부담수입, 보조금 및 지원금, 전입금, 기부금, 적립금, 과년도 수입, 잡수입, 전년도 이월액으로 구성된다. 이 중 수입의 대부분은 인건비보조금,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등에 크게 의존한다. 어린이집의 지출은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수익자부담경비, 적립금, 상환반환금, 재산조성비,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며, 인건비와 운영비, 보육활동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영아반 보육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보육교사는 30%를 지원받고,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는 1명에 한해 100%를 지원받고, 이외 인건비는 부모보육료 등의 수입에서 부담한다.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별도 인건비 지원은 없고 대신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다. 기관보육료는 정부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하는 보육료이다(보건복지부, 2023: 323).

이외에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만3~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기본보육 이외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보육료로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323)

누리과정 운영비는 방과후과정비 7만원 중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에게 지원금액(360천원) 중 일부(300천원) 등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누리과정 보육교사 지원액 등을 제외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40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291).
2023년 보육지원단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V-2-1〉 2023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원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5세반	장애아
계	1,113,000	778,000	596,000	280,000	1,212,000
부모보육료	514,000	452,000	375,000	280,000	559,000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	653,000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23.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어린이집 반 구성 및 인력배치 모형에 보육교직원의 평균호봉과 급여자료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김동훈 외, 2022)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급여에 기초하여 평균 호봉을 산출하였다. 어린이집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급여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환산하면, 인건비 지원 기관의 경우 원장은 20호봉, 보육교사는 7호봉, 조리원 1호봉, 간호사 1호봉, 영양사 1호봉으로 나타났다, 기관보육료 지원 기관은 원장은 12호봉, 보육교사는 1호봉, 조리원 1호봉, 간호사 1호봉, 영양사 1호봉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2022년 호봉이 2023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표 V-2-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급여 기준(전체 평균)

단위: 호봉, 원

구분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영양사	간호사
전체	15호봉	5호봉	1호봉	1호봉	6호봉
인건비 지원	20호봉	7호봉	1호봉	1호봉	9호봉
기관보육료 지원	12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주: 김동훈 외(2022).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의 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임.

보육교직원 1인당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2023년 월급여를 산출하였다. 인건비 산출시 보육교직원 호봉별 기본급에 추가적으로 법정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18.5%를 가산하여 산정하였고, 김동훈 외(2022) 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월 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은 7.3시간으로 나타나 월 7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반영하였다. 인건비 지원 기관의 원장 월급여는 4,194,400원, 보육교사는 2,803,000원,

간호사는 2,787,800원, 영양사는 2,487,400원, 조리원은 2,384,700원, 기관보육료 지원 기관의 원장 월급여는 3,563,300원, 보육교사는 2,592,900원, 간호사는 2,487,400원, 영양사는 2,487,400원, 조리원은 2,384,700원을 산출하여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추정시 이 금액들을 적용하였다.

〈표 V-2-3〉 보육교직원 1인당 월급여(급여수준 환산호봉 기준)

단위: 원

구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전체	15호봉	5호봉	시간외수당(5호봉)	5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3,815,500	2,563,500	108,700	2,672,200	2,487,400	2,487,400	2,384,700
인건비 지원	20호봉	7호봉	시간외수당(7호봉)	7호봉	9호봉	1호봉	1호봉
	4,194,400	2,689,000	114,000	2,803,000	2,787,800	2,487,400	2,384,700
기관보육료 지원	12호봉	1호봉	시간외수당(1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3,563,300	2,487,400	105,500	2,592,900	2,487,400	2,487,400	2,384,700

주: 1) 법정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18.5%가 가산된 금액이며, 보육교사는 추가로 시간외수당 7시간을 반영함.

2) 김동훈 외(2022)의 어린이집 실태조사 자료와 20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함

3.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비교¹⁶⁾

본 절에서는 1절과 2절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급여 기준 및 보육교직원 1인당 월급여, 2023년 부모/기관보육료 지원단가를 기반으로, 정원충족률에 따라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출은 크게 인건비와 인건비외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영아반 교사는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유아반 교사는 30%를 지원하고 있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수입 추정시 시간외수당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교사인건비를 산출하였다.

여기에서는 어린이집 반 구성 및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반 정원을 100% 충족하는 경우, 반별 정원이 1명 부족한 경우, 반별 정원이 2명 부족한 경우¹⁷⁾를 설정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이 어느 수준인지를 인건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6) 모형설정은 1차적으로 인건비보조금,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를 주 수입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보조교사 지원, 처우개선비, 지자체특수보육시책에 따른 수입 등은 제외하였다.

17) 단, 0세반은 정원대비 현원이 1명 부족한(반당 현원 2명)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 정원충족률 100%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보조금(원장/영아반보육교사 80%, 유아반 30%, 조리원 1인 100% 반영, 법정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과 연령별 부모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방과후과정비 7만원 중 누리과정 보육교사 지원금 일부(300천원)를 제외한 평균액 53,000원)를 수입 추정시 포함하였고,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부모보육료, 0~2세 기관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를 포함하였다.

추가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연령별 전국평균)를 포함한 수입 추정을 추가하였다. 차액보육료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기관보육료 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부모보육료 간의 차액으로, 당초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부모의 육아비용부담 해소와 건전한 양육 분위기 조성 등을 이유로 2023년 현재 지자체에서 전액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차액보육료를 포함한 수입 추정을 추가하였다.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이 100% 충족되었을 때 정부지원금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수입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V-3-1〉 어린이집 수입 추정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지원	원장	-	3,355,520	3,355,520	3,355,520	3,355,520	3,355,520	3,355,520
	담임교사							
	0세	3,693,200	3,693,200	3,693,200	3,693,200	3,693,200	7,386,400	7,386,400
	1세	8,822,400	4,411,200	4,411,200	8,822,400	8,822,400	8,822,400	8,822,400
	2세	4,776,200	4,776,200	9,552,400	9,552,400	14,328,600	14,328,600	19,104,800
	3세	-	5,006,700	5,006,700	10,013,400	10,013,400	15,020,100	15,020,100
	4세 이상	-	6,406,700	12,813,400	12,813,400	19,220,100	19,220,100	25,626,800
	간호사	-	-	-	-	-	-	-
	영양사	-	-	-	-	-	-	-
	조리원	-	2,384,700	2,384,700	2,384,700	2,384,700	2,384,700	2,384,700
	누리과정 운영비	-	1,855,000	2,915,000	3,710,000	4,770,000	5,565,000	6,625,000
	수입 계	17,291,800	31,889,220	44,132,120	54,345,020	66,587,920	76,082,820	88,325,720
기관 보육료 지원 (1)	원장	-	-	-	-	-	-	-
	담임교사							
	0세	3,339,000	3,339,000	3,339,000	3,339,000	3,339,000	6,678,000	6,678,000
	1세	7,780,000	3,890,000	3,890,000	7,780,000	7,780,000	7,780,000	7,780,000
	2세	4,172,000	4,172,000	8,344,000	8,344,000	12,516,000	12,516,000	16,688,000
	3세	-	4,200,000	4,200,000	8,400,000	8,400,000	12,600,000	12,600,000
	4세 이상	-	5,600,000	11,200,000	11,200,000	16,800,000	16,800,000	22,400,000
	누리과정 운영비	-	1,855,000	2,915,000	3,710,000	4,770,000	5,565,000	6,625,000
	수입 계	15,291,000	23,056,000	33,888,000	42,773,000	53,605,000	61,939,000	72,771,000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기관 보육료 지원 (II)	원장	-	-	-	-	-	-	-
	담임교사							
	0세	3,339,000	3,339,000	3,339,000	3,339,000	3,339,000	6,678,000	6,678,000
	1세	7,780,000	3,890,000	3,890,000	7,780,000	7,780,000	7,780,000	7,780,000
	2세	4,172,000	4,172,000	8,344,000	8,344,000	12,516,000	12,516,000	16,688,000
	3세	-	5,816,559	5,816,559	11,633,118	11,633,118	17,449,676	17,449,676
	4세 이상	-	7,425,529	14,851,059	14,851,059	22,276,588	22,276,588	29,702,118
	차액보육료							
	3세	-	1,616,559	1,616,559	3,233,118	3,233,118	4,849,676	4,849,676
	4세 이상	-	1,825,529	3,651,059	3,651,059	5,476,588	5,476,588	7,302,118
	누리과정 운영비	-	1,855,000	2,915,000	3,710,000	4,770,000	5,565,000	6,625,000
	수입 계	15,291,000	26,498,088	39,155,618	49,657,176	62,314,706	72,265,265	84,922,794

- 주: 1)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인건비보조금+부모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
 기관보육료 지원(I)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
 기관보육료 지원(II)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차액보육료(연령별 전국평균)
 2)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원장/영아반보육교사 80%, 유아반 30%, 조리원 1인 100% 반영, 법정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 포함
 3) 누리과정 운영비: 방과후과정비 7만원 중 누리과정 보육교사 지원금 일부(300천원)를 제외한 평균액 53,000원
 반영

수입의 보육료에는 인건비 이외에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본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중심으로 지출을 추정하였다. 인건비 지출은 인건비 지원은 원장은 20호봉, 보육교사는 7호봉, 기관보육료 지원(I, II)은 원장 12호봉, 보육교사 1호봉을 적용하였고, 조리원, 간호사, 영양사는 모두 1호봉을 적용하였다. 기관보육료 지원(III)은 원장 12호봉을 적용하고, 보육교사, 조리원, 간호사, 영양사는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하였다.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이 100% 충족되었을 때 정부지원금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출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V-3-2〉 어린이집 인건비 지출 추정(정원충족률 100%)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지원	원장	-	4,194,400	4,194,400	4,194,400	4,194,400	4,194,400	4,194,400
	담임교사							
	0세	2,803,000	2,803,000	2,803,000	2,803,000	2,803,000	5,606,000	5,606,000
	1세	5,606,000	2,803,000	2,803,000	5,606,000	5,606,000	5,606,000	5,606,000
	2세	2,803,000	2,803,000	5,606,000	5,606,000	8,409,000	8,409,000	11,212,000
	3세	-	2,803,000	2,803,000	5,606,000	5,606,000	8,409,000	8,409,000
	4세 이상	-	2,803,000	5,606,000	5,606,000	8,409,000	8,409,000	11,212,000
	간호사	-	-	-	-	2,787,800	2,787,800	2,787,800
	영양사	-	-	-	-	1,243,700	1,243,700	1,243,700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조리원	-	2,384,700	2,384,700	4,769,400	4,769,400	7,154,100	7,154,100
	지출 계	11,212,000	20,594,100	26,200,100	34,190,800	43,828,300	51,819,000	57,425,000
기관 보육료 지원 (Ⅰ,Ⅱ)	원장	-	3,563,300	3,563,300	3,563,300	3,563,300	3,563,300	3,563,300
	담임교사							
	0세	2,592,900	2,592,900	2,592,900	2,592,900	2,592,900	5,185,800	5,185,800
	1세	5,185,800	2,592,900	2,592,900	5,185,800	5,185,800	5,185,800	5,185,800
	2세	2,592,900	2,592,900	5,185,800	5,185,800	7,778,700	7,778,700	10,371,600
	3세	-	2,592,900	2,592,900	5,185,800	5,185,800	7,778,700	7,778,700
	4세 이상	-	2,592,900	5,185,800	5,185,800	7,778,700	7,778,700	10,371,600
	간호사	-	-	-	-	2,487,400	2,487,400	2,487,400
	영양사	-	-	-	-	1,243,700	1,243,700	1,243,700
	조리원	-	2,384,700	2,384,700	4,769,400	4,769,400	7,154,100	7,154,100
	지출 계	10,371,600	18,912,500	24,098,300	31,668,800	40,585,700	48,156,200	53,342,000
기관 보육료 지원 (Ⅲ)	원장	-	3,563,300	3,563,300	3,563,300	3,563,300	3,563,300	3,563,300
	담임교사							
	0세	2,483,500	2,483,500	2,483,500	2,483,500	2,483,500	4,967,000	4,967,000
	1세	4,967,000	2,483,500	2,483,500	4,967,000	4,967,000	4,967,000	4,967,000
	2세	2,483,500	2,483,500	4,967,000	4,967,000	7,450,500	7,450,500	9,934,000
	3세	-	2,483,500	2,483,500	4,967,000	4,967,000	7,450,500	7,450,500
	4세 이상	-	2,483,500	4,967,000	4,967,000	7,450,500	7,450,500	9,934,000
	간호사	-	-	-	-	2,382,500	2,382,500	2,382,500
	영양사	-	-	-	-	1,191,250	1,191,250	1,191,250
	조리원	-	2,382,500	2,382,500	4,765,000	4,765,000	7,147,500	7,147,500
	지출 계	9,934,000	18,363,300	23,330,300	30,679,800	39,220,550	46,570,050	51,537,050

주: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인건비보조금+부모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

기관보육료 지원(Ⅰ) 보육교사 1호봉 기준,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

기관보육료 지원(Ⅱ) 보육교사 1호봉 기준,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차액보육료(연령별 전국평균)

기관보육료 지원(Ⅲ) 보육교사 최저임금 기준,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차액보육료(연령별 전국평균)

정원충족률 100% 가정하에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중 20인 이하의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4.8%, 50인은 64.6%, 77인 59.4%, 97인 62.9%, 124인 65.8%, 142인 68.1%, 169인 65.0%로 60~70%로 나타났다.

차액보육료를 제외한 기관보육료 지원(Ⅰ) 어린이집 지출을 살펴보면, 20인 이하의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 50인은 82.0%, 77인 71.1%, 97인 74.0%, 124인 75.7%, 142인 77.7%, 169인 73.3%로 20인과 50인을 제외하고는 70~80% 사이이다. 인건비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 이외 운영비용에 투입 가능한 재원이 인건비 지원보다는 적어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액보육료를 포함한 기관보육료 지원(II) 어린이집 지출을 살펴보면, 20인 이하의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 50인은 71.4%, 77인 61.6%, 97인 63.8%, 124인 65.1%, 142인 66.6%, 169인 62.8%로 50인(71.4%)을 제외하고는 60% 대를 보였다.

원장 이외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2023년도 월 최저임금(2,010,580원)을 적용한 기관보육료 지원(III)의 경우, 어린이집 총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인 이하는 65.0%, 50인은 69.3%, 77인 59.6%, 97인 61.8%, 124인 62.9%, 142인 64.4%, 169인 60.7%로 60~70% 수준을 보였다.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I)의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A-B)는 20인과 50인을 제외하고는 10%p 정도 더 높았다. 20인의 경우 기관보육료 지원이 3%p 더 높아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의 차이가 적었으나, 50인은 17.4%p 차이를 보여,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50인 규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수입에 차액보육료를 포함하여 지출을 비교하면,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II,III)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차이(A-C, A-D)는 그 격차가 확연히 줄어들어, 부모부담분인 차액보육료를 지방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현행 비용지원 구조하에서는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간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차이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초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적용 호봉에 차이가 있어 비율은 유사하더라도 1인당 인건비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표 V-3-3〉 어린이집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 추정(정원충족률 100%)

단위: 원, %, %p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지원	수입 계(a)	17,291,800	31,889,220	44,132,120	54,345,020	66,587,920	76,082,820	88,325,720
	인건비 보조금	8,604,800	13,807,220	16,765,120	19,723,020	22,680,920	25,638,820	28,596,720
	부모보육료	8,687,000	16,227,000	24,452,000	30,912,000	39,137,000	44,879,000	53,104,000
	기관보육료	-	-	-	-	-	-	-
	누리과정 운영비	-	1,855,000	2,915,000	3,710,000	4,770,000	5,565,000	6,625,000
	지출 계(b)	17,291,800	31,889,220	44,132,120	54,345,020	66,587,920	76,082,820	88,325,720
	인건비(c)	11,212,000	20,594,100	26,200,100	34,190,800	43,828,300	51,819,000	57,425,000
	인건비 이외	6,079,800	11,295,120	17,932,020	20,154,220	22,759,620	24,263,820	30,900,720

V.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추정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49.8	43.3	38.0	36.3	34.1	33.7	32.4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	-	-	-	-	-	-
	(지출)인건비 비중(c/b, A)	64.8	64.6	59.4	62.9	65.8	68.1	65.0
기관 보육료 지원 (I)	수입 계(a)	15,291,000	23,056,000	33,888,000	42,773,000	53,605,000	61,939,000	72,771,000
	인건비 보조금	-	-	-	-	-	-	-
	부모보육료	8,687,000	16,227,000	24,452,000	30,912,000	39,137,000	44,879,000	53,104,000
	기관보육료	6,604,000	4,974,000	6,521,000	8,151,000	9,698,000	11,495,000	13,042,000
	누리과정 운영비	-	1,855,000	2,915,000	3,710,000	4,770,000	5,565,000	6,625,000
	지출 계(b)	15,291,000	23,056,000	33,888,000	42,773,000	53,605,000	61,939,000	72,771,000
	인건비(c)	10,371,600	18,912,500	24,098,300	31,668,800	40,585,700	48,156,200	53,342,000
	인건비 이외	4,919,400	4,143,500	9,789,700	11,104,200	13,019,300	13,782,800	19,429,000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	-	-	-	-	-	-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3.2	21.6	19.2	19.1	18.1	18.6	17.9
	(지출)인건비 비중(c/b, B)	67.8	82.0	71.1	74.0	75.7	77.7	73.3
기관 보육료 지원 (II)	수입 계(a)	15,291,000	26,498,088	39,155,618	49,657,176	62,314,706	72,265,265	84,922,794
	인건비 보조금	-	-	-	-	-	-	-
	부모보육료	8,687,000	16,227,000	24,452,000	30,912,000	39,137,000	44,879,000	53,104,000
	기관보육료	6,604,000	4,974,000	6,521,000	8,151,000	9,698,000	11,495,000	13,042,000
	누리과정 운영비	-	1,855,000	2,915,000	3,710,000	4,770,000	5,565,000	6,625,000
	차액보육료	-	3,442,088	5,267,618	6,884,176	8,709,706	10,326,265	12,151,794
	지출 계(b)	15,291,000	26,498,088	39,155,618	49,657,176	62,314,706	72,265,265	84,922,794
	인건비(c)	10,371,600	18,912,500	24,098,300	31,668,800	40,585,700	48,156,200	53,342,000
	인건비 이외	4,919,400	7,585,588	15,057,318	17,988,376	21,729,006	24,109,065	31,580,794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	-	-	-	-	-	-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3.2	18.8	16.7	16.4	15.6	15.9	15.4
	(수입)차액보육료 비중	-	13.0	13.5	13.9	14.0	14.3	14.3
	(지출)인건비 비중(c/b, C)	67.8	71.4	61.5	63.8	65.1	66.6	62.8
기관 보육료 지원 (III)	수입 계(a)	15,291,000	26,498,088	39,155,618	49,657,176	62,314,706	72,265,265	84,922,794
	인건비 보조금	-	-	-	-	-	-	-
	부모보육료	8,687,000	16,227,000	24,452,000	30,912,000	39,137,000	44,879,000	53,104,000
	기관보육료	6,604,000	4,974,000	6,521,000	8,151,000	9,698,000	11,495,000	13,042,000
	누리과정 운영비	-	1,855,000	2,915,000	3,710,000	4,770,000	5,565,000	6,625,000
	차액보육료	-	3,442,088	5,267,618	6,884,176	8,709,706	10,326,265	12,151,794
	지출 계(b)	15,291,000	26,498,088	39,155,618	49,657,176	62,314,706	72,265,265	84,922,794
	인건비(c)	9,934,000	18,363,300	23,330,300	30,679,800	39,220,550	46,570,050	51,537,050
	인건비 이외	5,357,000	8,134,788	15,825,318	18,977,376	23,094,156	25,695,215	33,385,744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	-	-	-	-	-	-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3.2	18.8	16.7	16.4	15.6	15.9	15.4
	(수입)차액보육료 비중	-	13.0	13.5	13.9	14.0	14.3	14.3
	(지출)인건비 비중(c/b, D)	65.0	69.3	59.6	61.8	62.9	64.4	60.7
인건비 비중 차이(A-B)		-3.0	-17.4	-11.7	-11.1	-9.9	-9.6	-8.3
인건비 비중 차이(A-C)		-3.0	-6.8	-2.2	-0.9	0.7	1.5	2.2
인건비 비중 차이(A-D)		-0.1	-4.7	-0.2	1.1	2.9	3.7	4.3

주: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인건비보조금+부모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

기관보육료 지원(I) 보육교사 1호봉 기준,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

기관보육료 지원(II) 보육교사 1호봉 기준,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차액보육료(연령별 전국평균)

기관보육료 지원(III) 보육교사 최저임금 기준,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차액보육료(연령별 전국평균)

2023년 표준보육비용 산출결과를 기준(기관보육료 지원)으로 인건비 비중을 보면, 연령별로 인건비 비중에 차이는 있으나 전체평균으로 보면, 20인은 74.3%, 50인은 58.1%, 77인은 53.4%, 97인은 56.0%, 124인은 55.7인, 142인은 55.6%, 169인은 55.7%로 나타났다.

〈표 V-3-4〉는 2023년 보육료 지원단가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표준보육비용 수준만큼 보육료(부모+기관)가 지원된다면 전반적인 인건비 비중을 60% 아래로 조정되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현 수준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도 일정부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준보육비용에서도 20인은 인건비 비중이 74.3%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타 규모에 비해 20인 이하는 운영비가 적게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수준까지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0-2세 영아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3-5세 유아의 표준보육비용은 누리과정비 35만원(28만원+7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 재원확보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표 V-3-4〉 2023년 표준보육비용 기준 인건비 지출 비중(정원충족률 100%)

단위: 원, %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건비	82.6	81.3	80.7	81.3	82.0	81.4	82.5
	인건비이외	17.4	18.7	19.3	18.7	18.0	18.6	17.5
1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건비	73.8	72.1	70.8	71.6	72.6	71.9	73.0
	인건비이외	26.2	27.9	29.2	28.4	27.4	28.1	27.0
2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건비	69.5	67.3	65.5	66.5	67.8	67.0	68.1
	인건비이외	30.5	32.7	34.5	33.5	32.2	33.0	31.9
3세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건비	-	50.4	46.6	48.1	49.8	49.3	49.5
	인건비이외	-	49.6	53.4	51.9	50.2	50.7	50.5
4세 이상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건비	-	46.3	41.8	43.4	45.3	44.9	44.8
	인건비이외	-	53.7	58.2	56.6	54.7	55.1	55.2
전체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건비	74.3	58.1	53.4	55.0	55.7	55.6	55.7
	인건비이외	25.7	41.9	46.6	45.0	44.3	44.4	44.3

나. 반별 정원 1명씩 미충원시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 및 인력배치 기준 하에서 연령별 반별 정원에 현원이 1명씩 부족하다는 가정하에서 어린이집 수입과 인건비 지출을 추정하였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인은 72.3%, 50인은 68.9%, 77인 63.3%, 97인 67.2%, 124인 70.3%, 142인 73.0%, 169인 69.6%로 70% 내외로 정원 100%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차액보육료를 제외한 기관보육료 지원(I) 어린이집 인건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인 86.2%, 50인은 95.0%, 77인 80.9%, 97인 84.3%, 124인 85.5%, 142인 88.6%, 169인 83.0%로 나타났다. 기관보육료 지원(I) 어린이집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어린이집 규모가 적은 20인과 50인 어린이집의 정원 미충원시 인건비 부담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보육료 지원(I) 어린이집에서 반별 정원 1명 미충원시 정원충족률은 20인은 80%, 50인 이상은 약 90%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50인 규모에서의 지출대비 인건비 비중은 95%로 정원충족률이 90%임에도 불구하고 지출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차액보육료를 포함한 기관보육료 지원(II) 어린이집 인건비 지출 비중은 20인은 86.2%, 50인은 81.7%, 77인 69.3%, 97인 71.9%, 124인 72.9%, 142인 75.1%, 169인 70.4%로 나타났다. 기관보육료 지원(III) 어린이집의 총지출 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은 20인은 82.6%, 50인은 79.3%, 77인 67.1%, 97인 69.6%, 124인 70.4%, 142인 72.7%, 169인 68.0%로 나타났다.

반별 정원이 1명씩 미충원시 인건비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상승하였다. 다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규모에 상관없이 증가 수준이 비슷하였으나, 기관보육료 지원은 격차가 상당하였다.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I)의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A-B)는 최소 13.4p에서 최대 26.1%p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고,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II)의 경우에는 최소 0.9%p에서 최대 13.9%p로 상대적으로 격차는 줄어들었다. 차액보육료를 포함(기관보육료 지원(II))하더라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인건비 지원보다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비중 부담이 더욱 커, 결국 인건비 이외 보육서비스

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가 실제로는 1호봉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임을 고려할 때 20인과 50인 규모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커질수록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은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의 비율과 유사해지거나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V-3-5〉 어린이집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 추정(반별 정원 1명 미충원시)

단위: 원, %, %p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지원	수입 계(a)	15,498,800	29,882,220	41,417,120	50,845,020	62,379,920	71,027,820	82,562,720
	인건비 보조금	8,604,800	13,807,220	16,765,120	19,723,020	22,680,920	25,638,820	28,596,720
	부모보육료	6,894,000	14,326,000	21,896,000	27,624,000	35,194,000	40,142,000	47,712,000
	기관보육료	-	-	-	-	-	-	-
	누리과정 운영비	-	1,749,000	2,756,000	3,498,000	4,505,000	5,247,000	6,254,000
	지출 계(b)	15,498,800	29,882,220	41,417,120	50,845,020	62,379,920	71,027,820	82,562,720
	인건비(c)	11,212,000	20,594,100	26,200,100	34,190,800	43,828,300	51,819,000	57,425,000
	인건비 이외	4,286,800	9,288,120	15,217,020	16,654,220	18,551,620	19,208,820	25,137,720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55.5	46.2	40.5	38.8	36.4	36.1	34.6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	-	-	-	-	-	-
기관 보육료 지원 (Ⅰ)	(지출)인건비 비중(c/b, A)	72.3	68.9	63.3	67.2	70.3	73.0	69.6
	수입 계(a)	12,026,000	19,903,000	29,806,000	37,580,000	47,483,000	54,371,000	64,274,000
	인건비 보조금	-	-	-	-	-	-	-
	부모보육료	6,894,000	14,326,000	21,896,000	27,624,000	35,194,000	40,142,000	47,712,000
	기관보육료	5,132,000	3,828,000	5,154,000	6,458,000	7,784,000	8,982,000	10,308,000
	누리과정 운영비	-	1,749,000	2,756,000	3,498,000	4,505,000	5,247,000	6,254,000
	지출 계(b)	12,026,000	19,903,000	29,806,000	37,580,000	47,483,000	54,371,000	64,274,000
	인건비(c)	10,371,600	18,912,500	24,098,300	31,668,800	40,585,700	48,156,200	53,342,000
	인건비 이외	1,654,400	990,500	5,707,700	5,911,200	6,897,300	6,214,800	10,932,000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	-	-	-	-	-	-
기관 보육료 지원 (Ⅱ)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2.7	19.2	17.3	17.2	16.4	16.5	16.0
	(지출)인건비 비중(c/b, B)	86.2	95.0	80.9	84.3	85.5	88.6	83.0
	수입 계(a)	12,026,000	23,146,041	34,783,294	44,066,082	55,703,335	64,100,124	75,737,376
	인건비 보조금	-	-	-	-	-	-	-
	부모보육료	6,894,000	14,326,000	21,896,000	27,624,000	35,194,000	40,142,000	47,712,000
	기관보육료	5,132,000	3,828,000	5,154,000	6,458,000	7,784,000	8,982,000	10,308,000
	누리과정 운영비	-	1,749,000	2,756,000	3,498,000	4,505,000	5,247,000	6,254,000
	차액보육료	-	3,243,041	4,977,294	6,486,082	8,220,335	9,729,124	11,463,376
	지출 계(b)	12,026,000	23,146,041	34,783,294	44,066,082	55,703,335	64,100,124	75,737,376
	인건비(c)	10,371,600	18,912,500	24,098,300	31,668,800	40,585,700	48,156,200	53,342,000
기관 보육료 지원 (Ⅲ)	인건비 이외	1,654,400	4,233,541	10,684,994	12,397,282	15,117,635	15,943,924	22,395,376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0.0	0.0	0.0	0.0	0.0	0.0	0.0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2.7	16.5	14.8	14.7	14.0	14.0	13.6
	(수입)차액보육료 비중	-	14.0	14.3	14.7	14.8	15.2	15.1
	(지출)인건비 비중(c/b, C)	86.2	81.7	69.3	71.9	72.9	75.1	70.4
	수입 계(a)	12,026,000	23,146,041	34,783,294	44,066,082	55,703,335	64,100,124	75,737,376
	인건비 보조금	-	-	-	-	-	-	-
	부모보육료	6,894,000	14,326,000	21,896,000	27,624,000	35,194,000	40,142,000	47,712,000
	기관보육료	5,132,000	3,828,000	5,154,000	6,458,000	7,784,000	8,982,000	10,308,000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누리과정 운영비	-	1,749,000	2,756,000	3,498,000	4,505,000	5,247,000	6,254,000
차액보육료	-	3,243,041	4,977,294	6,486,082	8,220,335	9,729,124	11,463,376
지출 계(b)	12,026,000	23,146,041	34,783,294	44,066,082	55,703,335	64,100,124	75,737,376
인건비(c)	9,934,000	18,363,300	23,330,300	30,679,800	39,220,550	46,570,050	51,537,050
인건비 이외	2,092,000	4,782,741	11,452,994	13,386,282	16,482,785	17,530,074	24,200,326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0.0	0.0	0.0	0.0	0.0	0.0	0.0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2.7	16.5	14.8	14.7	14.0	14.0	13.6
(수입)차액보육료 비중	-	14.0	14.3	14.7	14.8	15.2	15.1
(지출)인건비 비중(c/b, C)	82.6	79.3	67.1	69.6	70.4	72.7	68.0
인건비 비중 차이(A-B)	-13.9	-26.1	-17.6	-17.0	-15.2	-15.6	-13.4
인건비 비중 차이(A-C)	-13.9	-12.8	-6.0	-4.6	-2.6	-2.2	-0.9
인건비 비중 차이(A-D)	-10.3	-10.4	-3.8	-2.4	-0.1	0.3	1.5
정원충족률	80.0	90.0	90.9	90.7	91.1	90.8	91.1

주: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인건비보조금+부모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
기관보육료 지원(I) 보육교사 1호봉 기준,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
기관보육료 지원(II) 보육교사 1호봉 기준,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차액보육료(연령별 전국평균)
기관보육료 지원(III) 보육교사 최저임금 기준,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차액보육료(연령별 전국평균)

다. 반별 정원 2명씩 미충원시¹⁸⁾

어린이집 규모별 반 구성 및 인력배치 기준 하에서 1세반 이상 연령반의 정원 대비 현원이 2명씩 부족하고, 0세반은 현원이 1명 부족(3명 중 현원 2명)하다는 가정하에서 어린이집 수입과 인건비 지출을 추정하였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인은 78.8%, 50인은 72.5%, 77인 66.8%, 97인 71.4%, 124인 74.7%, 142인 77.3%, 169인 73.8%로 나타났다.

차액보육료를 제외한 기관보육료 지원(I) 어린이집 인건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인 105.0%, 50인은 105.9%, 77인 89.8%, 97인 94.5%, 124인 95.6%, 142인 98.2%, 169인 92.0%로 나타났다. 반별 정원 2명 미충원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20인, 50인 규모 어린이집은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외 규모에서는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90% 수준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 경우 50인 이상 규모는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이외에는 운영비에 지출할 재정여력이 매우 적다는 것을 있다.

18) 단, 0세반은 정원대비 현원이 1명 부족한(반당 현원 2명) 것으로 가정하였다.

차액보육료를 포함한 기관보육료 지원(Ⅱ) 어린이집 인건비 지출 비중은 20인은 105.0%, 50인은 90.5%, 77인 76.4%, 97인 80.0%, 124인 80.8%, 142인 82.8%, 169인 77.6%로 나타났다. 기관보육료 지원(Ⅲ) 어린이집의 총지출 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은 20인은 100.6%, 50인은 87.8%, 77인 74.0%, 97인 77.5%, 124인 78.1%, 142인 80.1%, 169인 74.9%로 나타났다.

반별 정원이 2명씩 미충원시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Ⅰ)의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A-B)는 최소 18.2%p에서 최대 33.3%p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고,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Ⅱ)의 경우에는 최소 3.8%p에서 최대 26.2%p의 격차를 보였다. 보육교사 임금을 1호봉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가정한 기관보육료 지원(Ⅲ) 지출에서도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20인과 50인 규모 등 규모가 작을수록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인건비지원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커짐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이 2명씩 부족할 경우에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특히 중소규모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차액보육료 등을 포함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충족률이 80% 수준만 보이더라도 보육료 중심의 수입-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았다. 결국, 현행 체계 안에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등 주 수입원 이외에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정부 및 지자체 타 지원금(교사 지원 및 각종 시책사업 등) 등을 통해 부족분을 해결하는 형태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이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V-3-6〉 어린이집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 추정(반별 정원 2명 미충원시)

단위: 원, %, %p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지원	수입 계(a)	14,219,800	28,389,220	39,216,120	47,859,020	58,685,920	67,000,820	77,827,720
	인건비 보조금	8,604,800	13,807,220	16,765,120	19,723,020	22,680,920	25,638,820	28,596,720
	부모보육료	5,615,000	12,939,000	19,854,000	24,850,000	31,765,000	36,433,000	43,348,000
	기관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	1,643,000	2,597,000	3,286,000	4,240,000	4,929,000	5,883,000
	지출 계(b)	14,219,800	28,389,220	39,216,120	47,859,020	58,685,920	67,000,820	77,827,720
	인건비(c)	11,212,000	20,594,100	26,200,100	34,190,800	43,828,300	51,819,000	57,425,000
	인건비 이외	3,007,800	7,795,120	13,016,020	13,668,220	14,857,620	15,181,820	20,402,720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60.5	48.6	42.8	41.2	38.6	38.3	36.7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	-	-	-	-	-	-
(지출)인건비 비중(c/b, A)		78.8	72.5	66.8	71.4	74.7	77.3	73.8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기관 보육료 지원 (Ⅰ)	수입 계(a)	9,874,000	17,863,000	26,837,000	33,500,000	42,474,000	49,029,000	58,003,000
	인건비 보조금							
	부모보육료	5,615,000	12,939,000	19,854,000	24,850,000	31,765,000	36,433,000	43,348,000
	기관보육료	4,259,000	3,281,000	4,386,000	5,364,000	6,469,000	7,667,000	8,772,000
	누리과정 운영비	-	1,643,000	2,597,000	3,286,000	4,240,000	4,929,000	5,883,000
	지출 계(b)	9,874,000	17,863,000	26,837,000	33,500,000	42,474,000	49,029,000	58,003,000
	인건비(c)	10,371,600	18,912,500	24,098,300	31,668,800	40,585,700	48,156,200	53,342,000
	인건비 이외	-497,600	-1,049,500	2,738,700	1,831,200	1,888,300	872,800	4,661,000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	-	-	-	-	-	-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3.1	18.4	16.3	16.0	15.2	15.6	15.1
	(지출)인건비 비중(c/b, B)	105.0	105.9	89.8	94.5	95.6	98.2	92.0
	수입 계(a)	9,874,000	20,906,994	31,523,971	39,587,988	50,204,965	58,160,982	68,777,959
	인건비 보조금							
기관 보육료 지원 (Ⅱ)	부모보육료	5,615,000	12,939,000	19,854,000	24,850,000	31,765,000	36,433,000	43,348,000
	기관보육료	4,259,000	3,281,000	4,386,000	5,364,000	6,469,000	7,667,000	8,772,000
	누리과정 운영비	-	1,643,000	2,597,000	3,286,000	4,240,000	4,929,000	5,883,000
	차액보육료	-	3,043,994	4,686,971	6,087,988	7,730,965	9,131,982	10,774,959
	지출 계(b)	9,874,000	20,906,994	31,523,971	39,587,988	50,204,965	58,160,982	68,777,959
	인건비(c)	10,371,600	18,912,500	24,098,300	31,668,800	40,585,700	48,156,200	53,342,000
	인건비 이외	-497,600	1,994,494	7,425,671	7,919,188	9,619,265	10,004,782	15,435,959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0.0	0.0	0.0	0.0	0.0	0.0	0.0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3.1	15.7	13.9	13.5	12.9	13.2	12.8
	(수입)차액보육료 비중	-	14.6	14.9	15.4	15.4	15.7	15.7
	(지출)인건비 비중(c/b, C)	105.0	90.5	76.4	80.0	80.8	82.8	77.6
	수입 계(a)	9,874,000	20,906,994	31,523,971	39,587,988	50,204,965	58,160,982	68,777,959
	인건비 보조금							
기관 보육료 지원 (Ⅲ)	부모보육료	5,615,000	12,939,000	19,854,000	24,850,000	31,765,000	36,433,000	43,348,000
	기관보육료	4,259,000	3,281,000	4,386,000	5,364,000	6,469,000	7,667,000	8,772,000
	누리과정 운영비	-	1,643,000	2,597,000	3,286,000	4,240,000	4,929,000	5,883,000
	차액보육료	-	3,043,994	4,686,971	6,087,988	7,730,965	9,131,982	10,774,959
	지출 계(b)	9,874,000	20,906,994	31,523,971	39,587,988	50,204,965	58,160,982	68,777,959
	인건비(c)	9,934,000	18,363,300	23,330,300	30,679,800	39,220,550	46,570,050	51,537,050
	인건비 이외	-60,000	2,543,694	8,193,671	8,908,188	10,984,415	11,590,932	17,240,909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0.0	0.0	0.0	0.0	0.0	0.0	0.0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3.1	15.7	13.9	13.5	12.9	13.2	12.8
	(수입)차액보육료 비중	-	14.6	14.9	15.4	15.4	15.7	15.7
	(지출)인건비 비중(c/b, C)	100.6	87.8	74.0	77.5	78.1	80.1	74.9
	인건비 비중 차이(A-B)	-26.2	-33.3	-23.0	-23.1	-20.9	-20.9	-18.2
	인건비 비중 차이(A-C)	-26.2	-17.9	-9.6	-8.6	-6.2	-5.5	-3.8
	인건비 비중 차이(A-D)	-21.8	-15.3	-7.2	-6.1	-3.4	-2.7	-1.1
정원충족률		65.0	82.0	83.1	82.5	83.1	83.1	83.4

주: 1) 단, 0세반은 정원대비 현원이 1명 부족함(반당 현원 2명) 것으로 가정함.

2)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인건비보조금+부모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

기관보육료 지원(Ⅰ) 보육교사 1호봉 기준,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

기관보육료 지원(Ⅱ) 보육교사 1호봉 기준,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차액보육료(연령별 전국평균)

기관보육료 지원(Ⅲ) 보육교사 최저임금 기준, 어린이집: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차액보육료(연령별 전국평균)

4. 소결

첫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급여 기준 및 보육교직원 1인당 월급여, 2023년 부모/기관보육료 지원단가를 기반으로, 정원충족률에 따라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출은 크게 인건비와 인건비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보육교직원의 평균호봉과 2023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누리과정운영비를 반영하여, 반 구성 및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보육교직원 1인당 월급여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4-1〉 보육교직원 1인당 월급여(급여수준 환산호봉 기준)

단위: 원

구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15호봉	5호봉	시간외수당(5호봉)	5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전체	3,815,500	2,563,500	108,700	2,672,200	2,487,400	2,487,400	2,384,700
인건비	20호봉	7호봉	시간외수당(7호봉)	7호봉	9호봉	1호봉	1호봉
지원	4,194,400	2,689,000	114,000	2,803,000	2,787,800	2,487,400	2,384,700
기관보육료	12호봉	1호봉	시간외수당(1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지원	3,563,300	2,487,400	105,500	2,592,900	2,487,400	2,487,400	2,384,700

둘째, 반별 정원을 100% 충족할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60~70%였고,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를 제외한 경우 인건비 비중은 70~80%로 인건비 지원보다 컸으나, 차액보육료를 포함한 경우 인건비 비중은 60% 대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유사하였다. 부모부담분인 차액보육료를 지방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현행 비용지원 구조하에서는 인건비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간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차이가 별로 없었다.

셋째, 반별 정원이 1명씩 부족하다고 가정할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70% 내외로 정원 100% 충족시 인건비 비중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를 제외한 경우 인건비 비중은 8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차액보육료를 포함한 경우 인건비 비중은 70% 대로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 증가율을 낮게 나타냈다. 특히,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어린이집 규모가 적은 20인과 50인 어린이집의 정원 미충원시 인건비 부담비율이 다른 규모에 비해 커, 결국

인건비 이외 보육서비스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넷째, 반별 정원이 2명씩 부족하다고 가정(단, 0세반은 1명 부족)할 경우,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수입에서 차액보육료를 제외한 경우 20인, 50인은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차액보육료 수입을 포함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현행 체계 안에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등 주 수입원 이외에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정부 및 지자체 타 지원금(교사 지원 및 각종 시책 사업 등) 등을 통해 부족분을 해결하는 형태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VI

보육교사 처우 실태 분석

- 01 근무조건
- 02 처우 및 보상
- 03 기타 지원
- 04 소결

VI. 보육교사 처우 실태 분석

본 장에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와 면담을 통해 나타난 근무조건이나 처우 실태를 살펴보았다.

1. 근무조건

가. 근로계약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2.1.1.)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에 어린이집의 연도 전환 시기 등을 고려하여 3월 1일(삼일절)의 근로계약 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계약체결은 매년인 경우와 장기간 근속한 경우는 별도로 갱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로계약시 근로기간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다년인 경우도 일부 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표준근로계약서 상에 포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계약서는 보통 2월말 오리엔테이션이나 3월 중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서 상에 급여는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와 수당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다.

여기(표준근로계약서) 지금 들어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기재돼 있는 것 같아요(보육교사 A).

그냥 근무시간 이런 거 그다음에 휴게 시간 이 정도만 그냥 적혀 있는 것 같고 업무 내용 이런 거 관련해서는 없는 거고(보육교사 B).

네 그래서 그냥 원감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감 수당 금액은 진짜 작아요.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선생님들 이제 전반적인 서류를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선생님들은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없는데 우선 저는 직책 수당이 하나는 적혀 있어요.(보육교사 B)

(혹시 거기에 교사들의 직무나 업무에 관한 내용들은 따로 계약서 상에 있지는 않으신 건가요?)계약서 적을 때 무슨 업무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보육교사 B)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아닌데 그전에 국공립에 있었을 때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서 너무 기니까 교사들 업무 분장 그 서류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느 반 누구 선생님은 어떤 역할 어떤 역할들 이런 게 다 표로 정리돼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일을 자기들이 하고 또 책임도 지고(보육교사 A).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이제 보육을 한다라는 거는 되어 있고요.
근로계약서의 대부분은 보육교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징계 사유 이런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들어 있어요(보육교사E)

그니까 경력 증명서는 제출을 해요. 이력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는데 그거는 이제 블랙리스트를 찾기 위해서인 거지.

이 사람이 전 어린이집에 근무를 어떤 상황을 했는지 내 이력서 상황하고 근무가 맞는지 그런 거 보기 위해서지 호봉표대로 주려고 경력 증명서 제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보육교사E)

3월 1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3월 1일부터 2월 28일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보육교사C)

원래는 3월 같은 경우는 새로 계약하면 3월 1일부터라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2월 28일까지 하게 되면 하루가 부족해서 퇴직금을 안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3월 1일은 공휴일로 제외 하더라고요. 수정 요청을 해도 수정이 이뤄지지 않고 그냥 3월 2일 근무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죠.(보육교사E)

나. 보육교사 업무 및 업무량

보육교사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나 서류로 존재하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서로 협의하여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보육교사들의 업무분장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아닌데 그전에 국공립에 있었을 때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기 너무 기니까 교사들 업무 분장 그 서류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느 반 누구 선생님은 어떤 역할 어떤 역할들 이런 게 다 표로 정리돼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일을 자기들이 하고 또 책임도 지고...(보육교사 A).

담임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면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 근데 그 업무 분장에는 거의 이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에 관해서 반 일 외의 것들 나누어서 해야 될 일 그런 게 거의 적혀 있었던 것 같고 담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서류로 뭔가 남아 있었던 걸 전 본 기억은 없어요(보육교사 A).

또한 영아반 등 조건 충족시 지원되는 보조교사가 가정어린이집 등의 현장에서 의 역할은 다소 상이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어, 보조교사로 채용했다라도 실제로는 원장이 담당하는 연령반의 실질적 담임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저는 보조로서 뭔가를 하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사실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은, 그래서 이제 가정어린이집에 와서 이제 알았는데 원장 선생님 반을 주로 맡으면서 거의 담임의 역할을 다 할 수밖에(보육교사 A).

보육교사의 업무량은 각종 행정업무 등으로 많다는 인식이 많았고, 업무량 감소를 위해서는 교사대 아동비율의 조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0세반으로 경우 초기 영아의 경우, 단기간의 월령차이에도 발달단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0세반 교사들의 업무량 부담감이 매우 커, 최소한 1대 2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각종 평가, 컨설팅, 감사 등에 대비한 보여주기식 행정업무 처리 등도 많았고, 보육교사들의 업무부담으로 인해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간제 반을 했더니 이제 12개월 이하 애들이 예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이제 3명이 6개월짜리가 3명이 오고 애들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월 말 되면 또 서류적인 부분 가정통신문이나 식단 이런 서류를 또 정리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 좀 하여튼 서류적인 부분에 저는 좀 많이 힘들어요.(보육교사 B).

질이 떨어지는 거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제일 문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이 너무 높아요.(보육교사 A)

그러니까 뭐 보육 일지 쓰고 그다음 관찰 일지 또 따로 쓰고 그다음에 각종 온갖 안전 교육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교사 회의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이런 무슨 모든 것들을 다 사진 찍어가지고 적어야 되고(보육교사 A)

어린이집 점수를 높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포트폴리오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보육교사 A)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층이 4층 건물이에요. 그다음에 보조 교사가 있다면 아이들이 등원할 때 층까지 올려준다거나 그러면 그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놔두고 내가 등원 맞이를 안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아이들 안전을 다 지킬 수 있는데 등하원도 다 해야 되지 아이들도 인원도 다 체크하고 가방 정리, 서류 정리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사건 사고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보육 교사의 선이 어디까지더라는 걸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는 정말 보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아이들 식사 시간에도 뭔가 배식이 2시까지 들어온다면 아이들하고 안전하게 지켜서 배식도 할 수 있는 거고 급간식을 가지고 또 저희가 식사까지 갔다 오는 동안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사고가 나면 교사는 아이를 방치하고 나갔기 때문에 방임대로 걸리고 등하원 시간에 사건이 일어나도 아이들이 다치면 또 교사는 방임죄가 되버리고 근데 또 서류를 가지고 와라 내려와라 뭐 하라 하면 또 그 자리에 비워야 되는데 이 모든 면이 보육 시간이 다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상 정말 아이들을 안전하게만 본다는 거는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바깥 놀이하다가 아이가 혼자 우산 쓰고 큰 도로변을 간 것처럼 저희도 식당을 가거나 등하원 맞이 할 때 아이들이 없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어린 연령들은 문을 열고 호기심에 나가서 다른 교실에 가거나 교구장 일로 와서 다친 상황이 있는데 정말 보육만 한다면 정말 이 시간에 아이들 온전하게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교실에서 아이들만 보sey라고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선이라는 거를 자꾸 안 물어봐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완벽한 시설은 안되어 있고 보육교사는 몸이 하나지만 다양한 업무에 투입이 돼서 다양한 행동을 해서 급간식도 가져와 등원 등하원 맞기도 해 서류도 준비해서 제출해야 돼 그런 시간이 너무나 비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에 교육에 신경을 쓰다 보기에는 그냥 문제 있는 아이는 내가 데리고 나가자 이런 식의 업무를 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보육교사E)

0세는 개월 수에 따라서 애들이 완전 너무 다르니까 그때는 월령에 따라서 지금 걸어 다니는 16 17개월 아이 두 명을 맡은 상태에서 이제 8월 둘째 주부터 이제 걷지 못하는 아이가 한 명 더 입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봐도 한 명 보는 거랑 쌍둥이 보는 거랑 그게 완전히 다른데 선생님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1대 3은 저는 진짜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3명이 다 같이 응가를 해서 기저귀를 가는데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여기서 걸어 다니는 애하고 누워 있는 애가 같이 있고 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1 대 1이면 제일 좋겠지만 0세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 또 정서적으로 교감해 주고 이런 문제 그치만 그게 안 된다면 그래도 지금 1 대 3이니깐 1 2로 지금 줄이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시범 운영하는 곳 그게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죠.(보육교사 A)

선생님도 정신없고 7세 되면 또 20명에 이제 3명까지 더 이렇게 추가로 되니까 23명까지

이렇게 교사 혼자서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아니다.

초등학교만 해도 지금 21명 이렇게 되는데 초등학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지금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좀 바꾸면 좋겠죠.(보육교사B)

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육교사에게 있어 휴게시간과 장소는 있으나 실질적 이용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아반 보육교사는 영아가 낮잠을 시간을 이용하여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조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장들의 교사들의 휴게시간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 휴게시간의 보장보다는 중간에 틈틈이 여유를 갖고 쉬는 것을 일종의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다.

네 저는 이제 민간 이제 워낙 애들도 많다 보니까 주로 보조 선생님들은 출근해서 애들 입구에서 맞이하는 거 그런 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완전히 선생님들 휴게 시간이 이제 뭐지 영아 반은 좀 영아반은 그래도 이제 낮잠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유아반은 같은 경우는 이제 휴게 시간 없이 선생님들이 풀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보조 선생님을 잠깐 투입해서 30분 정도 선생님들이 휴게 시간으로 좀 쓰고 있어요.(보육교사 B)

저는 이제 여기 당직제로 돌아가서 총 9시간에 1시간 휴게 시간 하는데 굳이 휴게시간을 안 하고 그냥 선생님들 9시간 근무하는 것 같아요.(보육교사 B)

아니 없죠. 없고 그냥 그냥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영아반은 그냥 영아반 낮잠 시간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다고 유아반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탕비실이라고 그냥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조리실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거나 안 그러면 그냥 다른 좀 애들이 있을 때 좀 요즘 한 곳에 선생님들이 그냥 있다가 다른 일 하고 오고 이랬는데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되죠. 휴게 시간 자체가 그래서 저는 휴게 시간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게 보육교사 하면서 휴게 시간을 딱딱 지키는 데가...(보육교사B)

(전에 있던 곳은) 그때는 쓰리 담임이어서 선생님 두 분이 계시니까 아프거나 아니면은 꼭 무슨 업무를 봐야 되거나 하면 애들 낮잠 시간에 두 분이 계시니까 한 사람은 좀 한 시간 정도 무슨 일을 보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편의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곳이 많이 많지는 않겠죠(보육교사A)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정 어린이집은 조그마한 아파트 같은 곳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휴게실은 따로 없고요. 주방이 휴게실이거든요. CCTV가 보여지지 않는 주방이 휴게실인데 원장님 같은 휴게 시간을 점심시간 한 시간 정도 나가서 밥을 먹고 오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앞치마 입고 있다가 옷 갈아입고 바깥에 나가서 밥을 먹고 왔다

갔다 이동 시간이 이미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또 제가 나가고 없으면 다른 반 선생님이 우리 반을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잠깐 잠깐 매일 타이트하게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그런 게 적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자면 선생님들끼리 커피 한 잔 하고 그런 걸 원장님은 당연히 그게 휴게 시간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보육교사D)

거기 그냥 휴게 시간 안 쓰는 걸 당연히 알고 있더라도요. 관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교사 사실이라고 명패는 딱 붙어 있어요. 반패처럼 붙어 있는데 교사실은 겉에서 보기에는 교사 시지만 창고예요. 그러니까 난방 시설도 안 되고 냉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교사들이 갈 수도 없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나 이런 게 없고 창고처럼 모든 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외출 같은 것도 휴게 시간을 그니까 효율적으로 쓴다는 전제 하에 외출 양식이 있어요. 서류 양식이 있지만 그것도 가라로 돌아가면서 나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은행 갔다 왔다 가라를 쓰고 약국 병원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그걸 거짓말을 돌아가면서 써야 되고요.(보육교사E)

라. 근무시간

보육교사의 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어 가고 있었으며, 새 학기 준비나 어린이집 행사 준비 등에 간헐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어린이집 일부에서는 원장에 따라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지만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보다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등 강제 조항들도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가끔 행사 준비할 때 한 30분 30분 이상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이 조금 가끔씩은 정말 바쁠 때 그 행사를 할 때는 저만 20 30분 늦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늦게 가거든요.(보육교사C)

근로계약서도 10분 전 출근을 하라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왜 10분 전 출근을 하라고 명시를 근로계약서에 쓰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지속적으로 장기간 하게 되면 몇 시간이 되잖아요 진짜 시간이 많이 늘었는데 10분 전 출근일은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퇴근 시간은 정확히 4시 반 6시 그다음에 7시 반 저녁 7시 반 이런 식으로 퇴근 시간은 정확히 적혀 있지만 퇴근 시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보육교사E)

3일 이상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요.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일지도 써서 제출하고 가야 되고요. 일지만 쓰는 게 아니라 관찰 일지 그다음에 발달 상황 일지 비슷한 서류를 한 3~4 개를 하다 보니까 그거도 날짜에 맞춰서 꼭 제출을 해야 되고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원장님 책상에 올려놔야 되니까 누구는 제출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서류 때문에 퇴근 시간을 잘 늦는 것 같아요.(보육교사E)

저희는 연장반 신청을 아이들이 많이 했지만 연장반 교사를 채용한 건 한 명밖에 없어요. 수당도 안 주고 너네 퇴근 시간까지는 아이를 봐라 보고 통합 보육 시간은 그러니까 교사들 근무 시간을 7시 반, 8시, 9시 그다음에 9시 30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면서 그 빈 공간에 아동들 비율이 안 맞아도 오후 시간에 남는 교사가 있기 때문에 연장반 교사를 한 명만 채용을 하고 나머지 담임들이 퇴근 전까지 보니까 채용을 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보육실에 내려보낼 때는 늦게 출근한 9시 반에 출근, 9시 40분 정도에 출근하는 교사가 6시 40분까지는 남아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는 아동들 비율이 맞게끔 한 시간은 또 두 사람이 보게끔 그러니까 연장반 교사를 한 명만 채용을 해도 들기지만 않으면 오후 시간은 아동대 비율이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연장 반까지 보낼 때까지 보고 퇴근을 하니까 맞고 오전에는 아동대 비율이 안 맞아도 아무리 지도 점검이 와도 등원 시간은 cctv는 안 보니까 안 걸리는 거죠. 저희 요번에 지도 점검 저번 주에 왔는데도 낮잠 시간밖에 안 보시더라고요.(보육교사E)

어쨌든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교구 정리해야 돼요. 금요일마다 교구 전체를 다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겠다. 근데 내가 아침에 당직인 날은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요일 날 오후에 가서 그 교구 정리를 싹 해서 제자리 해놓고 집에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보육교사E)

2. 처우 및 보상

가. 급여

민간의 경우 급여는 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호봉이나 경력을 인정받더라도 1호봉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15년 이상의 고경력자라 하더라도 매년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었다. 민간이나 가정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이나 1호봉 급여를 불문율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였다. 또한 원장 일부는 장기근속수당 등 추가적인 교사처우 지원금을 보수의 인상으로 인식하여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은 이제 호봉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왜 얼마 전에 왜 최저임금 확정되면 여기에서 이제 더 더해지구나 빼지구나 다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한 15명 선생님들이 계신데 다 똑 같아요. 월급이 전부 똑같아. 1년이든 그다음에 5년 7년이든 다 똑같고 그나마 저만 직책수당이고 정말 조그마한 돈을 받고 있어요. 그게 민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봉으로 책정되면 정말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은 없어요.(보육교사B).

일방적이지요 일방적으로 최저가 이 정도고 나는 수당을 이 정도 받고 그렇게 하자 이러면 그냥 사인하게 하고 예전에 제가 너무 최저임금 이제 직책도 없었을 때 너무 최저임금은

저는 그래도 경력이 있는 데 한 몇천 원이라도 좀 차이를 주면 안 돼요? 이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간은 이런 수준이구나 (보육교사B)

무조건 신입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모든 선생님들이 가정 어린이집 그냥 가면 경력 인정 안 해줘요. 네 전혀 안 해주고 경력직 니가 어디 다녔구나 그걸 보는 거지. 원장님들이 이 원장님들이 니가 이렇게 했으니까 급여를 내가 더 생각해 줄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네네.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면 돼요.(보육교사C),

근속수당을 주니 내가 너한테 그거를 급여를 더 안 줘도 된다. 2년을 근무하게 되면 3만 원 수당이 계속 들어오니 내가 월급을 안 올려주고 시에서 주니까 나는 너를 계속 최저임금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보육교사E)

다만, 매년 법정 최저임금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 않더라도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1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은 급여명세표는 대체로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투명하지 못해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퇴직적립금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이제 왜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그거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급여는 그냥 1월 1일부터는 급여가 올려서 받았던 것 같아요.

급여 명세서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급여 명세서에는 매년 퇴직 적립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금액 얼마가 적혀 있는데 근데 원에서는 그냥 꾸준히 적립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제 느낌에 그래서 그냥 원장님한테 원장님 적립은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줄까 봐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시니까...선생님 그만둔 선생님들은 퇴직금은 다 받으시긴 받으셨어요(보육교사B)

예 그건 모르겠는데 선생님들 그만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적네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정확한 계산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요즘 애들은 이렇게 탁탁 자기 걸 잘 챙기겠지만 옛날은 그냥 이렇게 주면 주는 대로 하고 적히면 적히는 대로 이러다 보니까(보육교사B)

저는 퇴직 적립 공간 거기 거기 아예 가입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원장 선생님이 관여 안 하시고 거기로 다 맡기신 분이더라고요.(보육교사A)

민간에 온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최저임금)로 생각하고 올 거예요. 민간을 한다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 등의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연령반을 추가하고, 보조교사와 담임교사와의 차액을 수입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있을 뻔 하였는데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반을 늘리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보조인데 담임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 한 시간 더 연장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그 한 시간에 대한 돈만 더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갖고 그 대신 담임 아까 말했던 나라에서 뽑히는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건 당신이 받아라 그러면 서로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죠.(보육교사A)

정부 및 지자체에서 교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어린이집 회계에 포함하여 인건비로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세금문제와 회계 불투명성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또 이렇게 욕심 많은 원장 선생님은 그걸로 또 그렇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겠죠. 지금도 그렇게 재량으로 해놓으면 줄 것도 안 주고 자기들이 챙기고 지금 퇴직연금도 저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보육교사A)

나. 교사휴가

보육교사의 연차는 비교적 잘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 활용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보였다. 방학 중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별도의 특별휴가나 공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9월에 이제 결혼식으로 그만둔다고 이제 미리 얘기한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은 그만두기 전에 15개를 빨리 쓰게 그래갖고 계속 즐기치게 이 쌤이 휴가 가는 거 이 쌤이 쓸 생각이 없는데 이제 우선 못 쓰면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원장님이 하여튼 최대한 연차는 다 쓰게 무조건(하죠)(보육교사A)

대체교사 제도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조교사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대체교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현 제도로 인해,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 휴가시 연령만 담임교사가 보조교사를 수행하고, 대체교사가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가 휴가를 갈 경우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조교사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대체 선생님에 대해서 좀 여기에다가 건의를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수목금이 급한 일이 있어서 휴가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보조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조 선생님은 대체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냥 담임이 휴가인 것처럼 이제 온 거예요. 담임이 이제 대체를 낸 것처럼 그리고 와서 이제 자기는 다른 반으로 가면 안 되고 딱 그냥 한 반을 고정을 하지 안 그러면 이렇게 그게 체크가 된다. 이렇게 뭐 좀 원에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대체 선생님은 이제 5세 반에 고정을 하고 5세 선생님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 갖고 이제 뭐지 육종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 선생님 보조 선생님이 휴가를 갔는데 왜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러니까 그럴 수가 없대. 그게 원 말인지 모르겠어요.(보육교사B)

3. 기타 지원

보육교사들이 보육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재교구가 필요하나, 교재교구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교재교구를 개인물품을 활용하거나 개인비용으로 사는 경우가 있었다.

아니 뭘 하려고 해도 종이도 없어 가위도 없어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준비해서 가면 원장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애네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교구도 그냥 일년 내도록 똑같이 엄마들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저 문 앞에서 애들 놓고 가는데 근데 키즈 노트에는 막 뭐 더 한 것처럼(보육교사A)

또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보육교사로서 보육활동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가 계획했던 놀이 활동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정적인 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대집단 활동 너무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신체 활동을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 수업 계획을 했는데 같아엎듯이 하지 마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되게 보육교사로서도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정해진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나가 산책을 나가 이렇게 이렇게 일정을 바꾼다던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있다는 게 왜냐하면 저는 주간 교육 계획안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데 모든 활동이 조금 너무 신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낮잠을 잘 그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아이들도 신체 활동을 하다 보면 그다음 날 정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만들기도 할 수 있고 앉아서 하는 활동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돼 그냥 계속 좀 그래요(보육교사C)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정보시 최소한 정보만 입력되거나 급여수준이나 채용시 담당 연령반 등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경우가 많고, 경험과 경력이 있는 반을 맡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안 나와요. 그냥 담임 교사라고 하니깐 그러면은 담임교사가 나는 지금 0세를 하고 싶은데 하고 가면 아니예요 전혀 0세 선생님은 나는 0세를 계속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그냥 3~4세 그냥 혼합반 하는 거죠.(보육교사C)

4. 소결

첫째, 보육교사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계약체결은 매년인 경우와 장기간 근속한 경우는 별도로 갱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로계약시 근로기간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다년인 경우도 일부 있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어, 보조교사로 채용했더라도 실제로는 원장이 담당하는 연령반의 실질적 담임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보육교사의 업무량은 각종 행정업무 등으로 많다는 인식이 많았고, 업무량 감소를 위해서는 교사대 아동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보육교사에게 있어 휴게시간과 장소를 있으나 실질적 이용은 어려우며, 낮잠시간 등을 통해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있었다.

셋째, 급여는 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호봉이나 경력을 인정받더라도 1호봉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민간이나 가정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이나 1호봉 급여를 불문율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

넷째, 급여명세표는 대체로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투명하지 못해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퇴직적립금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경우는 드물어 이에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보육교사의 실질적 연차 사용은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휴가나 건강검진 등을 위한 공가 사용 등은 없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휴가사용시 대체교사 이용할 수 없어,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VII

정책제언

- 0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조정
- 02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VII. 정책제언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경우 경력인정에 호봉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원장과 보육교사 보수는 최저임금이나 상황에 따라 1호봉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 자격과 동일수준의 근무와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수 등 처우에 있어서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 향후 유보통합 추진 방안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가면서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차이를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조정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에는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87).

그러나 어린이집 세입세출을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는 1호봉 미만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장의 보육교사 면담결과에서는 민간·가정보육교사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매년 최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보육교사 스스로도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3월부터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23:87) 의무규정은 아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유보통합 추진과

함께 보육교사 자격과 서비스의 질 제고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이라는 현행 규정은 오히려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게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보육교사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별도로 취득한 자로서 보육사업안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도 최저임금이 아닌 1호봉부터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행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한 1호봉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표 VI-1-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개선(안)

현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보육사업안내 p.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u>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u>를 지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u>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을 권고</u>(‘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제시한 <u>1호봉 이상의 보수</u>를 지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 (삭제)

그러나 반별 정원이 100% 충족되지 않는 이상 현행 비용지원체계 하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부담이나 반발 또한 상당할 것이다. 특히 인건비 이외에 급간 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의 운영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 15% 지출까지를 감안한다면, 정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비중이 더욱 커져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여력이 부족해 질 것이다. 이에 추가적 재원부담 등을 통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한다.

2.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가. 기관보육료 정원 기준 지급

현원기준 바우처 방식의 비용지원구조 하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반당 정원을 충족하지 못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비 규모는 낮아져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으로 0세반 정

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보육료(223만원)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239만원) 지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인이하의 가정어린이집과 50인 이하 비율이 많은 민간어린이집은 영아반 중심으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당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인건비 지급 부담정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반당 정원충족률이 일정수준(50%¹⁹⁾) 이상인 경우 현행 기관보육료를 정원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최소한 보육교사의 질을 담보하고,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관보육료 형태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며, 추가 지원된 기관보육료는 담임교사 인건비 지출에 70% 이상 지출을 의무화하여 추가 비용지원이 담임교사 인건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 재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아반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럴 경우 중소규모 어린이집에게 영아반 위주 반 개설을 더욱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집 입장에서 현원조개기 등을 통한 변칙적 운영의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연령반별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영아반 연령반별로 1개반 씩 부족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단계적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VI-2-1〉 기관보육료 정원 기준 지급(정원충족률 50% 이상시)

단위: 명, 백만원

구분	0세		1세			2세				전체	
	1명 부족	지원 금액	1명 부족	2명 부족	지원 금액	1명 부족	2명 부족	3명 부족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계	3,292	24,848	3,757	1,576	28,355	3,648	1,769	700	25,852	14,742	79,055
민간	1,138	8,590	1,518	629	11,393	1,691	879	406	12,993	6,261	32,975
가정	2,154	16,258	2,239	947	16,962	1,957	890	294	12,859	8,481	46,080

주: 1) 2024년 1인당 기관보육료로 0세는 629,000원, 1세 342,000원, 2세 232,000원으로 설정함.

2) 2022년 12월 기준 어린이집 현원 및 반 수를 기초로 추정함.

19) 국공립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 기관은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이 때 지원기준은 0세반은 정원 3명 중 재원아동 2명 이상, 1세반은 정원 5명 중 재원아동 3명 이상, 2세반은 정원 7명 중 재원아동 4명 이상, 3세반은 정원 15명 중 재원아동 8명 이상, 4세 이상반은 정원 20명 중 11명 이상으로 반당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인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386).

나.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

연령반당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지원 방안으로는 기관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앞의 기관보육료 정원기준 지급 방안은 현행 기관보육료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인건비로의 사용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나,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은 정원충족률 50% 이상 충족시 일정금액의 기관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관보육료 형태의 인센티브 지원이 아닌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어린이집 수입과 인건비지출을 분석한 결과, 반별 정원 대비 현원 1명 또는 2명 부족할 때,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비중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일정 수준의 기관운영비를 지원하여 정원 미충족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인 경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연령반별 담임교사에게 보육교사 인건비(1호봉)를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방안은 ‘기관보육료 정원 기준 지급’과 유사하나, 보육료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운영비와 분리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도 평균호봉 수준으로 인건비를 분리하여 지원하며, 운영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보육교사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비도 일정 수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의 개념적 차별화²⁰⁾가 약해진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수용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0) 2022년 2월 헌법재판소 판례(2022. 2. 24. 선고 2020헌마17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가정은 심판대상에서 제외)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한다는 청구에 대해, 보육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영리 추구를 제한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차년도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인상 반영시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동일한 수준(최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10년 이상의 고경력자라하더라도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불문율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도 인건비를 인상할 경우 인건비 외의 운영비나 기타운영비 지출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경력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인상해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차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재계약시 전년대비 인건비 1호봉을 인상하여 반영시 인건비 인상분 이상의 기관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사전방식이 아닌 사후지원 방식으로 호봉인상을 반영한 어린이집에 한해, 추가로 소요되는 차년도의 전년대비 호봉 인상액과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기관부담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²¹⁾

이는 매년 최저임금을 받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호봉인상을 반영하여, 제한적이지만 실질적 임금 인상을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며, 이렇게 할 경우 어린이집 또한 보육교사 1호봉 인상에 따른 추가분을 재정지원 받음으로써 별도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다.

마. 인구감소지역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2023년 현재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1만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수요-공급의 불균형 발생우려, 보육교사의 공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농어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에서 인구감소지역²²⁾ 어린이집 보육교사까지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소멸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2023년 월최저임금(2,010,580원), 보육교사 1호봉(2,099,100원)을 기준으로 법정부담금과 퇴직금을 고려하고, 본 연구의 현원규모별 급여기준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호봉인상분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분 추계 결과 2024년 민간은 8,142백만원, 가정은 150,21백만원으로 총 231,63백만원의 추가 재정 소요 추정됨.

22) 2023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은 229개 지역 중 89개 지역임(<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2023. 10.20.인출).

<표 VI-2-2> 인구소멸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계	인구소멸 지역	계	인구소멸 지역	계	인구소멸 지역	계	인구소멸 지역
국공립	2,957	68	1,899	69	1,059	323	5,915	460
사회복지법인	327	21	255	28	670	225	1,252	274
법인·단체 등	172	16	149	17	290	130	611	163
민간	3,198	61	4,172	166	2,304	246	9,674	473
가정	3,938	36	6,412	152	1,706	122	12,056	310
직장	591	11	452	16	262	48	1,305	75
협동	51	1	56	0	23	2	130	3
계	11,234	214	13,395	448	6,314	1,096	30,943	1,758

주: 2023년 2월 기준임

<표 VI-2-3> 인구소멸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수

단위: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계	인구소멸 지역	계	인구소멸 지역	계	인구소멸 지역	계	인구소멸 지역
국공립	25,573	545	18,717	623	8,119	2,114	52,409	3,282
사회복지법인	3,280	210	2,466	257	5,447	1,594	11,193	2,061
법인·단체 등	1,317	139	1,271	125	1,932	771	4,520	1,035
민간	26,507	547	35,699	1,517	19,064	1,721	81,270	3,785
가정	15,642	110	26,811	616	6,805	453	49,258	1,179
직장	6,081	67	5,678	146	2,600	397	14,359	610
협동	261	3	236	0	101	6	598	9
계	78,661	1,621	90,878	3,284	44,068	7,056	213,607	11,961

주: 2023년 2월 기준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수임.

<표 VI-2-4> 인구소멸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추가지원 재정소요

단위: 천원

구분	인구소멸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 추가 소요액		
	대도시	중소도시	계
국공립	719,400	822,360	1,541,760
사회복지법인	277,200	339,240	616,440
법인·단체 등	183,480	165,000	348,480
민간	722,040	2,002,440	2,724,480
가정	145,200	813,120	958,320
직장	88,440	192,720	281,160
협동	3,960	-	3,960
계	2,139,720	4,334,880	6,474,600

주: 2023년 2월 기준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수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교사 및 대체교사는 제외함.



참고문헌

- 김은정·이혜숙(2016).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현·김자연(2022). 호주의 육아정책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 내각부(2019). 2019년도 유치원·보육소·인정어린이원 등의 경영실태조사 집계결과.
- 동경도 복지보건국(2022). 동경도 보육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
- 문무경·이세원(2007).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 육아정책개발센터.
-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박진아·최효미·최윤경 (2020).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 (2023).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202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보건복지가족부(2009a). 2009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2009b). 2009 보육사업안내(개정판).
-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3).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1).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2). 2012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5).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4.25.).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1236&SEARCHKEY=TITLE&SEARCHVALUE=%EB%A7%9E%EC%B6%A4%ED%98%95+%EB%B3%B4%EC%9C%A1에서 2023. 7. 5. 인출
- 서문희(2006). 보육·유아교육 기본 보조금의 내용과 과제. 육아정책포럼, 1(1), 6-19.
- 서문희·최혜선(2007a).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혜선(2007b).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이혜민. (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6.7.27.). 2010년,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을 80.8%까지 확대 - 여성가족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확정·발표.
- 여성가족부(2006). 2006 보육사업안내.
- 이원선·김지연·신혜영·한찬희·권주원(2022). 2021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이운신(2019).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육아정책포럼, 62, 24-31
- 아동가정청(2023). 2023년도 사립보육소의 운영비에 대하여.
- 장경희(2014). 1990년대 중반이후 일본보육정책의 규제완화에 나타난 문제점과 과제. 일본연구논총 39. 현대일본학회. 255-284.
- 장경희(2014). 일본의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 및 과제 -설비·운영 기준, 보육·교육내용 및 교사자격을 중심으로-, 보육지원학회, 391-412.
- 장경희(2018). 일본보육시설의 보육비용산정방식이 한국의 보육제도 개선에 주는

- 시사. 현대일본학회.73-108.
-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편(2018). 보육백서.히토나루출판사.
-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편(2022). 보육백서.히토나루출판사.
-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편(2023) .보육백서. 히토나루출판사.
- 최윤경·김윤환·이혜민(2015). 스웨덴의 육아정책(II): 교사정책을 중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
- 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서울: 육아 정책연구소
- 한영선(2014). 정부의 자녀양육 보조금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6), pp.89-107.
- 후생노동성 아동가정국 보육과(2021). 보육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August). 202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ational Workforce Census report. p. 13, Table 5 Paid contact staff wage compared to the award rate for their position by service type,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resources/2021-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national-workforce-census-report> (2023. 8. 14. 인출)
- Department of Education. (2023, May 26). Preschool Reform Funding Agreement,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preschool/preschool-reform-funding-agreement> (2023. 8. 11 인출)
- Department of Education. (2023, July 18). National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Strategy,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early-childhood-workforce/national-childrens-education-and-care-workforce-strategy> (2023. 8. 11 인출)
- Familyandjob(가족과일협회). Sweden, <https://familyandjob.eu/childcare-in-europe/sweden/> (2023. 8. 14 인출)
- Lonstatistik.se(급여통계사이트). <https://www.lonestatistik.se/lon-efter-skatt.asp/som/Forskollarare%E2%80%94Forskolelarare-1196> (2023. 8. 11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2, September 19).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eachers working in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continuing-professional-development-teachers-working-early> (2023. 8. 11 인출/023. 8. 30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3, March 27). Ongoing reforms and policy developments-National reform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sweden/national-reforms-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2023. 8. 14 인출)

Eurydice. (2023, July 11). Teachers' and school heads' salaries and allowances in Europe - 2021/2022 report, <https://eurydice.eacea.ec.europa.eu/publications/teachers-and-school-heads-salaries-and-allowances-europe-20212022> (2023. 8. 14 인출)

蓑輪 明子(2018). 愛知 県保育労働実態調査からみる保育労働の現在. 保育研究所編. 保育情報 (503) .ひとなる書 房,4-10.

若林俊郎(2011). 株式会社が指定管理者制度により運営する保育所の問題点(上)保育研究所編. 保育情報 (417) ,ひとなる書房.4-9.

【신문기사】

일본경제신문(2017. 1. 6.). 동경도 보육사 급여보조 44,000엔, 2017년부터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DG06H8S_W7A100C1CC 2023. 10. 5. 인출)

【참고 사이트】

후생노동성(2015). 보육소 등 관련 상황정리 공표. https://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1907000-Koyoukintoujidoukateikyoku-Hoikuka/0000098603_2.pdf에서 2023. 8. 18.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정책, 보육지원체계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EB%B3%B4%EC%9C%A1%EC%A7%80%EC%9B%

- 90%EC%B2%B4%EA%B3%84%20%EA%B0%9C%ED%8E%B8#hong(2023. 7. 5 인출)
- 보육사인재뱅크(2021). 2023년도 보육사 처우개선 수당액 지급조건 등 설명. <https://hoiku.jinzaibank.com/column/39>에서 2023. 9. 15. 인출.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18). 보육소 등 관련 상황정리 공표. <https://www.wam.go.jp/gyoseiShiryuu/detail?gno=6578&ct=090020180>에서 2023. 8. 21. 인출.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19). 보육소 등 관련 상황정리 공표. <https://www.mhlw.go.jp/content/11922000/000979606.pdf>에서 2023. 8. 21. 인출.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22). 보육소 등 관련 상황정리 공표. https://www.mhlw.go.jp/stf/newpage_27446.html에서 2023. 8. 24. 인출.
- 내각부(2023). 인정어린이원 관련 상황. https://www8.cao.go.jp/shoushi/kodomoen/pdf/kodomoen_jokyo.pdf에서 2023. 8. 24. 인출.
- 내각부(2023). 특정교육·보육, 특별이용보육, 특정지역형 보육, 특별이용지역형 보육, 특정이용지역형보육 및 특례보육에 필요한 비용액 산정관련기준 등.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law/kodomo3houan/pdf/seisyousei/r050331/kaisei.pdf>에서 2023. 8. 30. 인출.
- 전국사립보육원연맹 홈페이지(2020). https://www.zenshihoren.or.jp/files/research-tyousa_20200403.pdf에서 2023. 9. 19. 인출.
- 내각부, 교육·보육현장직원의 임금인상 필요비용 보조.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law/kodomo3houan/pdf/r031223/leaf.pdf>에서 2023. 9.12. 인출.
- 후생노동성(2020). 보육사현황과 주된 시책. <https://www.mhlw.go.jp/content/11907000/000672997.pdf#page=38>에서 2023. 9. 12. 인출. 1000/(2023.09.13.).
- 에도가와구 홈페이지, <https://www.city.edogawa.tokyo.jp/e047/kosodate/kosodate/oshigoto/hoikushishien.html>에서 2023. 9. 12. 인출.
- 오오타구홈페이지, https://www.city.ota.tokyo.jp/seikatsu/kodomo/hoiku/hoiku_shigoto/hoikushi_ouenteate.html에서 2023. 9. 12. 인출.
- SEEK(채용정보사이트). Early Childhood Teacher salary, <https://www.seek.com.au/career-advice/role/early-childhood-teacher/salary>

(2023. 8. 11 인출)

【참고 법령】

「家庭的保育事業等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가정적 보육사업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児童福祉施設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第三十三条2(제33조2)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